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공학석사 학위논문

# 대학 청소노동 공간의 현황과 한계적 특성

- A대학 캠퍼스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사례를 중심으로 -

2023 년 2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김민지

# 대학 청소노동 공간의 현황과 한계적 특성

- A대학 캠퍼스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사례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최 춘 응

이 논문을 공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 년 2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김 민 지

김민지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 년 2 월

위 원 장 \_\_\_\_\_ 박 소 현 (인)

부위원장 \_\_\_\_\_ 최 춘 응 (인)

위 원 \_\_\_\_\_ 서 현 (인)

국문초록

# 대학 청소노동 공간의 현황과 한계적 특성

- A대학 캠퍼스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사례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김민지  
지도교수 최춘용

청소노동자 수는 1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며 취업자 순위 4위를 차지하는 우리사회의 보편직업이며 필수 노동직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청소노동자들의 휴게공간은 별도의 공간이 존재하지 않거나 건물 내부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열악하게 만들어 진다. 이는 청소노동자의 인간다움을 인정하지 않는 인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부상이나 사망의 위험을 유발하는 근로환경의 문제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노동과 노동공간 그리고 휴게공간에 대해 건축적 시각에서 살펴보고 청소노동자 공간의 현황과 구체적인 특성을 분석하여 향후 청소노동자 공간 계획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최근 3년간 (2019~2021년) 청소노동자 사망사건이 2차례 일어난 A대학교 내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19개소이며 이에 대한 문헌조사와 구체적인 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조사를 진행하였다. 휴게공간의 물리적인 조건과 사용자들의 공간 사용방식 등을 조사·분석하였으며, 사망사건 이후 2년간 여러 가지 제도 보완과 청소노동자 개선사업을 통해 많은 발전이 있었으나 여전히 폐쇄성, 비가시성, 임시성 과 같은 한계적 특성이 남아있을 확인하였다.

‘폐쇄성’은 휴게공간이 위치적으로 지하나 건물의 구석인 곳에 배치되어 나타난 특성으로, 휴게공간 내부에 외부로 통하는 창문이 없어서 기본적으로 사람이 머물 수 없는 ‘비인권적’인 환경이며 비상시에는 외부로 탈출을 할 수 없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다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비가시성’은 휴게공간의 고립된 위치뿐만이 아니라, 대학 캠퍼스 내 청소노동자 휴게공간의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림자 노동’으로 불리는 청소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공간의 모습이 맞닿아 있는 모습이며 ‘비가시성’으로 인해 청소노동자들의 사용하는 공간은 ‘좁고’, ‘분산’되어 있어 비효율적인 동선 체계를 가질 뿐만이 아니라 기타노동이 중첩되어 휴게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휴게면적은 더 협소해 진다.

‘임시성’은 공간불평등의 상황을 재생산하는 주요 원인으로 애초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이 건물내부에 계획되지 않아서 다른 용도의 공간을 개조하여 사용하거나, 건물 내부에 덧붙여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방식으로 휴게공간을 만들다 보니 밀실하지 않아서 외부 냄새와 소음에 취약하고 불완전한 휴게공간이 만들어 진다.

이뿐만 아니라 ‘비합리적 수량화’, ‘관리효율에 따른 공간 통폐합’, ‘노후 된 건물 내 휴게공간 배치’ 등 도 확인 할 수 있다.

위 내용을 토대로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개선 방향을 세가지 측면에서 제안하였다. 먼저, 기존 법령이 구체적이지 않고 수량성에 의존한다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휴게공간에 대한 구체적, 질적 측면의 분석을 위한 ‘청소노동자 공간의 열악성 분석의 틀’을 제안한다. 그리고 캠퍼스 공유재 개념을 바탕으로 청소노동자 또한 캠퍼스의 평등한 구성원임

을 밝히며 공간 사용의 주체로서 휴게공간 개선 및 계획의 논의 과정에 의사 참여기구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공간 프로그램으로서 청소노동자 휴게공간을 제안하며 단순히 ‘휴식’ 공간이 아닌 ‘노동’의 공간으로 휴게공간을 재정의(redefine) 해야 함을 제안한다.

청소노동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은 한국사회의 기울어진 성장의 단면을 보여준다. 청소노동자는 성장의 그늘에 ‘가려진 채’ 사회를 뒷받침 하고 있던 대표적인 재생산 노동자이다. 이 노동은 오늘날 노동시장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유지를 위해 청소노동의 중요성은 더 커질 것이며 그에 따른 사회적 인식 변화와 청소노동의 가치는 재평가되어야 한다. 청소노동자의 공간 또한 건축물 내 필수공간으로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공간의 내용 또한 발전해야 한다. 이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마련을 위해 사회, 노동, 보건, 도시, 건축 등 다각적 측면에서 연구가 필요하고 다양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주요어 : 청소노동자, 노동공간, 휴게공간, 재생산노동, 공간불평등

학 번 : 2019-26136

# 목 차

1. 서론 .....	1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1.2 선행연구의 고찰과 한계점 .....	6
1.3 연구의 대상과 방법 .....	10
2. 청소노동과 대학 캠퍼스 내 노동 .....	14
2.1 청소노동 .....	14
2.1.1 청소노동의 정의 .....	14
2.1.2 청소노동의 노동공간 .....	18
2.1.3 노동공간으로서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	20
2.2 대학캠퍼스 내 노동 .....	23
2.2.1 대학 캠퍼스의 공간 특성 .....	23
2.2.2 대학 캠퍼스 내 노동의 종류 .....	25
2.2.3 공유재로서 대학 캠퍼스의 의미 .....	28
2.3 국내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관련 법제도 .....	30
2.2.1 법제도 변화 과정과 주요내용 .....	30
2.2.2 개정 법령 주요내용 및 한계점 .....	33
2.2.3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관련 건축법 .....	37
3. A대학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	39
3.1 연구대상지 청소노동의 특성 .....	39
3.2 연구대상지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현황 .....	41
3.2.1 중앙도서관 .....	44
3.2.2 미술대학 .....	54
3.2.3 법학대학 .....	61

3.2.4 약학대학 .....	68
3.2.5 공과대학 .....	72
3.2.6 수의과대학 .....	78
3.2.7 농업생명과학대학 .....	87
3.2.8 행정대학원 .....	93
3.2.9 소결 .....	97
3.3 연구대상지 청소노동자 공간의 한계적 특성 .....	99
3.3.1 폐쇄성 .....	101
3.3.2 비가시성 .....	103
3.3.3 임시성 .....	105
4. 청소노동자 공간 개선방향 고찰 .....	106
4.1 청소노동자 공간 분석의 틀 .....	106
4.1.1 청소노동자 공간 분석 틀 제안 .....	106
4.1.2 분석틀을 통한 개정 법령의 한계점 분석 .....	109
4.2 청소노동자 공간 개선 및 계획 반향 제안 .....	114
4.2.1 논의 주체 및 과정 전환 .....	114
4.2.2 새로운 공간 프로그램으로서 청소노동자 공간 .....	117
4.2.3 대학 캠퍼스의 포용적 가능성 .....	118
5. 결론 .....	120
5.1 연구의 결론 및 시사점 .....	120
참고문헌 .....	124
Abstract .....	127



## 표 목 차

[표 1-1] 선행연구_청소노동 관련 .....	8
[표 1-2] 연구 대상지 목록 .....	11
[표 1-3] 연구대상의 분석틀 .....	12
[표 1-4] 연구흐름도 .....	13
[표 2-1] 건축물 용도별 1인 작업 면적 기준 .....	19
[표 2-2] 서울시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31
[표 2-3] 2022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주요내용 .....	34
[표 3-1] 연구대상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현황 .....	43
[표 3-2]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열악성의 특징 .....	100
[표 4-1]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질적 평가 분석틀 .....	107

## 그 립 목 차

[그림 1-1]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취업자 수 증감 추이 .....	2
[그림 1-2] 청소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청소노동자 공간 내부 .....	4
[그림 2-1] 신라대학교 청소업무 시방서 .....	16
[그림 2-2] 다양한 청소노동의 공간 .....	19
[그림 2-3]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프로그램 .....	21
[그림 2-4] 휴게공간에서 식사준비 중인 광운대학교 청소노동자 .....	22
[그림 2-5] 고려대학교 청소노동자 샤워장 .....	22
[그림 2-6]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법학관 구관 지하의 세면시설 .....	22
[그림 2-7] 동아대학교 청소노동자 휴게실에 걸린 옷들과 빨래줄 .....	22
[그림 2-8] 중앙대학교 의학과 경비초소 내 청소노동자 공간 .....	22

[그림 2-9] 연세대학교 제4공학관 청소노동자 공간 내 게시물 .....	22
[그림 2-10] A대학 지하 기계실 내 시설관리노동자의 공간 .....	27
[그림 2-11] A대학 급식실 조리노동자 공간 .....	27
[그림 2-12] 공유재 구성요소의 캠퍼스 적용 다이어그램 .....	29
[그림 2-13] 5인이하 급배수 가능 3D 실내투시도, 평면도 및 입면도	32
[그림 2-14] 5인이하 급배수 가능 3D 시뮬레이션 .....	32
[그림 2-15] ‘거실’과 관련된 규정과 개념 .....	38
[그림 2-16] ‘거실’이 아닌 공간에 만들어진 청소노동자 공간 .....	38
[그림 3-1] A대학 시설관리직 신규채용 선발 예정인원 및 계약조건	40
[그림 3-2] 시설별 캠퍼스 공간 면적 .....	42
[그림 3-3] 사용자별 1인 공간 사용면적 .....	42
[그림 3-4] 유효 휴게면적 개념 .....	42
[그림 3-5] 중앙도서관 배치도 .....	45
[그림 3-6] 중앙도서관 개요도 .....	45
[그림 3-7] 중앙도서관 신관 열람실 및 교수 전용 라운지 .....	45
[그림 3-8] 중앙도서관 본관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및 샤워실 평면도	47
[그림 3-9]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복도 및 여자청소노동자 샤워실	47
[그림 3-10] 여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1 평면도 및 개요 .....	48
[그림 3-11] 여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1 내부 사진 .....	49
[그림 3-12] 여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2 평면도 및 개요 .....	50
[그림 3-13] 여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2 내부 사진 .....	50
[그림 3-14] 남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평면도 및 개요 .....	52
[그림 3-15] 남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내부 사진 .....	52
[그림 3-16] 미술대학 배치도 .....	54
[그림 3-17] 여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평면도 및 배치도 .....	56
[그림 3-18] 미대 b동 휴게공간 위치 .....	56
[그림 3-19] 여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내부 사진 .....	56
[그림 3-20] 계단 참에 위치한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	57
[그림 3-21] 세탁 및 샤워실과 옥상층 내 세탁물 건조 공간 .....	57

[그림 3-22] 남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평면도 및 배치도 .....	58
[그림 3-23] 건물 내 배치도 .....	58
[그림 3-24] 남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내부 사진 .....	58
[그림 3-25] 장애인 화장실 내 샤워시설 평면도 .....	59
[그림 3-26] 화장실 내 세탁기 .....	59
[그림 3-27] 장애인 화장실 내 샤워시설 .....	59
[그림 3-28] 법학대학 배치도 .....	61
[그림 3-29] 개선 이전 a동 여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평면도 .....	62
[그림 3-30] 천장고 1.3m인 낮은 휴게공간 내부 .....	62
[그림 3-31] 여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평면도 및 개요 .....	64
[그림 3-32] 여자 청소노동자 외부 및 피난 안내도 .....	64
[그림 3-33] 여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내부 .....	64
[그림 3-34] 남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평면도 .....	65
[그림 3-35] 남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개요 .....	66
[그림 3-36] 남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외부 .....	66
[그림 3-37] 남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내부 .....	66
[그림 3-38] 법대 청소노동자 샤워시설 평면도 .....	67
[그림 3-39] 법대 청소노동자 샤워시설 외부 .....	67
[그림 3-40] 법대 청소노동자 남/여 샤워시설 내부 .....	67
[그림 3-41] 약학대학 배치도 .....	68
[그림 3-42] 2021년 재건축 완공된 e동 외부 및 계단아래 청소도구들	69
[그림 3-43] 여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평면도 및 개요 .....	70
[그림 3-44] 4층 안내도 .....	70
[그림 3-45] 여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내부 .....	70
[그림 3-46] 여자 청소노동자 샤워시설 평면도 .....	71
[그림 3-47] 여자 청소노동자 내부사진 .....	71
[그림 3-48] 공과대학 배치도 .....	75
[그림 3-49] 개선 이전 공대 남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평면도 .....	76
[그림 3-50] 휴게공간 외부/내부 .....	76

[그림 3-51] 여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평면도 및 개요 .....	74
[그림 3-52] 휴게공간 외부/내부 .....	75
[그림 3-53] 남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평면도 및 개요 .....	76
[그림 3-54] 휴게공간 외부/내부 .....	77
[그림 3-55] 수의과대학 배치도 .....	78
[그림 3-56] 여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1,2 평면도 및 개요 .....	80
[그림 3-57] 여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1,2 외부/내부 .....	80
[그림 3-58] 여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3 위치도 .....	82
[그림 3-59] 여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3 외부 휴게공간 내부 .....	82
[그림 3-60] 청소노동자 싱크, 세탁공간 .....	82
[그림 3-61] 여자청소노동자 휴게공간 평면도 및 개요 .....	83
[그림 3-62] 여자청소노동자 휴게공간 내부 .....	84
[그림 3-63] 남자 휴게공간 평면도 .....	85
[그림 3-64] 남자 휴게공간 개요 .....	86
[그림 3-65] 휴게공간 내부1 .....	86
[그림 3-66] 휴게공간 내부2 .....	86
[그림 3-67] 농업생명과학대학 배치도 .....	87
[그림 3-68] 농대 b동 단면도 및 지상1층 평면도 .....	88
[그림 3-69] 농대 b동 외부/내부 로비 .....	88
[그림 3-70]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출입구 .....	88
[그림 3-71] 여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1,2 평면도 및 개요 .....	90
[그림 3-72] 여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1 내부 .....	90
[그림 3-73] 여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2 내부 .....	90
[그림 3-74] 농대 샤워시설 평면도 .....	91
[그림 3-75] 농대 샤워시설 외부/내부 .....	91
[그림 3-76] 남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평면도 및 개요 .....	92
[그림 3-77] 행정대학원 배치도 .....	93
[그림 3-78] a동 4층 피난안내도 .....	94
[그림 3-79] a동 건물안내 .....	94

[그림 3-80] 여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평면도 및 개요 .....	95
[그림 3-81] 여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외부 .....	95
[그림 3-82] a동 1층 피난 안내도 .....	96
[그림 3-83] 청소노동자 휴게공간에 대한 사용자 개선 요구사항 .....	100
[그림 3-84] 폐쇄적 공간 다이어그램 .....	101
[그림 4-1] 대학 주요 의사결정 구조 조직도 .....	117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2 선행연구의 고찰과 한계점
1.3 연구의 대상과 방법

---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오늘 날 한국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중요한 단어 중 하나는 ‘불평등(不平等, Inequality)’이다. 한국은 1960년대 이후 경제규모가 60배 이상 확대되는 고속성장을 달성하였다<sup>1)</sup>. 1980년대를 기점으로 신자유주의가 한국 사회에 상륙하면서 각자도생, 불평등 현상이 심화되었으며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급증하고 소득분배가 악화하는 등 소득 양극화는 심해졌다.<sup>2)</sup> 소득 분배 불평등 뿐만 아니라 의료 및 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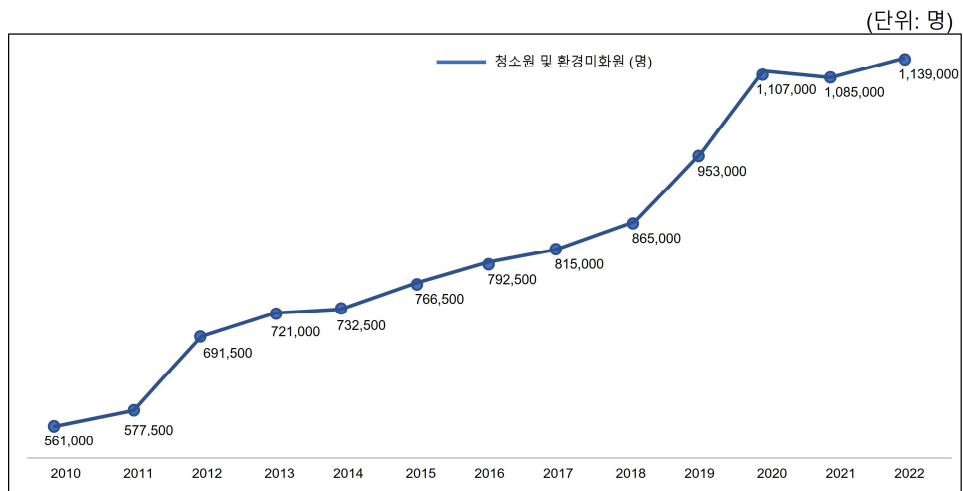
---

1) 국회예산정책처. 2022. 『2022 대한민국 경제』 p.39.

1인당 국민총소득은 1960년 133만원에서 2021년 3,647만원으로 상승했으며, 2021년 수출은 6,444억달러로 세 개 10대 무역국으로 발전하였다.

서비스 등 사회·경제적 자원의 불평등 또한 심화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특히 이주민, 장애인, 여성, 노동자 등 소수자들은 사회적으로 배제되었다. 이와 같은 급속한 정치, 사회, 경제 발전과정에서 도시는 과편화, 균질화, 계층화 되어 ‘가치 편향’ 된 공간을 생산하게 되었고<sup>3)</sup> 신자유주의화의 등장으로 사회·공간적 불평등과 부정의 문제가 더욱 악화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공간적 정의’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켰다.<sup>4)</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약자, 즉 ‘주변화 된 사람들’은 공간적인 사각지대와 비인권적인 공간 상황에 지속적으로 놓이게 되었으며, ‘공간의 부재’로 표출되는 불평등한 공간을 사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국내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으로 분류되는 전체 취업자 수는 약 1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며, 전체 직업군 중 4위를 차지하는 보편적 직업을 넘는다.



[그림 1-1]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취업자 수 증감 추이(2010-2022년)

(출처: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를 바탕으로 저자작성)

2) 김낙년. 2018. 『우리나라 소득불평등의 추이와 국제비교』 사회과학연구 제25권 제2호, p.175.

소득집중도는 해방 후에 크게 떨어진 후 고도성장기에 낮은 수준에서 안정되어 있었지만 1990년대 이후 이후 다시 급속히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며 2010년대 들어와 근로소득 소득집중도는 하락으로 돌아섰고, 그로인해 전체 소득집중도는 정체되어 있다.

3) Kim, 2017

4) Choi, 2019

군이다. 2010년 이후 매해 청소노동자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전년과 비교하여 2022년 상반기 5만 5천명이 증가한 상위 증가 직업군이다[그림 1-1] .<sup>5)</sup>

2020년 12월 14일 정부가 발표한 ‘필수노동자 보호 지원 대책’ 에서 ‘보건의료, 돌봄, 운송, 환경미화’ 와 함께 청소 노동은 우리 사회의 필수 노동으로 분류하고 있다. 필수 노동은 COVID-19 팬데믹(이하, 코로나) 이후 등장한 개념으로, 재난 상황에서 이 노동이 사라진다면 사회 기능 유지에 심각한 차질이 생기게 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청소 노동은 경제성장 중심 사회에서 가치가 저평가 되며, 주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시간과 공간에 노동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림자 노동’ 혹은 ‘투명 노동’ 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이러한 청소 노동 유형의 비가시성(Invisibility)은 해당 노동자에게 주어진 건축공간을 통해서도 표출된다. 다수의 경우 청소노동자들의 공간은 건물 주 사용자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석지거나 숨겨진 곳에 최소한의 규모로 자리하거나 아예 조성조차 되지 않기도 한다. 청소노동자 공간의 비가시성과 열악성은 청소노동자의 인간다움을 인정하지 않는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부상이나 사망의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노동환경의 근본적인 문제가 된다.<sup>6)</sup>

실제로 2019년, 2021년 2년 간격으로 한 대학에서 연달아 2명의 청소 노동자가 휴게시간 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해당 대학에는 국정감사에 따른 고용노동부 권고사항이 내려졌는데, 이 과정에서 청소노동자 노동조합, 학생과 교수진은 물론이고 국회와 고용노동부, 언론매체, 시민단체 등 사회의 많은 관심이 청소노동자의 휴게공간 환경에 쏟아졌

---

5) 2022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에 따르면 상위 증감 직군으로 ‘돌봄 및 보건서비스 종사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에서 각각 5만 5천명 증가하였으며, ‘매장판매 종사자’ 에서 6만 5천명, ‘영업종사자’ 에서 5만명, ‘가사 및 육아도우미’ 에서 2만명 감소하였다.

6) 2019년 8월9일(금요일) 오후 12시 30분경 A대학교의 한 청소노동자가 열악한 휴게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A대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한 A대학교 총학생회에 따르면, 전체 면적이 약 2,600km<sup>2</sup> 이 넘는 해당 건물에서 청소노동자에게 허락된 휴게공간은 계단 아래에 조성된 3.52m<sup>2</sup>의 간이 공간뿐이었다고 한다. 이 공간은 창문이 없어 곰팡이 냄새 등을 환기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폭염을 피하기도 어려운 열악한 환경이었다.





[그림 1-2] 2019년(좌), 2021년(우) 청소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청소노동자 공간 내부

(출처: KBS 뉴스9 캡처, 박영민기자, 2019, 8, 21 / 뉴시스, 박민기기자, 2021, 7, 7)

다. 이 사건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관련 정책의 추진과 제도적 개선으로 이어졌고, 해당 대학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 가이드 (2018)’에 따라 2019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청소노동자 휴게공간을 개선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정부에서 추진하는 휴게공간의 개선 관련 정책의 내용은 공간의 기본면적 제시와 같이 피상적인 부분에 그치고 있으며, 무엇보다 청소노동자의 공간에 대한 구체적 성찰은 턱없이 부족하다. 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개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도 불구하고, 공간계획의 주체인 건축계 내에서 청소노동자 휴게공간의 열악한 현황에 대해 주목한 건축학적 관점의 연구 사례는 거의 없으며, 청소노동자 휴게공간의 필요성과 휴게공간의 내용과 질(Quality)에 대한 공론화된 논의가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청소노동자 휴게공간의 현황적 특성을 공간 불평등과 공간 공유재의 관점에 기반하여 살펴보고, 대학 캠퍼스 내 청소노동자 공간의 평등성과 의미적 확장성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으로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개선에 많은 발전이 있었으나, 여전히 폐쇄성(Seclusion), 비가시성(Obcurity), 임시성(In-permanence)과 같은 한계적 특성이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청소노동자 휴게공간이 왜 이러한 특성을 가지게 되었는지 ‘정책적 요인’과 ‘건축적 요인’을 분석한다. 주체의 의사가 결여된 정책결정과 ‘청소노동’에 대한 이해 부족은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관련 정책의 한계를 만드는 주요 원인이다. 사회적 공간 사용변화와 인식의

변화에 비해 뒤쳐지는 공간프로그램 적용은 건축적 요인에 해당한다.

본 연구는 그동안 건축계에서 외면하였던 ‘청소노동자 공간’에 주목함으로써 건축연구 주제의 다양화를 통해 건축연구자의 사회적 역할을 실천하고자 한다. 이는 1990년대 이후, 국내에서 논의가 축소되었던 ‘건축가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다시 확장하려는 시도이다. 그리고 ‘열악함’이라는 단어로 ‘뭉뚱그려온’ 청소노동자 공간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앞으로 진행될 청소노동자 공간의 계획과 개선과정에 보다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1.2 선행연구의 고찰과 한계점

청소노동자에 대한 연구는 사회학에서 주로 다뤄지고 있으며, 대부분 근로조건<sup>7)</sup>에 관한 연구가 다양한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다. 다수의 연구자들은 청소노동이 대표적인 저임금 서비스 산업으로 노동시장 내에서 낮고(low-end), 막다른(dead-end)<sup>8)</sup> 일자리의 특성을 지닌다고 지적하고 있다.

권혜원, 권현지, 김영미(2016)는 「대학 청소 용역 서비스 작업조직 내 범주적 불평등의 지속과 균열」<sup>9)</sup>에서 미국 사회학자 Chaeles.Tilly와 Tomaskovic-Devey의 ‘범주적. 관계적 불평등’의 개념을 차용하여 대학의 작업장 내에서 청소노동자들이 겪는 열악한 임금 및 근로조건, 권력관계의 불평등이 고착화되어 온 과정을 분석하였다. 또한 대학을 중심으로 노동조합 확대에 의한 교섭과 단체 활동이 작업장 내 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불평등 구조의 균열 혹은 완화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였고 광범위한 수준에서 범주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조혁진(2017)은 「시설관리서비스산업의 노동의 특성과 작업장의 사회적 관계구조에 대한 연구: 대학사업장 청소·경비 업무를 중심으로」<sup>10)</sup>에서 대학 청소·경비 업무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하여 이 산업에서 만연한 차별과 불평등의 원인을 시설관리노동자들의 노동특성-노동의 고연령, 저임금, 사회적 저평가, 정치적 과소평가- 과 작업장의 사회적 관계구조와의 맞물림-고용 관계구조, 통제 관계구조, 동료 관계구조, 고객 관계구조 등- 속에 파악하였다. 이 연구는 차별과 불평등 현상이 발생하는 상황뿐만이 아니라 발생 매커니즘을 깊이 살펴보았으며 노동주체들의

7) 고용계약 및 고용안정, 임금 및 근로시간, 식사 및 휴게시설, 산재, 원청회사와의 관계, 노동조합 가입현황 등

8) 유광호, 이영면. (2017). 「대학 청소노동자의 직접고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7(4), p.58

9)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산업관계연구, 26(2), p.111-139

10) 한국산업노동학회, 산업노동연구, 23(3), p.117-216

상호작용을 통해 관계구조에 대한 변화가 가능해지고, 관계구조의 변화가 노동의 특징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것에 의미를 가진다.

이승윤, 서효진, 박고은(2018)은 「한국 청소노동자는 왜 불안정(precarious)한가 -여성 청소노동자와 한국 사회안전망의 허구성」<sup>11)</sup>를 통해 청소노동자 대다수가 원-하청 구조하의 간접고용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하청 여성 청소노동자가 가지는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성을 살펴보고 이 불안정성이 어떻게 사회안전망에서의 배제로 연결되어 있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의 사회보장제도가 청소노동자들의 노동자로서의 삶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게 하는데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경영학의 관점에서 청소노동자를 연구한 윤세준, 양경욱, 채연주, 김혜련(2012)은 「비청결노동(dirty work)과 정체성: 청소노동자의 직무 빚어내기(job crafting)」<sup>12)</sup>에서 ‘비청결노동’이라는 청소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중심으로 사회적인 편하를 받고 있는 직군의 노동자들이 어떻게 그들의 정체성을 형성, 유지하는지 과정을 연구하였다. ‘직무 빚어내기’라는 개념을 통하여 청소노동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에 대응하여 개인적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과정을 분석했다. 이 연구는 ‘청소노동자’ 집단이 아닌 개인적 정체성 형성에 대한 질적 연구이고 사회적 인식과 개인의 정체성 사이의 매커니즘을 다룬 국내 최초의 연구로 주목할 만하다.

한편, 앞서 언급된 ‘불평등’과 청소노동자의 공간을 연결하여 연구한 사례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안숙영(2012)은 「젠더와 공간의 생산 -여성청소노동자의 사례를 중심으로 -」<sup>13)</sup>에서 공간에 대한 권리와 노동자 인권의 관계성을 연구하였다. 여성 청소노동자들이 식사공간과 휴게공간이 없는 비인권적인 상황에 대하여, 스스로를 위한 공간을 생산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공적공간인 거리로 나선 투쟁의 사례를 제시하며, 자본주의 공간 조직에 의해 ‘주변화 된 사람들’의 공간부재 문제는 곧 권리의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학적 관점에

11) 한국산업노동학회, 산업노동연구, 24(2), p.247-291

12) 한국인사관리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402-431

13)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여성학연구, 22(3), p.89-112

[표 1-1] 선행연구 \_ 청소노동 관련

저자(연도)	제목	구분
이영자(2004)	신자유주의 노동시장과 여성노동자성	여성노동자성, 노동의 유연화, 성신분계급, 여성노동, 주부노동자
강승복(2011)	청소용역 서비스업의 근로실태	청소용역 근로조건
안숙영(2012)	젠더와 공간의 생산	젠더, 공간, 정치, 공간의 생산, 여성청소노동자
윤세준, 양경옥, 채현주, 김혜련(2012)	비청결노동(dirty work)과 정체성: 청소노동자의 직무 빚어내기(job crafting)	비청결노동, 사회적 정체성, 직무 빚어내기, 질적연구
김소연, 김영미(2015)	건물 청소노동자의 노동 경험	질적연구, 포커스 그룹, 면접, 여성노동, 직업건강간호, 재해, 직업병
박옥주(2016)	청소용역 여성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일 경험	청소용역 여성노동, 비정규직, 간접고용, 성별분업, 감정노동, 일-가족 양립
권혜원, 권현지, 김영미(2016)	대학 청소 용역 서비스 작업조직 내 범주적 불평등의 지속과 균열	장기지속 불평등, 범주적 불평등, 젠더 불평등, 대학 청소노동자, 노동조합 발언
유광호, 이영면(2017)	대학 청소노동자의 직접고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대학, 청소노동자, 직접고용, 간접고용, 대학의 사회적책임
조혁진(2017)	시설관리서비스산업의 노동의 특성과 작업장의 사회적 관계구조에 대한 연구 : 대학사업장 청소·경비 업무를 중심으로	시설관리서비스산업, 시설관리서비스노동, 노동체제, 간접고용, 비정규직
이승윤, 서효진, 박고은(2018)	한국 청소노동자는 왜 불안정(precaious)한가	하청노동시장, 청소노동, 중고령 여성노동자, 불안정성, 사회안전망
조혁진(2019)	대학 청소용역서비스산업의 노사관계 평가와 전망	노사관계, 국공립대학교, 사립대학교, 노사분규, 정규직 전환 정책
최나현, 김영(2021)	여성 청소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작업장 배제에 관한 연구	팬데믹, 지하철 청소노동자, 복합적 차별, 노동자 배제 방역, 차등화 보호, 시민의식
김영(2021)	복합적 차별과 코로나19 감염위험 : A시 지하철 청소노동자의 팬데믹 하 노동경험과 감염경험을 중심으로	팬데믹, 지하철 청소노동자, 복합적 차별, 노동자 배제 방역, 차등화된 보호, 시민의식
조상진(2022)	죽음에 이른 중고령 경비·청소노동자의 근로환경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 언론 담론을 중심으로	경비노동과 청소노동, 노인일자리, 갑질, 법률 제정, 노인복지청

서 여성 청소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휴게공간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았다는 한계를 지닌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청소노동은 주로 ‘불안정성’, ‘여성 혹은 젠더’, ‘불평등’, ‘사회적 인식’, ‘시스템 또는 연대’와 같은 키워드를 통해 설명된다. 청소노동자는 고용 형태에 따른 불안정성, 노동 종류에 의한 여성성, 청소노동에 대한 평가 절하된 사회적 인식 등에 의한 결과로 나타나는 다층적 불평등의 상황에 처해있고, 그 불평등에 균열을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사회적 시스템과 집단의 연대의 필요성이 요구된다<sup>14)</sup>.

‘공간 불평등’에 관해서는 지리학 및 도시공학 분야에서 연구하고 있지만, 이는 단위 건물을 주로 사용하는 ‘주 이용자’에 속하는 사람들 간의 불평등을 줄이는 방법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다.<sup>15)</sup> 일반적으로 건물 주 이용자의 범위에 청소노동자는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소노동자의 공간 또한 연구대상으로 다루어지지 않는다. 즉, 연구대상으로서 청소노동자의 공간은 물론이고, 청소노동자와 그들이 사용하는 열악한 공간과의 관계는 높은 사회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다수의 선행연구들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본 연구는 선행 연구에서 지적한 ‘불평등’ 등의 개념이 청소노동자 공간의 ‘열악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 청소노동자와 그들의 공간의 관계성과 특성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 사회에서 ‘주 이용자’의 범주에 속하지 못한, 청소노동자라는 특정 직업군의 사람들이 공간을 통해 겪는 공간 불평등의 물리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청소노동자 공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

14) 김민지, 최춘웅, (2023). 「대학 청소노동자 휴게공간의 폐쇄성, 비가시성, 임시성 -캠퍼스 공유재 개념을 기반으로」, 대한건축학회

15)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Design for all)’ 혹은 ‘보편적 디자인’으로 불리는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에 관한 연구가 대표적이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연령, 성별, 국적, 장애의 유무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것이다. 장애를 가진 이용자를 위해 문제해결을 도모하는 ‘배리어 프리 디자인(Barrier free design)’보다 더 넓은 범위의 개념으로 더 많은 이용자 계층을 중심으로 한 디자인이다.

## 1.3 연구의 대상과 방법

본 연구는 최근 3년 간(2019~2021) 청소노동자가 휴게시간 중 휴게공간에서 사망한 사건이 2차례 일어난 A대학교 내 청소노동자 휴게공간을 대상으로 사례 연구를 수행한다. A대학의 청소노동자 휴게공간은 사고 당시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 공분을 불러 일으켰고,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개선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에 기여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우리사회의 정의를 가르치고 실천하는 역할을 하는 대학이 불평등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평등한 공간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A대학의 청소노동자 휴게공간을 사례 연구 대상으로 조사 및 분석하였다.

A대학교 내에는 2022년 기준으로 약 130개소의 휴게공간이 있으며 사망사고 이후 2019년 하반기부터 3년에 걸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에 대한 개선사업을 진행한 상황이다. 그 중에서 2019년 8월 청소노동자 사망 사고가 일어난 공과대학 b동을 포함한 총 7개 단과대학의 16개소의 청소노동자 휴게공간과 중앙도서관의 3개소로 총 19개소의 청소노동자 휴게공간에 대한 문헌조사와 현장답사 및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공과대학 b동은 그 상징성을 고려하여 사건 당시의 휴게공간을 포함하여 조사하고, 그 외 연구 대상지는 사망사고 이후 고용노동부에서 개선 권고 조치를 받았던 15개 휴게공간<sup>16)</sup> 중에서 관련 자료의 유무 및 접근, 현장방문과 관계자 인터뷰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표 1-2].

본 연구는 청소노동자 휴게공간의 열악성에 대해 건축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구체적인 공간 현황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청소노동과 청소노동자 공간에 대한 확장적 재정의(redefine)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

16) 사건이 발생한 건물의 휴게공간을 포함한 6개 휴게공간에는 폐쇄 및 이동이 권고되었고, 9곳에는 냉·난방시설, 적정 온·습도 유지, 면적 확대 등의 개선을 하도록 하였다.

[표 1-2] 연구 대상지 목록

번호	대상선정 이유	기관명(동)	세부내용	이행·조치 사항	
1	휴게실 설치·운영 실태조사 점검결과 (2019.8.20~8.23) 에 따른 개선필요 휴게공간	행정대 학원 (a)	환기시설, 냉난방, 온습도 수준	환기시설 및 환경 개선	
2		미 술 대 학	(a)	계단 옆 공간 협소 및 위생 상태 불량	폐쇄 및 대체공간 확보
			(d)	환기시설, 냉난방, 온습도 수준	폐쇄 및 대체공간 확보
3		법 학 대 학	(a)	계단 옆 공간 협소 및 위생 상태 불량	폐쇄 및 통폐합
			(b,e)	환기시설, 냉난방, 온습도 수준	폐쇄 및 통폐합
4		약학대학(a)	계단 옆 공간 협소 및 위생 상태 불량	폐쇄 및 통폐합	
5		공과대학(b)	계단 옆 공간 협소 및 위생 상태 불량 환기시설, 냉난방, 온습도 수준	사고 직후 폐쇄 대체 공간 마련하 여 사용	
6		수의과대학 (b)	지하주차장 및 인근에 휴게실이 설치되어 매연에 취약, 환기 불량	폐쇄 및 대체공간 확보	
7	농업생명대학 (b)	지하주차장 및 인근에 휴게실이 설치되어 매연에 취약, 환기 불량	폐쇄 및 대체공간 확보		
8	한국일보 보도 (2021.7.12)	중앙도서관	작업공간과 휴게공간의 거리가 멀어서 휴게공간의 사용성 불량, 한 휴게공간에 다수의 청소노동 자가 사용	기존 휴게공간 위 치 유지 및 일부개선	

서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를 함께 진행하였다. 문헌조사에서는 먼저 청소노동과 노동공간, 노동공간으로서의 청소노동자 공간에 대해 ‘공간 불평등’ 이론을 바탕으로 청소노동자 휴게공간을 둘러싼 열악성이 사회적·공간적 불평등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해한다. 또한, 대학의 공간적 특성과 대학 내 노동에 대해 살펴보고, ‘캠퍼스 공유재’ 개념을 통해서 ‘공익성’, ‘필수성’, ‘민주성’을 대학 공간에도 확장하여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노동자의 휴게공간과 관련하여 정부가 배포한 ‘사업자 휴게시설 설치 운영 가이드(2018)’와 지자



[표 1-3] 연구대상의 분석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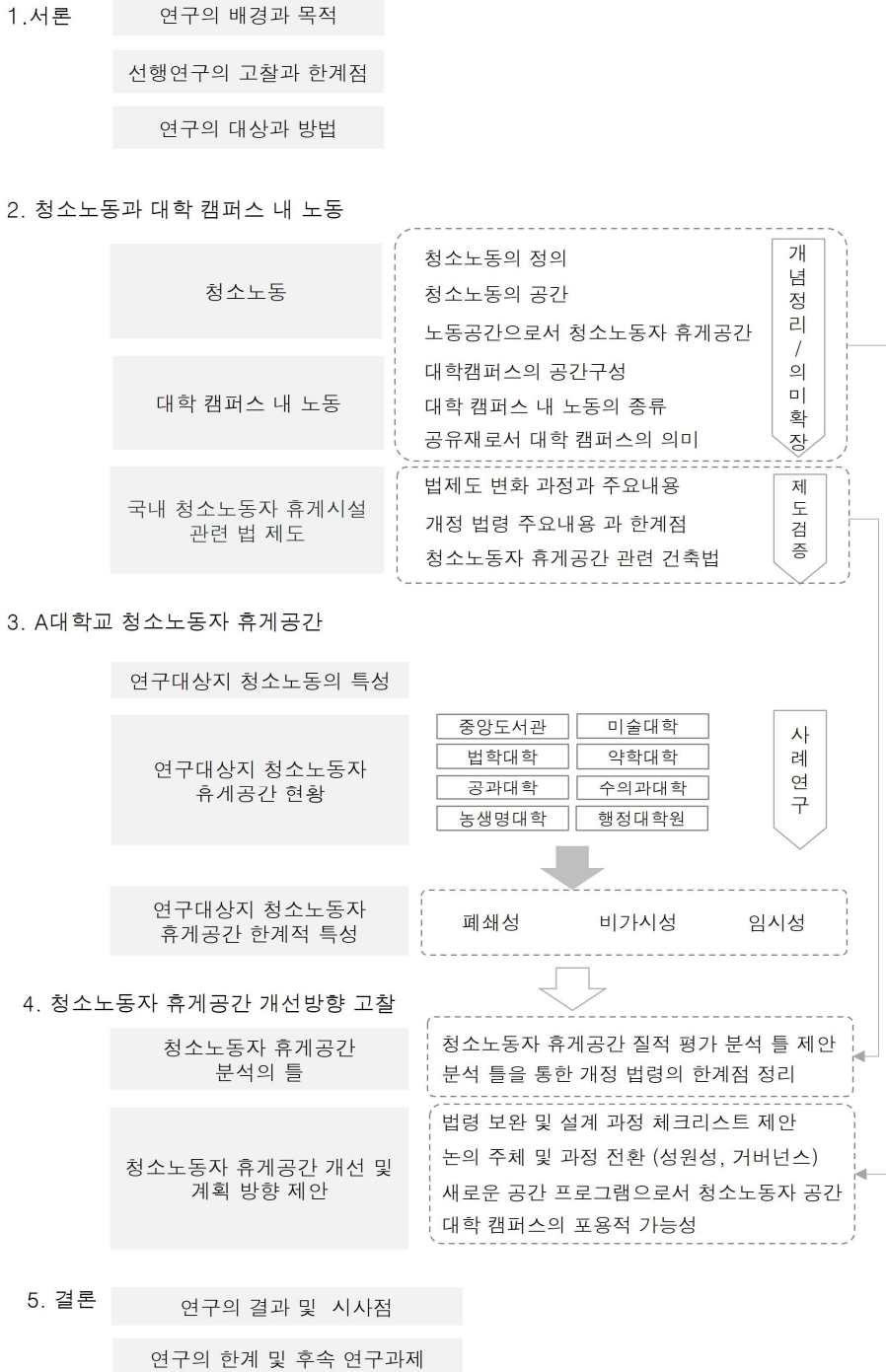
분석대상	분석내용	분석방법
배치현황	단과대 내 위치 (건물 준공년도)	관계자 통계자료  사용자 인터뷰 및 현장 답사
	건물 내 위치 (접근성, 비가시성)	
	건물의 특징 (노후, 노동량)	
	층 수 (물리적 층수)	
	필수시설 위치	
공간현황	규모 (내부 면적, 높이)	현장 답사 및 실측
	유효 휴게면적	
	공간구성	
	공간환경 (공기, 소음, 자연광)	
	마감재료	
	가구 및 전자제품	
사용자	사용인원 수	사용자 현장 인터뷰
	휴게공간 사용시간	
	사용자 만족도	
	사용자 요청사항	

체에서 발표한 ‘청소근로자 환경시설 가이드라인’, ‘휴게시설 체크리스트’를 살펴보고,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일부개정)」의 휴게시설 관련 내용을 이해한다.

각각의 휴게공간 대상지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건물 내 위치, 규모, 동선 등 물리적 환경을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관계자 인터뷰를 진행하여 휴게공간 사용에 대한 실질적인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공간 이용에 따른 문제점과 그 관계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sup>17)</sup>

17) 2022년 4월부터 10월까지 각 휴게공간을 1~2회씩 총 7번 방문하였으며, 휴게공간의 실측 등을 진행하였다. 동시에 각 휴게공간을 이용 중인 청소노동자 명과의 대면조사를 진행하였다.

[ 표 1-4 ] 연구흐름도



## 2. 청소노동과 대학캠퍼스 내 노동

---

2.1 청소노동
2.2 대학캠퍼스 내 노동
2.3 국내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관련 법제도

---

### 2.1 청소노동

#### 2.1.1 청소노동의 정의

사전적으로 ‘청소(淸掃)’는 ‘더럽거나 어지러운 것을 쓰고 닦아서 깨끗하게 함’이라는 정의를 가지고 있고, ‘노동(勞動)’은 ‘몸을 움직여 일을 함’이라는 사전적 정의 외 경제적 정의로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건이나 돈을 얻기 위하여 육체적 혹은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이다<sup>18)</sup>. 즉 청소노동은 ‘생활에 필요한 재화를 얻기 위하여 더

럽거나 어지러운 것을 쓸고 닦는 것에 육체적,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이다.

‘청소노동자’는 청소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노동자이며 청소부, 청소원, 청소근로자, 청소용역근로자 등으로도 불리며<sup>19)</sup> 일반적으로 건물이나 다중이용시설, 생산시설, 운송수단의 청결을 유지한다. ‘환경미화원’이라 불리는 거리미화원은 거리, 공항, 역 및 기타 공공장소를 청소하는 노동자로 건물청소노동자와는 구분이 된다.<sup>20)</sup>

청소노동은 건물 주사용자들의 업무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기본적인 청소를 끝내야 하기 때문에 청소노동자는 일반노동자들에 비해 출근 시간<sup>21)</sup>이 빠르다. 각자 청소구역에서 업무 시간 내내 쓸고 닦고 쓰레기를 비우는 등 반복 작업을 하며 오랜 시간 쪼그리고 앉거나 서서 작업을 하고 대걸레질이나 무거운 물건 등을 운반하여 육체적 과부하가 걸리는 일이 잦으며([그림2-1] 시방서 내용 참고) 그로인한 직업병은 관절통이 가장 많고 근육통, 요통, 신경통으로 인한 신체 부담이 있다.<sup>22)</sup> 또한 작업을 하는 동안 살균제, 세척제, 광택제 등 세제를 사용하여 청소를 하는데 성분의 화학성 때문에 장기간 반복 접촉 시 건강에 유해한 경우가 많지만 안전한 사용법에 대한 교육이나 보호장구 지원이 없다.<sup>23)</sup>

18)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22년 12월 확인

19) 본 연구에서는 ‘청소노동자’로 지칭하며 근로 조건에 따른 구분이 필요할 경우 ‘정규직 청소노동자’, ‘파견직 청소노동자’, ‘용역직 청소노동자’로 표기하여 사용한다.

20) 김소연, 김영미. (2015). 「건물청소노동자의 노동 경험」,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 Vol 24, p.184

21) 청소하는 건물의 용도에 따른 주 사용자들의 출근시간에 따라 청소노동자들의 출근시간이 다른데, 주 사용자 출근시간의 약 3시간 전부터 청소를 시작한다. 대학의 경우 6시~3시30분부터 청소를 시작한다.

22) 김소연, 김영미. (2015) 「건물청소노동자의 노동 경험」,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 Vol 24, p.188

23) ‘유해물질인 세척제 사용하면서 알려주지도 않아’,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 2008년 2월 21일. 김미영

‘김씨는 사용할 세제를 섞기 시작했다. 바가지에 가루비누를 넣고, 시중에서 흔히 ‘락스’라고 부르는 살균제와 또 다른 액체를 넣었다. 김씨는 자신이 사용하는 세제의 성분은커녕 이름조차 알지 못했다. 그저 원액에 물을 '1:3'의 비율로 섞어서 쓴다고만 했다. <매일노동뉴스>가 확인한 결과 김씨가 사용하는 세제는 모노에탄올아민 등을 포함하고 있는 고농축 다목적 세척제로 밝혀졌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노동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비치해야한다. 세척제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이름과 취급상의 유의사

**1. 청소구역 및 범위**

- 가. 화장실, 복도, 계단, 휴게실, 행정사무실, 강의실 등 공동사용구역 및 관리팀이 관리하는 건물외곽 청소를 겸한다(단, 교수연구실 등 특정인이 따로 청소하는 구역은 제외한다.)
- 나. 학교의 공공행사(입학식, 졸업식, 축제, 입시, 총장취임 및 퇴임식 등) 및 학교가 지정하는 지원행사(각종정례,감사업무 등)의 청소 및 비품이동 등 업무를 지원한다

**2. 청소원의 배치 및 자격**

- 가. 청소원의 배치는 별첨 배치표에 의한다.
- 나. 신체 건강하며, 성실히 근무할 수 있는 자로 한다.  
(단, 학교에서 따로 지정하는 곳은 남자직원을 배치한다)
- 다. 근무인원 : 남자소장1, 남자1, 여자36, 총38명으로 구성 한다

**3. 청소원 근무시간**

- 가. 근무시간은
  - 평일 : 08:00부터 17:00
  - 방학기간 : 09:00부터 16:00 (개학일 일주일 전은 제외한다)
- 나. 주 5일 근무(법정공휴일 제외)하되, 학교의 특별한 사정으로 협조요청이 있을때에는 근무하여야 하며 비용은 실비로 정산 한다.

**4. 청소업무**

- 가. 출근부와 청소업무의 구체적 수행내용을 매일 기록하는 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 나. 일반사항
  - 용역개시 즉시 대청소를 실시하고, 건물바닥은 깨끗이 닦고 코팅을 한다.
  - 복도(계단포함)의 바닥은 매일 오전, 오후 각 1회 이상 비질과 걸레질을 수시로 하고, 강의실 및 열람실은 매일 1회 이상 비질과 걸레

- 다. 복도, 강의실, 행정사무실 및 열람실 등 바닥청소
  - 바닥을 세척제를 사용하여 바닥에 부착된 오물을 제거하고 수시 걸레질을 하여 광택을 유지시켜야 한다.
- 라. 화장실 청소
  - 변기, 세면기 및 화장실 바닥 전체를 1일 1회 이상 중성세제로 깨끗이 세척하여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하고, 항상 청결을 유지한다.
  - 변기는 수시로 크레졸로 소독하고, 각 변기에는 항상 나프탈렌을 걸어서 악취를 제거하여야 한다.
- 마. 유리청소
  - 창호 및 출입문 유리는 안밖을 수시로 닦아 투명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현관 유리는 지문이나 기타 자국이 없도록 항상 깨끗이 닦는다.
  - 유리창에는 안내문 등의 게시물을 부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바. 금속, 철물 닦기
  - 스테인레스 및 금속성 자재는 특수 광택제료를 사용하여 항상 본질의 광택이 유지되도록 한다.
- 사. 문턱 구석진 곳 등의 먼지 및 오물제거
  - 문턱과 구석진 곳의 먼지 및 오물은 수시로 걸레질을 하거나 진공청소기로 완전히 제거한다.
- 아. 학생들의 이용이 많은 휴게실 및 복도는 수시로 휴지 및 담배꽂이를 제거하고, 항상 깨끗한 환경을 유지시켜야 한다.
- 자. 현관 입구 및 건물주변청소
  - 현관 입구 및 건물주변의 낙엽, 휴지, 담배꽂초, 벽보 등을 수시로 수거하고 잡초 등을 제거하여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 차. 쓰레기 분리수거
  - 청소시 수거된 모든 쓰레기는 학교에서 정한 분리수거 방법에 의하여 수거하여야 한다.

[그림2-1] 신라대학교 청소업무 시방서  
(출처: 신라대학교 홈페이지)

청소노동은 ‘재생산 노동’에 속한다. 재생산노동(再生産勞動, reproductive labor)은 마르크스(Karl Marx, 1818-1883)와 엥겔스(Friedrich Engels, 1820-1895)에서 유래한 개념으로, 잉여를 생산하는 생산적 노동 외에 노동력 재생산에 필수적인 가사노동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재생산노동은 자본주의의 생산을 위해 필수적인 노동이지만 생산경제에 포함되지 않는 비지불노동(unpaid labor)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저평가되었다(Manzo, 2004). 그러나 이러한 비지불 가사노동이었던 재생산노동은 20세기 중반부터 여성들이 노동시장, 즉 생산적 노동에 대거 진출하면서 그 개념적 유효성이 떨어졌다. 따라서 최근에 여성학자들은 재생산노동을 사적인 가사노동의 영역으로부터 분리하여 서비스, 돌봄, 청소노동 등 지불노동의 영역에 적용하기 시작했다(Duffy, 2007). 이때 재생산노동은 전통적으로 여성이 가정에서 전담하던 양육, 교육, 청소 등의 노동이 지불노동의 형태로 전환된 노동을 의미한다.<sup>24)</sup>

---

항, 경고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등의 경고표지 부착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런데 김씨는 세제의 이름도 모른 채 통의 색깔로 세제를 구분하고 있었다. ‘

청소노동은 생산·소비·사회적 재생산의 공간을 쾌적하고 기능적이게끔 유지하고 보존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만약 청소노동이 없다면, 사무실, 공장을 비롯한 쇼핑몰, 상점 등 현대 자본주의를 떠받치는 생산과 소비의 ‘장소들’은 온갖 부산물과 쓰레기들로 뒤덮여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다(Herod & Aguiar, 2006).

특히 현대의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청소노동이 갖는 의미는 특별하다. Gabriel(2005)은 오늘날의 조직을 ‘유리’라는 메타포를 통해 성찰하고 있는데 ‘유리’로 대표되는, 포스트모던 시대의 조직은 ‘고객’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조직은 스스로의 이미지와 브랜드를 조작하고 전시함으로써, 고객에게 ‘환상적이고 매혹적인 신화(enchanting myth)’, 즉 스토리를 제공해야 한다. 여기서 청소노동은 조직의 이미지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노동은 조직의 외관을 항상 반짝거리고 윤이 나게 하고, 조직의 인테리어가 항상 새것처럼 유지되게 함으로써 조직이 의도한 이미지를 드러낼 수 있게 한다<sup>25)</sup>.

하지만 청소노동에 대한 더러운 이미지 때문에 조직은 청소노동을 숨기고자 한다. 청소노동자들은 일반 직원들과는 완전히 분리된 공간, 이를테면 빌딩 지하층 맨 구석의 외딴 곳에 배정될 뿐만 아니라 청소노동은 기업 외부 사람들뿐만 아니라 조직 내의 직원들에게도 보이지 않게 된다. 이 뿐만 아니라 다른 직업군과 달리 대부분 청소노동자들은 식별이 용이하게 정해진 복장 혹은 근무복을 착용하고 건물의 주 이용자들의 불쾌감을 주지 않게 단정한 용모와 깨끗한 복장을 착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sup>26)</sup>.

---

24) 윤세준, 양경욱, 채연주, 김혜련. (2012) 비청결노동(dirty work)과 정체성: 청소노동자의 직무 빚어내기(job crafting), 한국인사관리학회, p.408

25) 윤세준, 양경욱, 채연주, 김혜련. (2012) 비청결노동(dirty work)과 정체성: 청소노동자의 직무 빚어내기(job crafting), 한국인사관리학회, p.409

26) 청소용역 시방서에는 청소원의 ‘일반사항’ 혹은 ‘청소원의 자격’ 항목에 ‘작업원은 정해진 복장을 하고 피복은 항상 청결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와 같은 내용이 포함 되기도 한다.

## 2.1.2 청소노동의 공간

청소노동은 현대<sup>27)</sup> 사회의 도시화된 영역에서 가장 필수적인 노동이다. 한국 도시화 관련 지표는 해방 전의 경우 1930년을 분기점으로 증가하며, 해방 후 1960년 이후 크게 증가한다. 청소노동 또한 1960년대에 이전부터 존재했다.<sup>28)</sup> 도시화된 공간은 아파트 등 대량화 된 집합주거, 대형빌딩 등 업무 및 상업공간 뿐만 아닌 교통시설, 행정시설, 공공시설 등 도시민의 삶을 원활하고 효율성 있게 뒷받침 해주는 각종 시설이 필요하다. 이러한 공간은 주사용자가 직접관리 하지 않는 잉여공간이 있거나, 공간 자체가 재화로 교환되는 서비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쾌적한 상태로 유지되기 위해 청소노동 등 시설관리노동서비스의 수행은 도시에서 필수적<sup>29)</sup>이며 점점 그 필요성은 강조되고 영역은 확대 될 것이다.

청소노동자가 청소노동을 하는 공간은 아파트처럼 여러 소유권이 존재하는 집합건물의 공용공간, 주로 출입구, 계단 복도 등이 이에 해당하며 외부공간이 있는 경우 주차장, 외부통로, 조경면적 등도 포함된다. 공간 주사용자가 직접 관리 하지 않는 건물에, 대표적으로 사무실, 백화점 등 상업용 빌딩이나 병원, 대학 등 연구 및 교육기관의 거의 모든 내부, 외부 공간은 청소노동자의 작업공간이다. 특히 대학은 타 용도건물에 비해서 다수의 건물과 넓은 면적으로 인해 청소노동 적용 범위가 다양하고 넓다<sup>30)</sup>. (사)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에서 작성한 건축물 용도별 1

27) 『한국민중사』에서는 원시·고대사회(삼국시대까지), 중세 1기(삼국통일 이후 고려시대까지), 중세 2기(조선시대), 근대 1기(개항 이후 일제강점까지), 근대 2기(일제강점기), 현대(1945년 해방 이후)로 구분하였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시대구분론)]

28) 조혁진(2017)은 청소·경비와 같은 시설관리직종에서 1960년대, 1970년대에 이미 고용불안 문제가 제기된 바가 있다는 점에서 청소노동이 외주화된 것은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 보다 훨씬 이전의 일이라고 지적한다.

29) 조혁진. (2017) 시설관리서비스산업의 노동의 특성과 작업장의 사회적 관계구조에 대한 연구: 대학사업장 청소·경비 업무를 중심으로, 산업노동연구 23권 3호, p.178

30) 한 대학의 청소업무 시방서에 따르면 청소구역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로 화장실, 복도, 계단, 휴게실, 행정사무실, 강의실 등 공동사용구역 및 관리

인 청소작업 면적 기준은 [표2-1]과 같지만 청소면적은 건물의 특성과 용역업체에 따라 편차가 크다.

[표 2-1] 건축물 용도별 1인 작업 면적 기준(단위 m<sup>2</sup>)  
(출처. 사단법인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구분	일반사무실	백화점	병원	호텔	학교 및 연구단지	지하철역 및 공장	비고
책임자	16,500						
남자	4,950~6,600				6,600~8,250		
여자	990	825			1,320		
책임자 : 16,500m <sup>2</sup> 는 작업면적이 아닌 관리면적임 남자: 외곽 및 작업지원면적임 여자: 실질적인 작업면적임 적용사례: 작업면적이 4,950m <sup>2</sup> 인 경우 작업인원은 남자1명, 여자 5명을 적용해야함 ※평수 기준으로 작성된 표를 m <sup>2</sup> 로 단위 변환하여 재작성함							

청소노동자의 노동 공간은 인간의 생명의 유지를 위한 필수공간이 아닌 분절된 도시민의 삶을 연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용(잉여)공간들이며 이 공용공간들은 도시문화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 작용한다. 도시화가 고도화 될수록 이러한 건물 내외부의 공용공간들은 더 늘어나고 그 중요성은 더 커지기 때문에 그동안 보이지 않게 공간을 관리해오던 청소노동의 존재는 더 이상 숨기 수 없다.



[그림 2-2] 다양한 청소노동의 공간

(출처: (왼쪽) 노컷뉴스 2020.7.6., 김형로, (오른쪽) 노컷뉴스 2022.7.6, 박진홍)

팀이 관리하는 건물외곽 청소(단, 교수연구실 등특정인이 따로 청소하는 구역은 제외)이고 두 번째로는 학교의 공공행사(입학식, 졸업식, 축제, 입시, 총장취임 및 퇴임식등) 및 학교가 지정하는 지원행사(각종정책,감사업무 등)의 청소 및 비품이동 등 업무를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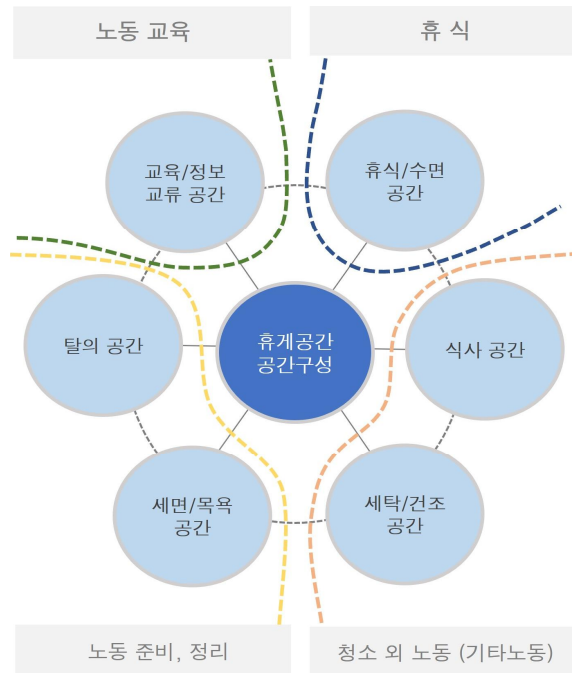
### 2.1.3 노동공간으로서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청소노동자 휴게공간에 대한 논의에서 “청소노동자 휴게공간은 정말 필요한가?”, “왜 일을 하는 시간에 휴식이 필요한가?”와 같은 질문이 빠지지 않는다. 이는 청소노동자의 공간을 단순히 누워서 휴식을 취하는 ‘휴식의 공간’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청소노동자 공간에 대한 단순화된 인식과 ‘이름붙이기’는 청소노동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비지불가사노동, 비숙련 단순노동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에 이바지 한다.

청소노동자는 건축물 내외부를 이동하며 작업하기 때문에 고정된 노동공간이 없다는 특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이라 불리는 공간은 청소노동의 과정 중 거점공간이 되어 청소노동자들의 다양한 노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사용된다.

청소노동자들은 출근을 하면 정규근무시간 전 ‘청소노동자 휴게공간’이라 불리는 청소노동자의 공간에서 작업복으로 옷을 갈아입고(탈의)오전 청소를 한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의 점심시간에 학교 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휴게공간에서 준비해온 점심 도시락으로 식사를 하거나 휴식을 취한다. 이후 오후 청소를 마치고 청소도구들을 정리 한 뒤 다시 휴게공간으로 돌아와 세면도구와 옷 등을 챙겨 샤워시설에서 샤워를 하고 세탁기가 설치된 곳에서 작업복을 세탁한다. 세탁물 건조공간이 없는 경우 휴게공간에 설치된 빨래 줄이나 빨래건조대에 세탁물을 거치한다. 이곳에서 사업장에 따라 요구하는 출근부와 청소업무에 대한 근무일지를 작성하기도 하며 안전교육, 친절교육 등 관련 교육을 받는데,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는 곳이 늘어나서 휴게공간 내 비치된 컴퓨터를 통해 교육에 참여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청소노동자들 간 작업에 대한 정보교류가 휴게공간에서 이루어지며 관리자와 소통이 또한 이루어진다. 또한 청소노동자들의 휴게공간은 청소노동자가 스스로 청소해야 하는 청소노동자들의 추가적인 작업공간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로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내부에는 캐비닛 등 사업장에서 배포한 비품들 외에도 다양한 가구와 기기가 필요하며 다수의 추가 비품



[그림 2-3] 청소노동 휴게공간 프로그램 (출처. 저자 재편집<sup>31)</sup>)

들은 청소노동자들이 직접 버려진 가구 등을 가져오거나 구입하여 조달한다.

이처럼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이라 불리는 공간에서는 안전한 노동을 위한 휴식시설의 기능 외에, 청소노동에 관한 일을 준비하고 정리하며 정보를 교류하는 업무시설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청소노동 외 식사준비, 정리, 작업복 세탁, 세탁물 건조 등의 기타 노동이 벌어지는 노동의 공간이다 [그림 2-2]. 그렇기 때문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을 노동공간의 일부에 포함하여야 하며 청소노동자를 고용하는 건물 내 필수 공간으로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휴게공간' 이라는 불리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청소노동자들의 업무와 기타노동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청소노동자의 공간은 휴식도, 업무도 효율적이거나 안전하게 이루어 질 수 없는 불명확하고 열악한 특성을 가진다 [그림 2-3,4,5,6,7,8].

31) 서울시 경제진흥실이 2014년 3월 발표한 '청소근로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 내 공간구성 다이어그램 p.9



[그림 2-4] 휴게공간에서 식사준비 중인  
광운대학교 청소노동자  
(출처: 오마이뉴스, 2016.12.22, 김동수)



[그림 2-5] 고려대 청소노동자 샤워장  
(출처: CBS노컷뉴스, 2022.7.18,  
임민정)



[그림 2-6] 고려대 서울캠퍼스 법학관 구  
관 지하에 위치한 세면 시설  
(출처: CBS노컷뉴스, 2022.7.18,  
임민정)



[그림 2-7] 부산 동아대 청소노동자 휴  
게실에 걸린 옷들과 빨래줄  
(출처: 경향신문, 2021.8.4,  
반기웅, 강한들, 이두리)



[그림 2-8] 중앙대학교 의학과 경비 초소  
내 청소노동자 휴게실  
(출처: 공공운수노조)



[그림 2-9] 연세대학교 제4공학관 청소  
노동자 공간 내 게시물  
(출처: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지  
<연희관 015B> 13호, 2020.11.20)

## 2.2 대학 캠퍼스(Campus)내 노동

### 2.2.1 대학캠퍼스의 공간 특성

국내 대학은 미국의 영향을 받은 일본식 대학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멀티버시티<sup>32)</sup>를 추구했다. 따라서 구성원의 수가 몇만명에 달하여 중소도시의 규모를 방불케 하는 거대 대학이 각 도시의 도심에 위치하게 되었다. 캠퍼스의 시설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고, 이 과정에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대학 부지 내의 신설이 포화의 단계에 이르렀다. 이 상황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대학이 그 주변의 지역으로 뻗어 나간다면, 교외의 지역에 같은 이름의 캠퍼스를 신설하는 식의 개발 패러다임 정책들을 수십년간 시행하였다<sup>33)</sup>.

대학 캠퍼스는 몇 개의 단과대학(collage)들과 그 산하의 학부들 조직들이 결합하여 하나의 거대한 단지를 이루고 있다. 국내 대학의 경우 본부에서 공간을 모두 관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각 단과 대학에 소유권을 주고 그 공간을 관리하도록 한다. 이미 각 대학산하의 공간들은 한번 대학 소속 건물이나 공간으로 소속이 되어 산정되면 본부에서 그 현황을

---

32) 19세기 후반 기술 산업사회에 진입하면서 대학은 직업사회로 나가는 발판이 되는 주립대학과 전문 대학중심의 유니버시티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이는 현대의 거대한 다원적 대학인 '멀티버시티'의 출현을 도모했다. 더욱 기능적으로 분화가 되어 과학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전문화된 프래그머티즘 교육이 출현하게 되고, 엄청난 수의 교과목을 통한 수업이 제공되면서 필요에 의해 거대 규모의 대학으로 이어진다. 다원구조의 거대 대학의 발달은 넓은 필지를 개발하는 '캠퍼스형' 대학을 양산해 냈다. Takahashi(2009)에 따르면 '캠퍼스형'은 미국이 독자적으로 생산해 낸 대학 형식으로서 유럽 대학이 건축물이 먼저서고 그 중정과 같은 오픈스페이스가 규정되는 반면, 캠퍼스 형은 조닝에 의한 오픈스페이스를 나누고 건물을 들어서게 하는 특성을 가진다. 멀티버시티라는 말은 Kerr 이후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Kerr, C(Ed.). (2001). The uses of the university. Cambridge, Massachusetts : Harvard University Press.

33) 강은기, 백진. (2018). 「도심 캠퍼스 공유공간의 공간 구조 변화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p.147

가늠하기 힘들다. 교수연구실, 대학원 연구실, 대학 부설 연구소 등 전용(專用)되어 장기간 사용되는 공간으로 각 단과대학에서 잠식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용의 문제로 인하여, 대학 캠퍼스 내의 여러 학과가 같이 사용하는 공간, 대학 간 경계나 공동 관리되는 공간들마저 저조한 활용률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 2.2.2 대학캠퍼스 내 ‘보이지 않는 노동’

대학캠퍼스는 거대한 일터이다. 교수, 강사와 행정 직원부터 캠퍼스에 입점한 프랜차이즈 식당 종업원까지, 교육만큼이나 거대한 노동이 캠퍼스에서 매일 이뤄진다. 대학은 다수의 건물과 넓은 면적으로 인해 시설 관리서비스의 적용범위가 넓으며, 이에 따라 많은 노동자들이 고용되어 있다. 1980년대 후반이후 한국 사회의 산업·노동 연구는 대기업 또는 핵심 제조업에 집중되어 왔다. 한국 사회에서 공적 영역으로 인식되는 ‘대학’이 ‘기업화’ 되어 가고 있는 흐름 속에서 ‘대학’이라는 공간은 그 동안 노동 연구의 현장으로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대학은 상아탑이 아니라 ‘비정규직 백화점’ ‘간접고용 백화점<sup>34)</sup>’이나 다름이 없다<sup>35)</sup>.

대학이라는 공간은 현재의 주류 노동연구가 주제로 삼고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불평등 문제, 젠더 불평등, 배제와 차별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공간이다. 정규직 교수와 비정규직 시간강사, 정규직 행정 직원과 비정규직 행정직원 문제부터 시작하여,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근로장학금을 받으며 근로계약서도 없이 ‘조교’라는 이름으로 실질적인 노동자의 역할을 하는 대학원생과 학부생, 대학내 판매서비스 노동자, 시설관리노동자의 저임금과 차별문제 등 다양한 노동문제가 발견되는 현장이다. 고등교육의 핵심 교육기관인 대학공간의 하부구조를 떠받치고 있는 ‘보이지 않는 노동’이 존재한다.

대학의 대표적인 ‘보이지 않는 노동’으로 경비, 주차관리, 청소, 전기·기계 등 시설관리, 급식실 조리 등이 있으며 이 들 중에서도 고용조

34) ‘경기도내 대학 비정규직 비율 전체 고용자 수의 절반 넘는 62.5%’, 뉴스피크 (<http://www.newspik.kr>), 2019년 12월 17일, 김동수 기자

‘2019년 경기도 대학 비정규직 실태조사 보고회’에 따르면 경기도내 대학의 비정규직 비율이 전체 고용자 수의 절반이 넘는 62.5%이며, 대학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장 힘든 점으로는 ‘낮은 임금’을 꼽았다. 이들의 평균 연봉은 정규직 대비 56.1%로 조사 되었으며 월 급여는 37.5%가 150만 원 이하를 26%가 151만원에서 180만 원 이하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35) "학생들 오기전 청소 마치려면 쉴 틈도, 쉴 데도 없다"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 2021년 1월 13일, 우태경 기자.

건에 따라 간접고용 된 노동자들은 이 노동현장에서도 이중적 차별대우와 고용불안을 겪는다. 최근 대학 자동화로 인해 경비노동자와 주차관리노동자 인원 감축을 겪고 있으며 대기업 프랜차이즈 식당의 대학에 입점이 증가<sup>36)</sup>함에 따라 노동자 수가 급감한 대학 급식실 조리 노동자에 대한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측면이 있다. 이 노동자들은 대부분 간접고용노동자들이며 저임금, 불안정 고용, 근로환경문제 등을 겪고 있으며 대학은 매해 인건비 인상을 이유로 ‘재생산 노동자’ 인원감축을 한다. 정년퇴직자의 자리를 비워 기존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를 높이고, 초단시간 알바를 채용하거나 ‘근로장학생’을 모집하여 학생들의 손에 청소도구를 쥐여 주며 장학금이라는 이름 시급을 지급하기도 한다<sup>37)</sup>.

이에 대해 봄이면 여러 대학에서 청소노동자 및 시설관리직 노동자들의 파업과 농성이 반복되고 있으며 2022년 8월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의 서울지역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실태조사와 휴게시설 점검을 실시를 포함하여 고용안정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36) ‘대기업 프랜차이즈 밀려오는 ‘캠퍼스 상업화’, 대학생협 활로는?’ ,한겨레 (<https://www.hani.co.kr/>) , 2016년 6월 4일, 조현경기자

2005년엔 학생 편의시설을 늘린다는 명목으로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해 기숙사 등의 민간투자시설을 대학부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2012년엔 ‘대학자율화 추진계획’을 통해 ‘교육용 기본재산의 수익용 전환 허용’, ‘민자 사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 등을 잇따라 내놓으며 사립재단의 대학시설에 대한 상업적 운영 권한을 강화했다. 2015년 기준 서울 소재 48개 대학교 450개 입점업체 중 상당수는 대기업이나 대형 프랜차이즈의 상업시설이다. 가장 많이 입점한 기업은 6개 대학 19개 업체에 입점한 (주)아워홈이며, (주)신세계푸드, 지에스리테일(GS25), 비제에프(BGF)(CU), 삼성웰스토리가 그 뒤를 이었다. 대학들은 이들 외부 상업시설에서 발생한 수익을 장학금 등 학생복지에 사용한다는 명분을 내세운다. 하지만 결국 학생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을 대기업과 대학이 나눠 갖고 나머지 일부를 되돌려주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셈이다.

37) ‘[담합하듯 청소·경비노동자 구조조정] 알바로 대체하고 근로장학생에게 빚자루 쥐여줘, 꼼수 사례 확인된 대학만 13곳’,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 , 2018년 1월 16일, 윤지은기자

2018년, 동국대 서울캠퍼스에서는 청소노동자 86명이 교내 미화업무를 담당했다. 그런데 지난달 말 정년퇴직한 8명 자리를 비워 둔 채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있다. 학교측은 학교 홈페이지에 ‘근로장학생’ 공고를 냈다. 청소노동자를 충원하는 대신 시급 1만5천원짜리 하루 2시간 초단시간 아르바이트 자리를 만든 것이다. 학교측은 공고문에서 “청소근로업무를 수행할 장학생을 모집한다”며 “휴지통 수거, 바닥청소 등 중앙도서관(법학도서관과 기타 건물 포함) 청소·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이다. 장학금으로 표기한 시급은 1만5천원이다.

정부에 요구했다.



[그림 2-10] A대학 지하 기계실 내 시설관리 노동자의 공간  
(출처: 비정규직 없는 A대학 만들기 공동행동, 2019년 자료)



[그림 2-11] A대학 급식실 조리노동자 공간(왼쪽),  
조리 공간 내 설치 된 샤워실(오른쪽)  
(출처: 비정규직 없는 A대학 만들기 공동행동, 2019년 자료)



### 2.2.3 공유재(communs)로서 대학캠퍼스의 의미

오늘날 대학 캠퍼스의 규모와 구성원의 수 등을 고려할 때, 대학 캠퍼스가 가지는 도시에서의 위상은 매우 높다<sup>38)</sup>. 이에 도시공간에서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지식과 생산의 공간이자 시대가 지향하는 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서 사회적 역할 등이 대학에게 요구되고 있다. 더구나 국내의 고등교육 취학률이 70%에 이를 정도로 고등교육이 보편화된 사회가 됨에 따라서 고등교육, 즉 대학 캠퍼스에서 ‘공공성’의 의미도 중요해지고 있다.

Saito(2009)에 의하면 공공성이란 공적인(official)것과 공동적(common)이라는 의미, 그리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open)는 의미를 가진다<sup>39)</sup>. 특히 공동적(common), 공유재(communs)의 특성은 특정집단의 사유물이 아닌 다양한 구성원들로 유지 및 관리되는 대학 캠퍼스의 특성과 맞닿아 있다. 공유재(communs)에 대한 개념은 예로부터 각 시대상을 반영하여 변화해 왔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Hardin, 1968; Eliner Ostrum, 1990; Castree, 2008; Choi, 2013; Hwang; 2016). 과거 자연 자원의 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졌던 것과 달리, 현재의 공유재 논의가 도시공간으로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본다면 공유재 관점에서 대학 캠퍼스를 이해하는 것도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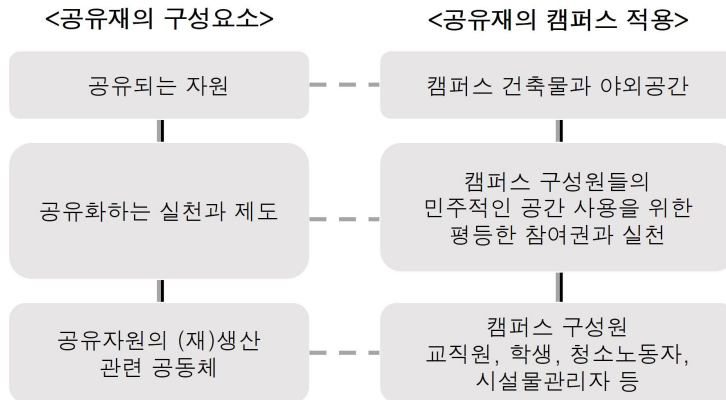
최근 공유재 연구자들은 공유재의 구성요소를 3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한다(Kip et al., 2015, p.13). 첫째는 공유되는 자원을 말하며, 둘째, 공유화(commoning)하는 실천과 제도, 세번째는 공유자원의 생산과 재생산에 연루된 공동체로 구분된다. 이에 따르면 공유재는 특정자원의 물리적 측면만으로 한정되지 않고, 그러한 자원을 운용할 제도와 사람과의 복합적 구성물로 이해된다. 이는 사유재산으로 등록된 토지와 건물로 가

---

38) 강은기. (2020). 「캠퍼스 공유재 제도의 원리와 분석 체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공학박사 학위논문. p.42

39) 강은기. (2020). 「캠퍼스 공유재 제도의 원리와 분석 체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공학박사 학위논문. p.20

특한 자본주의 도시에서도 새로운 공유재를 상상하고, 생산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할 수 있게 한다<sup>40)</sup>.



[그림 2-12] 공유재 구성요소의 캠퍼스 적용 다이어그램 (저자 작성)

대학 캠퍼스 공간에도 위의 3가지 구성요소를 적용하면 [그림 2-11]와 같이 ‘캠퍼스 건축물과 야외공간’을 공유되는 자원으로, ‘캠퍼스 구성원들의 민주적 공간 사용을 위한 평등한 참여권과 실천’을 공유화하는 실천과 제도로, 마지막으로 ‘캠퍼스 구성원’이라는 공동체로 분류할 수 있다. 캠퍼스 내에서 교수, 교직원과 학생뿐만 아니라 청소노동자와 시설물 관리자들도 구원이며 공유재(communs)로서의 캠퍼스는 구성원 모두가 평등하게 의사 참여를 할 수 있는 공동체의 일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 사용의 권리를 가지고 이들을 위한 공간이 평등하게 분배될 필요성이 있다.

40) 황진태. (2016). 「발전주의 도시 매트릭스의 구축」. 한국지역지리학회지. Vol.22 (2). p.2

## 2.3 국내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관련 법제도

### 2.3.1 법제도 변천 과정과 주요내용 분석

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과 관련된 법적 규정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위생시설(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의 설치에 관한 내용으로 2012년 「산업안전보건법」의 제29조8과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의5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었다. 그러나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세부기준도 마련되지 않아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서울시가 2014년 3월, 전국 최초로 청소노동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청소근로자 환경시설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서울시 공공건축물에 우선 적용하되 민간에서는 자율적으로 적용토록 하였다. 그 내용은 휴게공간 설치에 대한 5가지 기본원칙<sup>41)</sup>을 중심으로 조명·소음·공기와 같은 실내환경 등에 관한 세부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서울시 청소근로자 현장방문 및 실태조사 결과(2013.11.20., 노동정책과)조사를 선행하여 청소노동자의 요구사항을 청취 후 법령에 없는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청소노동자’를 특정하여 보다 실질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였다. 이후, 경기도(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 규정 표준안(2018))와 경상남도(경상남도 공공부문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2021))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공공건축물에 적용하는 휴게시설 관련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으며, 정부도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2021)’을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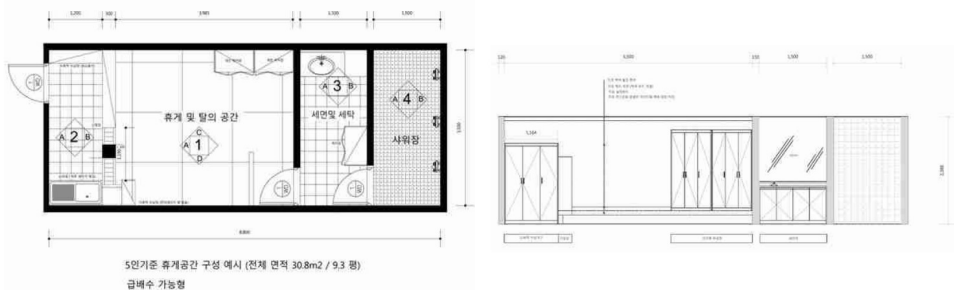
그 중 2014년 서울시 ‘청소근로자 환경시설 가이드라인’ ([표2-2])은 2021년 법령이 마련되기 전까지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준 자료로 사용이 되었다. 규모와 기존적인 휴게시설 내부 환경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청소노동자 대부분이 고령자인 특성을 감안하여

41) ① 휴게실, 샤워실, 탈의실, 세탁실 등을 복합적으로 구성 ② 청소근로자만의 전용 휴게공간 확보 및 남녀 구분 설치 ③ 거점 별 휴게공간 마련(작업공간으로부터 100m 내에 휴게공간 설치) ④ 냉난방 환풍기, 생활가전제품, 수납가구, 침구류 등 필수 비품 구비 ⑤ 1인당 5㎡ 내외의 적정규모 공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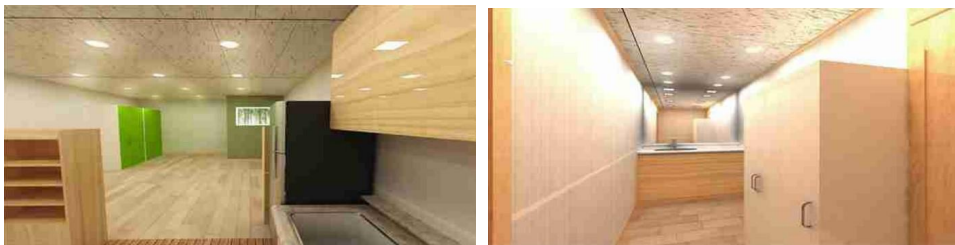
[표 2-2] 서울시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2014

구분		주요 가이드라인
공간	위치	· 휴게공간은 작업공간과 인접하도록 배치 · 다른 근로자와 동선이 혼재되지 않도록 독립적으로 설계, 전용공간 확보 · 관리범위가 넓은 경우 거점별로 휴게공간 마련
	규모	· 1인당 면적: 5㎡ (1.65 평) or 내외로 구성
	공간구성	· 휴게, 세면(목욕), 세탁, 탈의, 식사가 가능해야 하며 가급적 동일공간 내에 구성 · 청소도구 수납공간을 별도로 마련(휴게공간이 작업도구 보관함으로 사용되는 것 방지)
환경	실내조명	· 조명효율이 높은 LED 사용, 공사활용 목적에 따라 100~200 Lux 내외로 설치 · 경직된 한색계열보다는 중성색과 난색계열의 조화로운 조명색 사용
	실내공기	· 쾌적한 실내환경을 위한 냉난방 시설 및 환풍기 설치 · 적정온도 유지(여름 26-28℃, 겨울 18-22℃) / 습도 50-55% 유지
	실내소음	· 휴게공간 내 소음 허용기준으로 50db 이하로 유지 · 작업공간 소음이 휴게공간 내부로 흘러 들어오지 않도록 차음성능 마감재 사용
디자인	마감재료	· 바닥: 전기온돌, 내마모성, 내수성, 내화성을 고려한 재료 선택 · 벽: 내구성, 내수성, 눈부심이 없는 재료, 유지보수가 편리한 재료 사용 · 천장: 오염, 부식에 강한 재료, 흡음성이 강하고, 불연, 질감이 좋은 재료 사용
	실내색채	· 색의 배분은 주조색 60%, 보조색 30%, 강조색 10% ·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를 위해 난색계열의 증명도, 저채도 색 사용
	가구 전자제품	· 냉장고, 전자레인지, 전기포트, 세탁기 등 비치 · 개인사물함, 신발장(도어형), 다목적 수납함, 싱크대 배치

2013년 서울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적용된 실내 마감재 사용을 제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과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마감재 사용을 제안한다. 휴게공간 뿐만 아니라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세탁물 건조공간 포함)’ 과 주요 가구에 대한 세부기준도 명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휴게공간 실내·실외 디자인 표준안을 작성하여 적용에 용이하도록 하였다.



[그림 2-13] 5인이하 급배수 가능 3D 실내투시도(위), 평면도 및 입면도(아래)  
(출처: 2014 서울시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 p.29,30)



[그림 2-14] 5인이하 급배수 가능 3D 시뮬레이션  
탈의 및 휴식공간(왼쪽), 탈의 및 세면공간(오른쪽)  
(출처: 2014 서울시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 p.28)

## 2.3.2 개정 법령 주요내용 및 한계점

상위 법령의 강제성 부재에 따른 휴게시설 미설치나 기존 휴게시설의 환경개선 미집행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sup>42)</sup>됨에 따라, 2021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을 통해 휴게시설 설치의무와 처벌규정, 구체적인 휴게시설 기준이 명문화되어 시행 중에 있다(제128조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4조의 2)[표 2-3].

이와 같은 법제도 수립 및 개선에 대하여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는 실제 현장의 의견<sup>43)</sup>이 관련 규정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가령, 휴게시설의 면적 기준은 상시근로자의 수를 고려하지 않은 채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은 기준을 제시하여 실질적인 반영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무엇보다 언론과 노동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지하, 옥상, 계단 아래 등 휴식을 취할 수 없는 환경에는 휴게시설 설치를 금해야 한다는 요구는 반영되지도 않았다.<sup>44)</sup> 이 외에 법령이 적용되는 사업장 규모를 차등하고 있어서 사업장 규모에 따른 근로자 차별의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남녀 휴게시설의 분리가 강제사항이 아닌 고려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첫째, 크기와 위치이다[표2-3의 1번]. 시행규칙에서 휴게시설 최소바닥면적 6제곱미터(약1.8평) 기준만 있을 뿐, 상시근로자 수를 고려하거나 동시사용 시 1인당 면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업무

---

42) 서울시의 경우, 2018년 서울시와 산하기관, 민간위탁기관 등의 휴게시설 일제 점검을 진행하였으나, 실제 환경개선으로는 이어지지 않아 청소노동자의 불편함을 초래하였다(윤세권 (2020.5.4.), 이광호 “서울시, 청소노동환경시설 가이드라인 외면”. 송파타임즈, <http://www.songpatimes.com>)

43) 2022년 6월8일 민주노총과 시민단체는 시행령 제정을 위해 1만인 노동자 시민의 서명(14,693명)과 노동자들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전국 노동자청 앞에서 1인 시위와 증언대회, 기자회견 등을 진행하였다. ‘전 사업장 적용 확대, 최소 면적 9㎡ 설치, 관리 사항 노사합의’ 등의 사항이 요구되었지만, 개정된 법령에는 그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22. 8. 17.),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 관련 시행규칙, 졸속 처리하는 노동부를 규탄한다.)

44) 이시현, (2022.5.17.), 누더기가 된 ‘휴게시설 의무화법’ : 쉼 권리, 또다시 이윤 뒤로 밀려나, 노동자연대. <https://wspaper.org/>

[표2-3] 2022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휴게공간 주요 내용

분류		주요 내용	
1	휴게시설의 크기·위치	크기	·휴게시설 최소 바닥면적은 6㎡이상(공동휴게시설의 경우 최소면적에 사업장의 개수를 곱한 면적 이상) ·천장고 2.1m이상으로 확보 *다만, 근로자의 휴식주기, 남녀, 동시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협의한 면적을 최소면적으로 할 것
		위치	·휴게시설의 위치는 이용이 편리하도록 작업장소와 충분히 가까운 곳에 위치 (공동휴게시설의 경우 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20%를 넘지 아니할 것) ·화재폭발, 유해물질, 분진 소음 노출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
2	휴게시설의 환경	온도	18~28℃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냉난방 기능을 갖추 것
		조명	100~200Lux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 것
		습도	50~55%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 것
		환기	창문 등을 통해 환기가 가능할 것 *창문 또는 환풍기, 공조시스템 등을 통해 환기를 시킬 수 있음 단, 외부 오염물질이 실내로 들어올 경우 공기유입구 재배치 필요
3	비품설비	비품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을 구비 할 것 *단, 휴게시설을 좌식으로 설치·운영는 경우 비치하지 않아도 됨
		설비	음용이 가능한 물을 제공하거나 해당 설비를 갖추 것
4	휴게시설 관리	담당자	휴게시설을 관리하는 담당자를 지정할 것(공동 휴게시설의 경우 사업장마다 각각 담당자를 지정할 것)
		운영관리	휴게시설임을 할 수 있는 표지를 휴게시설 외부에 부착할 것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5	휴게시설 설치 의무자	·원도급자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하도급자는 원도급자뿐 아니라 원도급자의 소유자도 휴게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음 ·원청업체가 원청업체에 근무하는 경우 원청업체 소유자에게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적용	
6	의무 운용 사업장 기준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총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사업장(건설업, 관계수급인 공사금액 포함) ·상시근로자 수(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10명 이상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개 직종 근로자 <sup>45)</sup> 를 2명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7	과태료 부과	·휴게시설 미설치 시: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미준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와 휴게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휴게시설의 구체적인 면적을 정하고 협의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로 부과대상에 해당되지만 근로자대표와 사업주의 협의자체가 사실상 적용되기가 힘들다. 공동휴게시설 설치의 경우 ‘바닥면적 6제곱미터에 사업장의 개수를 곱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을 뿐 더 이상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모호 시행규칙이어서 실질적인 반영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두 번째는 시행령 적용 사업장을 규모로 차등을 둔 것이다.[표 2-3의 6번] 과태료 부과대상을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한정하여 ‘작은사업장 노동자 차별’이라는 노동계의 지적이 있다. 특히 20인 이상 사업장의 93.2%는 이미 휴게시설을 설치된 것으로 조사 되어<sup>45)</sup> 법 시행으로 증설되는 휴게시설의 개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제재 대상 규모 미만 사업장은 휴게시설에 대한 설치 의무 면제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법의 4년의 재검토 기간을 두어 4년 이내에 이 규정을 바꿀 수 있는 시도조차 막아버렸다고 노동계는 비판한다.<sup>47)</sup> 그 외 남녀 휴게시설 분리가 강제사항이 아닌 고려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언론과 노동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지하, 옥상, 계단 아래 등 휴식을 취할 수 없는 환경에는 설치를 금해야 한다는 요구도 반영되지 않았다.<sup>48)</sup> 그리고 소음의 기준도 누락되어 있어 앞서 만들어진 서울시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빈약하다.

본 연구의 대상인 대학청소노동자 휴게공간의 경우, 별도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법령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대학 내 공간 활용 관리는 각 대학별 ‘공간관리 규정’을 따른다. 이에 대부분의 대학 공간은 「대학 설립·운영규정」<sup>49)</sup>에 따라 4가지 용도<sup>50)</sup>로 구분된다. 그

45)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7개의 직종 근로자

: 1)전화상담원 2)돌봄서비스 종사원 3)텔레마케터 4)배달원

5)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6)아파트 경비원 7)건물 경비원

46) 중기중앙회 및 경총 조사, 2022년 1월

4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22년 8월17일 [성명]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 관련 시행규칙, 졸 속 처리하는 노동부를 규탄한다.

48) ‘누더기가 된 ‘휴게시설 의무화법’ : 쉼 권리, 또다시 이윤 뒤로 밀려나나 ‘노동자연대. 2022년5월17일. 이시헌 노동자연대 청년학생그룹 회원

49) 이 영은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산업대학교·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설립기준과 대학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중 청소노동자가 포함되어있는 대학 내 시설관리서비스 노동자나 그 휴게공간에 대한 분류 항목은 없다. 대학 공간관리 규정뿐만 아니라 청소 노동자를 위한 공간에 대한 정의(definition)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청소노동자 휴게공간은 대학 공간 용도분류 내 ‘그 외 부대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대학이 청소노동자를 대학의 구성원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대학 내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설치 주체에 대해서는 동일 규정 내 공간사용의 기본 원칙<sup>51)</sup>에 따라 대학 내 공간사용의 관한 권한과 책임은 총장에게 있으며, 개정된 법령에 따라서도 원청사업주인 해당 대학의 총장에게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2.24, 2005.3.25>

- 50) ① 교육기본시설: 강의실, 실험실습실, 세미나실, 교수연구실, 행정실, 도서관, 학생회관, 체육관, 대학본부 및 그 부대시설  
 ② 지원시설: 강당, 실습장, 학생기숙사 등 학생 주거용 시설 및 그 부대시설 ③ 연구시설: 연구용 실험실, 대학원 연구실, 대학부설연구소 및 그 부대시설 ④ 부속시설: 박물관, 미술관, 동물병원 등 시설 및 그 부대시설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 51) 가령, 본 연구의 사례 대상인 A대학 공간관리 규정에는 “제2장 공간의 사용 및 관리 제5조(공간사용의 기본원칙) ① 본교가 관할하는 모든 공간의 점유 및 사용 권한은 총장에게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 2.3.3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관련 건축법

건축법에서 청소노동자 휴게공간에 대해 명시된 법령은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해 「주택법」 및 「건축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후속 입법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청소·경비 등 공동주택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 면적 및 위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이외의 건축물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휴게시설 면적을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이에 서울시는 2022년 12월 청소원·경비원의 휴식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건축심의<sup>52)</sup> 시 노동자 휴게공간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고 밝혔으며 건축심의 과정에서 건축주가 건물 관리 예정자 수를 파악하며 적정규모의 전용 휴게시설 설치 도면을 제출하게 할 방침이다. 이 전용 휴게공간은 자연 채광과 환기과 원활한 곳에 있어야 하며 별도 화장실과 샤워실을 갖춰야 한다. 서울시는 노동자 휴게공간 설치 권고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용적률 인센티브와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서 일부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며 2023년 1월 국토부에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서울시의 방침은 신축 건물에 한정되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존건물에 대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며, 건축심의기준 이하로 지어지는 건물에 대한 휴게공간 설치 유도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2014년 발표한 서울시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청소노동자 휴게공간은 건축법 제2조 6의 ‘거실’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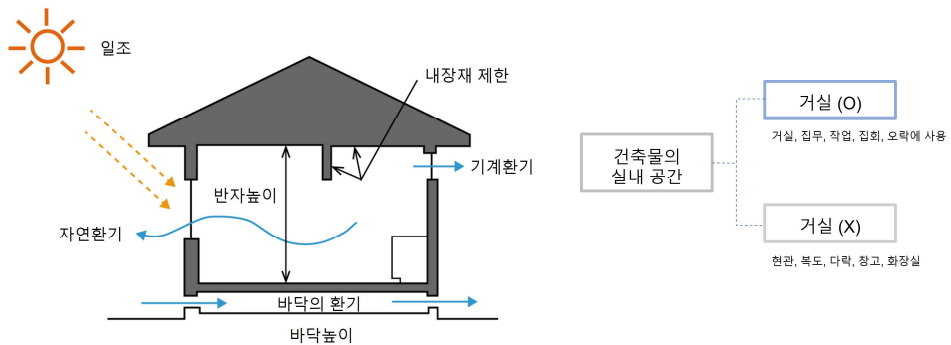
“거실(居室)”이란 일반적으로 주택의 living room 으로 알고 있으나 「건축법」상의 거실이<sup>53)</sup>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오락, 그

52) 건축심의를 건축 인허가 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단계이며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이상 규모로 지어지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53) 주택: 침실, 서재, 대청, 응접실, 주방, 식당, 가사실 등  
사무소: 사무실, 응접실, 역원실, 회의실, 숙직실 등  
점포: 매장, 사무실, 조리실 등 · 공장: 작업장, 식당, 사무실, 휴게실 등  
병원: 병실, 진찰실, 수술실, 간호사실, 의사실 등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sup>54)</sup> 거실은 사람이 오랜시간 연속적으로 머무르는 곳이므로 보건위생(채광, 환기, 방습, 반자 높이 등)<sup>55)</sup>과 방재 및 피난(내장, 비상용 승강기 설치, 비상조명 장치설치 등)<sup>56)</sup>을 위하여 거실이 아닌 실<sup>57)</sup>에 비해 규제가 강화된다[그림 2-3].

청소노동자 휴게공간이 주로 위치 한 계단실 하부, 창고, 기계실 내부, 주차장, 화장실은 거실에 해당하지 않으며 ‘휴게’라는 용도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연속적으로 오래 머물 수 없는 곳이다.



[그림2-15] 거실과 관련된 규정과 개념 (저자 재편집)



[그림2-16] ‘거실’ 이 아닌 공간에 만들어진 휴게공간 (출처: 경향신문)

54)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6호

55) 보건위생과 관련한 규정 ①거실반자의 설치(영 제50조) ②거실의 채광 등 (영 제51조) ③거실 등의 방습(영 제 52조)

56) 방재 및 피난과 관련된 규정 ①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영 제61조) ②직통 계단의 설치(영 제36조) ③옥외 비난계단의 설치(영 제 36조)

57) 현관, 복도, 계단, 화장실, 세면소, 기계실, 창고, 창고 등

## 3. A대 학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

3.1 연구대상지 청소노동의 특성
3.2 연구대상지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현황
3.3 연구대상지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특징 분석

---

### 3.1 연구 대상지 청소노동의 현황

A대학 청소노동자들의 출근시간은 오전 6:00~6:30이며 퇴근은 오후 3:00~3:30에 이루어진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8시간일 때 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이 주어지는데, 주로 오전 10:30~11:30 사이 정해진 휴게 공간에서 휴식을 취한다. A대학에서 정한 청소노동자 1인당 청소면적은 약 2,000㎡ 이지만 단과대나 기관별 건물 구조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sup>58)</sup>. 3년 마다 이루어지는 발령에 따라 건물을 옮겨가며

청소노동을 한다. 청소구역은 대학 직원들의 개인공간과 업무공간을 제외한 학교의 모든 공간이라 할 수 있고, 교수(교직원)와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기 전(오전 9:00~10:00사이)에 복도, 강의실, 화장실 등 공용공간을 모두 청소한다. 또한 청소노동자들의 노동은 건물 내부뿐만 아니라 건물 외부에서도 계절에 따라 이어 진다<sup>58)</sup>. 외부환경이 건물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노동량의 편차가 특히 심하다. 교직원과 학생들이 캠퍼스 건물의 방에서 방으로 이동하며 시간을 보내는 ‘점(Point)적인 공간사용’을 하는가 하면, 청소노동자들은 건물 내부의 모든 바닥과 벽을 돌아가며 청소하기 때문에 노동시간 내내 ‘면(Plane)적인 공간사용’을 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노동시간 중 휴식시간이 발생하기 어려우며 노동시간 내내 끊임없이 몸을 움직이기 때문에 대학 내 다른 구성원들에 비해 휴식시간의 중요성이 높다.

구분	채용분야	채용인원(명)		담당직무
		구분	인원	
시설 관리직 (무기계약)	청소	일반	19	·건물 및 외곽 청소, 재활용 분리수거, 제설 작업, 낙엽제거 등
		보훈	1	
	경비	일반	6	·건물 내·외 정기 및 수시 순찰 출입자 단속 및 질서 유지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조치 및 보고, 제설작업, 낙엽제거 등
계			26	

채용분야	근무시간	휴게시간	계약기간
청소(원)	주40시간, (1일 8시간) (06:30 ~ 15:30)	· 11:00 ~ 12:00	2023. 3. 1. ~ 정년(만60세)
경비(원)	24시간 교대근무(06:30~익일06:30) ※ 감시직 근로자 적용	· 11:00 ~ 12:00 · 17:00 ~ 18:00 · 23:00 ~ 05:00	

※ 소속기관 사정등에 따라 근무(휴게)시간이 조정 될 수 있음

※ 정년이후 근무실적, 건강상태 등 별도의 심사기준에 적합할 경우 촉탁 6년 근무 가능

[그림 3-1] 2022년 A대학 시설관리직(청소, 경비) 신규채용  
선발 예정인원(위) 및 계약조건(아래)  
(출처: A대학 홈페이지 채용공지)

58) ‘A대 청소노동자, 어떻게 일하고 있나요- 현장을 통해 본 노동환경의 개선점과 남은 과제들’, A대 저널. 2021년 5월 16일. 김덕훈 기자  
59) ‘여름에는 잡초를 뽑고, 가을에는 낙엽을 치우고, 겨울에는 눈을 치운다’, A대 저널. 2021년 5월 16일. 김덕훈 기자

## 3.2 연구대상지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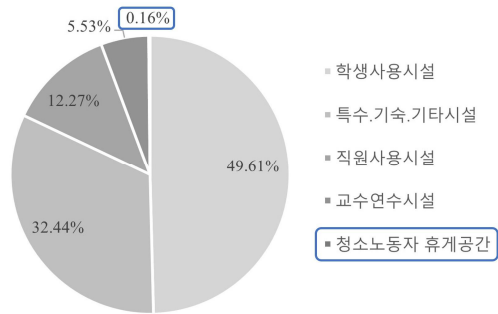
2022년 기준, A대학의 130개 청소노동자 휴게공간의 면적의 합은 2,379m<sup>2</sup>로 A대학캠퍼스 건물 연면적인 1,505,619m<sup>2</sup> 중 0.16%를 차지하며[그림3-2] 1개 휴게공간의 평균 면적은 18.30m<sup>2</sup>이다. 휴게공간을 사용하는 청소노동자는 총 336명<sup>60)</sup>으로 휴게공간 1개소 내 평균 2.58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1인당 평균 휴게공간 면적은 약 6m<sup>2</sup>이다. 대학 내 타 구성원들의 1인당 평균 공간 사용면적과 비교했을 때 4~5배 이상 면적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3-3]<sup>61)</sup>. 법적 최소 면적인 6m<sup>2</sup>미만의 청소노동자 휴게공간은 없는데 이는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개선사업의 성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법적기준의 적절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지인 7개 단과대학 및 도서관, 19개소 청소노동자 휴게공간의 1인당 평균 휴게공간 사용 면적이 캠퍼스 전체 기준보다 좁은 5.01m<sup>2</sup>(여자청소노동자 휴게공간 평균면적:4.68m<sup>2</sup> / 남자청소노동자 휴게공간 평균면적:5.33m<sup>2</sup>)이며 63%의 휴게공간에서 평균 인원 이상의 청소노동자가 사용하고 있다 [표 3-1]. 대학의 타 구성원들과 비교하여 청소노동자의 휴게공간이 균등하게 분배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소노동자 직군 내에서도 휴게공간 분배의 편차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유효 휴게면적’을 휴게공간 분석을 위한 기준으로 제시한다. [그림 3-4]와 같이 ‘유효 휴게면적’은 휴게공간 내부 벽체에서 0.6m 이격하여 산정한 면적이며 주로 벽체에 배치되어 있는 가구 및 집기의 면적을 제외한 실제 휴식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바닥 면적이며 이를 통해 청소노동자의 휴식에 필요한 실질적 면적기준을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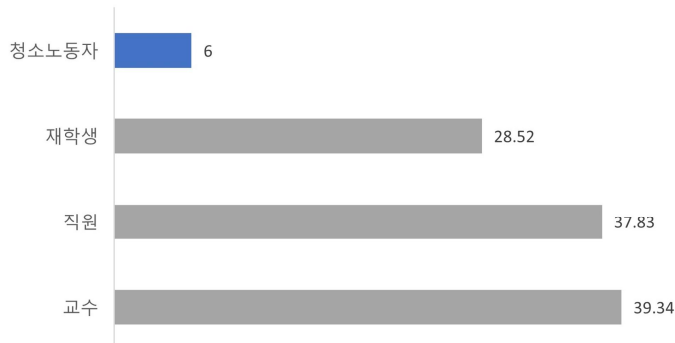
---

61) A대학 통계연보 2021년판과 A대학 민주노총 전국일반노동조합 시설관리분회 제공자료를 통해 저자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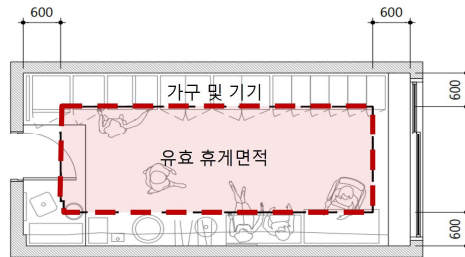


[그림 3-2] 시설별 캠퍼스 공간 면적(%) (저자 작성)

■ 교수 ■ 직원 ■ 재학생 ■ 청소노동자



[그림 3-3] 사용자별 1인 공간 사용면적(단위: m²) (저자 작성)



[그림 3-4] 유효 휴게면적 개념 (저자 작성)

연구 목적은 연구대상지 건물의 준공년도를 기준으로 오래된 순서로 작성하였으며, 성별로는 ‘여자-남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순서로 휴게공간을 분석내용을 배치하였다. 휴게공간과 연계된 청소노동자 사용시설인 샤워시설, 세탁시설에 대한 사례연구도 포함하였다.

[ 표 3-1 ] 연구대상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현황

번호	구분(동)	준공연도 (리모델링 연도)	연면적 (㎡)	여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남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층수	면적 (㎡)	사용 인원	1인당 면적 (㎡)	층수	면적 (㎡)	사용 인원	1인당 면적 (㎡)
1	중앙도서관	1975	57,751	1	15.34	3	5.11	1	32.69	6	5.44
					23.89	4	5.9				
2	미술대학	(b) 1975	1,528	3	7.66	2	3.8	-	-	-	-
		(e) 2015	2,125	-	-	-	-	1	24.67	3	8.2
3	법학대학 (d)	1983 (2005)	6,433	2	19.21	5	3.8	1	19.74	4	4.9
4	약학대학 (a)	2000	435	4	14.42	2	7.2	-	-	-	-
5	공과대학 (b)	2001	26,806	7	19.345	5	3.96	6	23.09	3	7.69
6	수의과대학 (a)	2002	16,568	6	8.61	2	4.3	5	10.8	3	3.3
				6	11.44	2	5.72	-	-	-	-
				3	14.3*	1	14.3				
7	농업생명대 (b)	2003	47,256	1	16.3	5	3.26	1	15.75	2	7.8
				1	8.97	3	2.99	-	-	-	-
8	행정대학원 (a)	2010	5,289	4	16.36	3	5.45	1	-	1	-
						평균 1인당 면적					
						4.68					
								평균 1인당 면적			
								5.33			

\*수의대 여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3은 비공식적 휴게공간으로 분류되어 평균면적 산정에서 제외하였다.



### 3.2.1 중앙도서관

A대학의 중앙도서관은 1975년에 지어진 본관과 2015년에 완공된 신관으로 구분되며, 총 면적 57,751㎡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대학도서관이다 [그림 3-5]. 대학 생활의 중심시설로 캠퍼스 중심에 배치되어 있으며<sup>62)</sup> 의미와 시설면에서 캠퍼스의 랜드마크로 꼽힌다<sup>63)</sup>. 2022년 6월 기준 총 21명(여자 15명 및 남자 6명)의 청소노동자가 이 두 건물을 청소를 담당하고 있으며(본관 8명 및 신관 13명), 신관에는 청소노동자 휴게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본관 지상 1층에 총 5개소의 휴게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단일 건물로도 규모가 큰 신관의 면적은 27,245㎡으로 건물 내 휴게공간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근무지와 동떨어진 본관에만 휴게공간이 설치되어 있어 신관의 화장실 비품박스 뒤 공간에 의자를 두고 잠깐씩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sup>64)</sup> A대학 측은 가이드라인에 준수하는 청소노동자를 위한 전용 휴게 공간을 갖추었다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중앙도서관 본관의 청소노동자 휴게공간은 지상 1층에 위치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물리적 환경을 고려하면 지하 1층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경사지에 조성된 A대학은 법적으로 지상층이나 실제로는 지

---

62) A대학교 70년사, A대학교의 내실 확충과 종합화 모색(1960~1975) p.49

63) '700억 기부금이 만든 중앙도서관 신관, 곳곳에 숨겨진 동문 이름', A대학교 총동창회 뉴스. 2021년 4월. 51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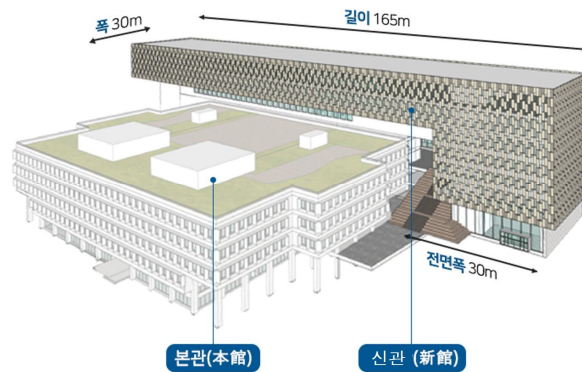
64) A대저널. 2021년 5월 16일. 김덕훈 기자

청소노동자들은 휴게시설이 청소 담당 건물 바깥에 있어 현실적으로 이용이 쉽지 않다고도 지적한다. A씨는 "도서관 건물이 워낙 넓어 일하는 중간에 쉴 필요가 있는데, 그 때마다 휴게실에 다녀오기엔 시간도 체력도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코로나 유행 이후엔 한 공간에 여럿이 모여 있기가 신경 쓰여서 휴게실 사용을 더 꺼리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최은서, 2021.7.21., [단독] 화장실 휴지 상자 뒤 세 뺨 공간...A대 청소노동자 쉼터였다, 한국일보). 이와 관련하여 A대학 노동조합분회장은 "신관 8층에서 휴게실까지 100m 정도 되는데,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 거리의 휴게실을 얼마나 편하게 갈 수 있겠는가" 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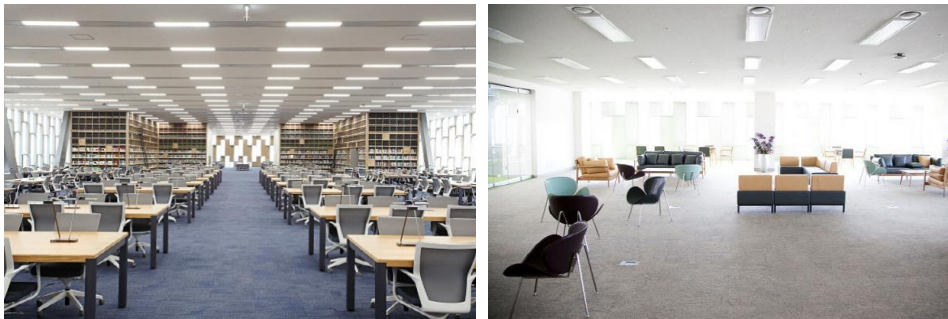
65) A대학교 중앙도서관 건립백서(2016)



[그림 3-5] 중앙도서관 배치도 (저자 작성)



[그림 3-6] 중앙도서관(신관-본관) 개요도<sup>65)</sup>



[그림 3-7] 중앙도서관 신관 열람실(지상 7~8층) 및 교수 전용 라운지(지상 4층)<sup>66)</sup>

하층에 위치한 다수의 공간을 갖고 있으며, 중앙도서관 본관도 그런 경우 중 하나이다.

2018년 ‘고용노동부 A대 휴게시설 실태조사’에서 본관 휴게공간은 지하층으로 구분되지 않아 통폐합 혹은 대체공간 확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현장방문은 있었는지 의문이 드는 지점이다.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개선 시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던 ‘지하 휴게공간 개선’에 대해 형식적으로는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개선이 된 것으로 기록되었지만 물리적 ‘지하 공간’인 중앙도서관의 휴게공간은 별도의 조치 없이 동일한 지하 휴게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장실 및 행정지원실이 신관 지상5층에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그림 3-8]의 1,2,3,5번 휴게공간을 사용하는 청소노동자들은 창문이 없어 환기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며 휴식을 취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공통된 이야기를 하였다.<sup>67)</sup> 특히 코로나 이전에는 7-8명이 한 공간을 동시에 사용해서 감염성 질환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도 여전히 다수의 인원이 휴게공간을 동시 이용하고 있음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일부 공간(1,2번 휴게공간)에는 가벽을 설치하여 이용 인원이 3-4명으로 줄어들었으나, 그 외 공간적인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물리적 조치는 없었다.

청소노동자 휴게공간이 있는 복도에는 창문이 없고, 각 문 앞에 종이에 출력된 ‘청소원 휴게실’ 사인이 붙어 있다[그림 3-9]. 동일 건물의 다른 공간들에 아크릴로 만들어진 ‘사인’이 있는 것과 달리 이 휴게공간은 언제든 기능이 바뀔 수 있는 ‘임시적 공간’임을 내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본관의 지상 1층은 ‘학생출입금지(시설보호구역)’으로 되어있어 다른 실들과는 구별된 배치이다. 층별 안내도에도 적혀있지 않아서 청소노동자 외에는 휴게공간의 존재를 알기 어렵다. 사용자 인터뷰에서도 ‘사람들은 이 층에 휴게공간이 있는지 모르고 창고가 있는 것으로 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sup>68)</sup> ‘보이지 않는’

66) 중앙도서관 신관 한눈에 둘러보기

(출처: A대학 홈페이지 내 A대학 소식, 2015.03.20.)

67) 2022년 6월 3일 현장방문과 청소노동자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림 3-8] 중앙도서관 본관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및 샤워실 평면도 (저자 작성)



[그림 3-9]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복도 및 여자 청소노동자 샤워실 (저자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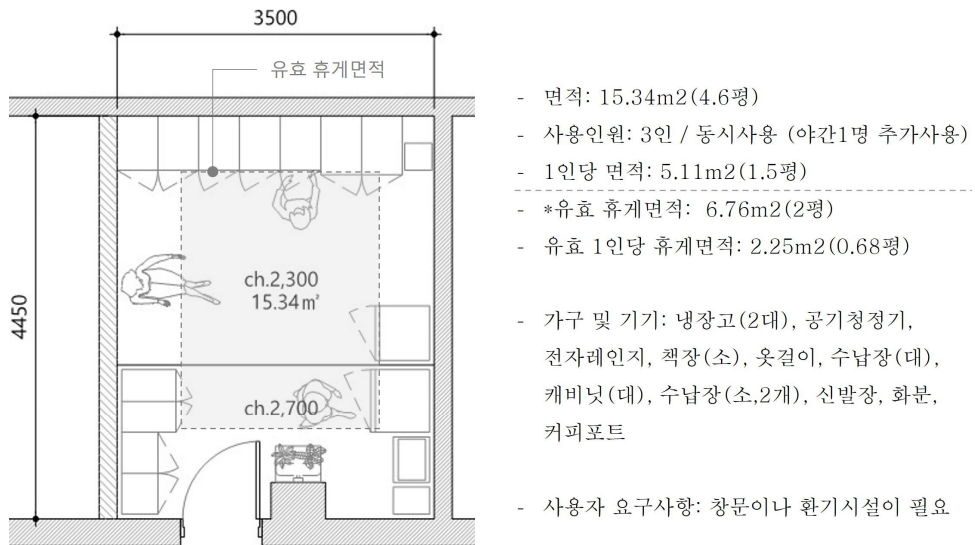
공간에서 ‘보이지 않게’ 쉬는 청소노동자 휴게공간의 특성인 ‘비가시성<sup>69)</sup>’ 을 볼 수 있다<sup>70)</sup>.

68) 2022년 6월 3일 현장방문 및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69) ‘비가시성’ 을 ‘어떤 현상을 실제로 드러나지 않거나, 얇게 하는 성질’ 정도로 사전적 의미로 정리할 수 있다. 예술에서 ‘비가시성’ 은 보이지 않는 내면의 감정이나 감각으로 표현되고, 철학에서는 ‘가시성’ 으로 대표되는 ‘물질세계’ 와 함께 ‘정신적 세계’, 표면을 넘어선 ‘내면’ 으로 보았

## 1) 여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1

여자청소노동자 휴게공간1 [그림 3-10, 그림 3-8 표시 된 2번 휴게공간] 은 여성 청소노동자 3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야간에 1명이 추가로 사용한휴게면적은 6.76m<sup>2</sup>로 1인당 유효 휴게면적은 2.24m<sup>2</sup>이다. 창문이 없어 자연빛이 휴게공간 내부로 전혀 들어오지 않아 어둡고 습도가 높아서 공기가 눅눅하다.천장형 환기 덕트가 있지만 습도조절을 하기에 용량이 충분하지 않아 한여름에도 바닥 난방을 틀고 있어야 한다. 높은 습도(법정 적정 습도:50~55%)로 인한 불쾌감이 높고 공기의 질이 열악하여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휴게공간이다. 또한 동일층에 여자화장실 없고 한층 위로 올라가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화장실 사용동선이 비효율적이며



<복도>

[그림 3-10] 여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1 평면도 및 개요 (저자 작성)

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비가시성’은 주로 ‘배제’, ‘차별’, ‘은폐’, ‘무허가’, ‘고립’, ‘소수’, ‘주변화’와 함께 쓰이며 아이러니 하게도 사회적 ‘권력이 없음’의 표상적 의미로 사용이 된다. 70) 언론에서 청소노동자의 노동을 다룰 때 ‘보이지 않는 노동’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으며, 김동수 작가는 청소노동자를 소재로 한 소설의 제목을 ‘유령들(어느 대학 청소노동자 이야기) (2020)’이라 명하기도 하였다.



[그림 3-11] 여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1 내부 사진 (저자 촬영)

불편하다. 휴게공간 내 가구나 및 비품들은 행정실에서 비치<sup>71)</sup>하기도 하지만 그 외 각 청소노동자들이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확보하여<sup>72)</sup> 비치하는 경우가 많아 휴게공간 별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2) 여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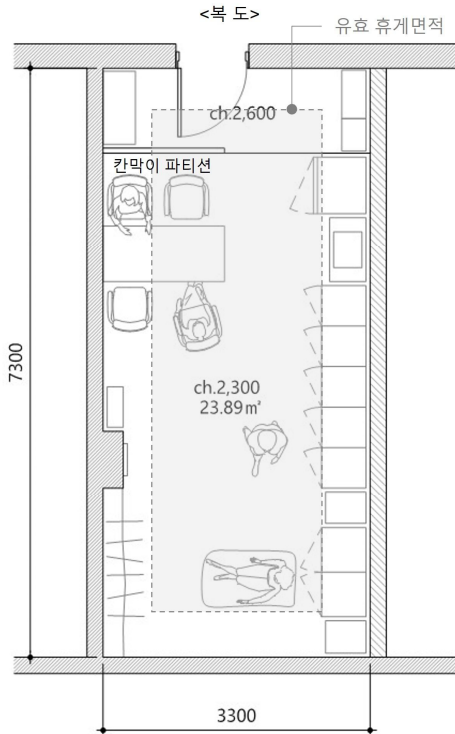
여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2[그림 3-12, 그림 3-8에 표시된 5번]에는 4명의 여성청소노동자 사용하고 있다. 내부면적 23.89㎡로 1인당 면적은 5.9㎡이며, 유효휴게면적은 12.33㎡로 1인당 유효 휴게면적은 3.08㎡이다. 폭 3.3m, 깊이 7.3m로 깊고 좁은 공간-공간의 깊이가 폭의 2.2배-이라 휴게공간1 보다 더 어둡고 내부공기가 습하다. 칸막이 파티션을 이용하여 복도로부터 내부공간을 시각적으로 분리하였으며 ‘복도-현관-칸막이 파티션- 2인용 테이블-휴식공간’으로 공간을 분리하여 사용하고 있다. 사용자 인터뷰를 통해 여자 샤워실 내부에 세면대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남자 세탁기가 설치되어 남자들이 여자 샤워실에 출입하

71) A대학교 휴게실 개선계획서 내 가구 및 비품 항목에는 ‘①소파, 등받이가 있는 의자, 탁자 등을 설치 ②야간 작업자를 위한 침대, 침구류, 기타 필요용품 비치 ③생활가전제품(냉장고, 온풍기, 정수기 등) ④물이나 간단한 차, 화장지, 타올 등 비치 ⑤개인사물함과 신발장 구비’가 있으며 이는 2018년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의 내용과 동일하다. ‘A대학 휴게실 개선계획서 및 조치 결과’에 따르면 2019년 10월 초 까지 가구 및 비품에 대한 조치가 완료되었다.

72) 주로 캠퍼스 내 버려진 가구들을 휴게공간으로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다.

기 때문에 샤워실 사용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휴게공간이 남녀로 구분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는 A대학 점검항목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다.

휴게공간의 위치적 특성상 창문이 없어 자연환기가 되지 않고 습도가



- 면적: 23.89m<sup>2</sup>(7.2평)
  - 사용인원: 4인 / 동시사용
  - 1인당 면적: 5.9m<sup>2</sup>(1.8평)
  - \*유효 휴게면적: 12.33m<sup>2</sup>(3.7평)
  - 유효 1인당 휴게면적: 3.08m<sup>2</sup>(0.93평)
- 가구 및 기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책장(소), 옷걸이(천정, 벽), 수납장(대), 캐비닛(대), 수납장(소,2개), 신발장(2개, 오픈형), 테이블(4인용), 의자 4개, 파티션
  - 사용자 요청사항: 창문이나 환기시설 필요, 여자 샤워실에 남자 세탁기가 있어 샤워실 사용이 불편함

[그림 3-12] 여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1 평면도 및 개요 (저자 작성)



[그림 3-13] 여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2 내부 사진 (저자 촬영)

높아 휴식을 취하기 적합하지 않은데 특히 문을 닫아두면 지하실 냄새가 나서 더욱 머무르기 힘든 상황이 된다. 대학 측은 지난해 청소노동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천장형 환기덕트를 설치하였지만 1년이 지난 현재는 잘 작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앙관리 시스템이어서 필요에 따라 개별 작동을 할 수 없어 휴게공간 내 습도 및 공기 질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공기청정기가 있지만 필터교체가 필요한데 그마저 되지 않고 있다.

‘1975년에 준공된 노후화된 건물의 물리적 ‘지하’에 위치한 청소노동자 휴게공간은 물리적 ‘지상’에 대체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만 도서관 행정실에서는 예산 및 공간 부족을 이유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sup>73)</sup>. 신관이 2015년 완공되었지만 탕비실 -갈레등을 빼는 수체싱크가 있는-외에 청소노동자가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고 이마저도 냄새가 많이 나고 좁아서 잠시 머무르기도 힘들다. 신관 계획 당시 청소노동자 휴게공간을 마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노동자 공간에 대해 설계가 누락되어 공간불평등이 강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3) 남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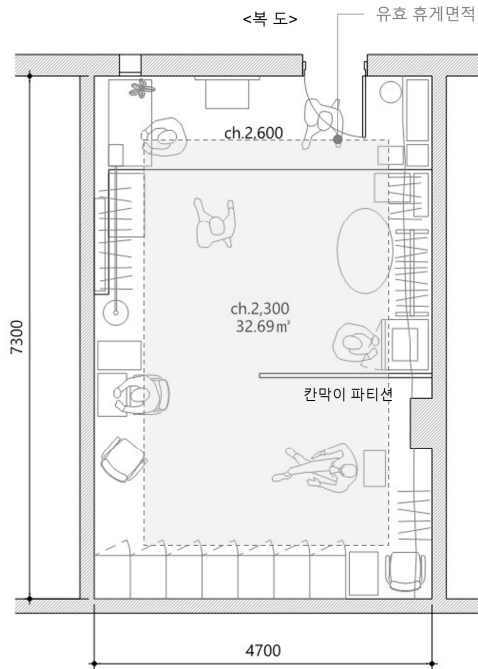
남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그림 3-14, 그림 3-8에 표시된 5번]에는 남자청소노동자 6인이 사용하고 있다. 내부면적 32.69㎡로 1인당 면적은 5.44㎡이며, 유효휴게면적은 20.78㎡로 1인당 유효 휴게면적은 3.4㎡이다. 단위 휴게공간 면적으로 캠퍼스 내에서 4번째로 넓은 휴게공간이다.<sup>74)</sup> 폭 4.7m, 깊이 7.3m로 출입문에서 바닥난방이 설치된 ‘바닥단’까지 청소노동에 필요한 도구 및 장비들을 수납해 두었고, ‘바닥단’ 위 영역은 칸막이 파티션을 이용하여 ‘사무.활동공간 - 휴식공간’으로 분리하여 사용하고 있다.

5개소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중 유일하게 복도를 향한 환풍기 있어 비교적 쾌적하지만, 휴게공간 내에서 빨래 건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

73) 매해 A대학 측에서 청소노동자를 대상으로 휴게공간 사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지만 변화의 진전이 없다며 인터뷰 당시 답답함을 토로했다.

74) 농업생명과학대학 2개소 38.88㎡, 경영대학 1개소 33.18㎡이다.





- 면적: 32.69m<sup>2</sup>(9.8평)
  - 사용인원: 6인 / 동시사용
  - 1인당 면적: 5.44m<sup>2</sup>(1.6평)
  - \*유효 휴게면적: 20.78m<sup>2</sup>(6.28평)
  - 유효 1인당 휴게면적: 3.4m<sup>2</sup>(1.05평)
- 
- 가구 및 기기: 냉장고, 전차레인지, 책장(소), 옷걸이(벽,2개), 옷행거(3개), 수납장(대), 캐비닛(대), 수납장(소,2개), 신발장(2개, 오픈형), 우산꽂이, 낮은 테이블, 책상테이블, 의자, 커피포트, 공기청정기, 목재 파티션, 목재 장식장(버리는 것 가져오심), 게시보드, 화분
  - 사용자 요청사항: 창문이나 환기시설 필요

[그림 3-14] 남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평면도 및 개요 (저자 작성)



[그림 3-15] 남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내부 사진 (저자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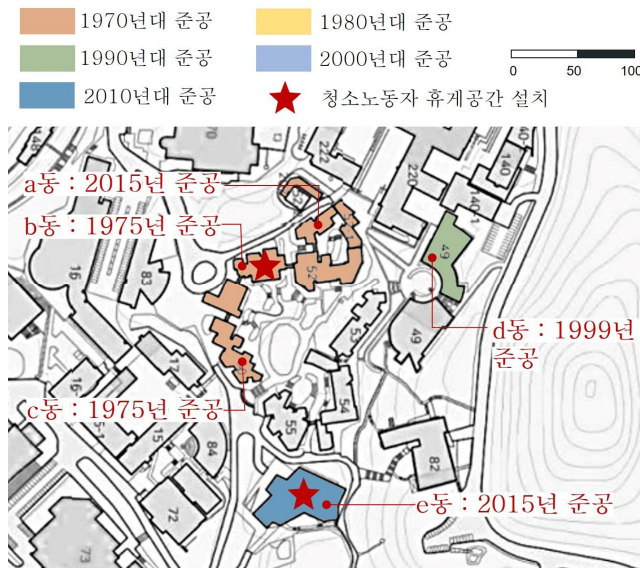
에 높은 습도로 인해 여름에는 특히나 휴식이 힘들다.

[그림 3-15]와 같이 휴게공간 내부에 비치 된 다양한 가구와 기기들을 확인할 수 있다. 전동 청소기계 충전기, 장화, 고무장갑, 화이트보드

등 청소노동을 하러 나가기 이전 각종 정보를 나누고 관련 사무업무를 하며 청소노동을 준비를 하는 사무실의 역할도 하고 있다. 별도의 청소 도구를 정비하고 충전을 하는 준비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휴게 공간 내부에서 정비를 한다. 그리고 특히 거의 모든 휴게공간에서 천장이나 벽에 걸려있는 빨랫줄을 관찰 할 수 있는데, 노동 시간 내내 몸을 움직이거나 쓰레기를 다루는 청소노동의 특성 상 매일 1벌 혹은 2벌의 작업복을 세탁·건조를 해야 한다. 급한 바와 같이 청소노동자 휴게공간이라 불리는 청소노동자의 공간은 청소노동 사이 잠시 휴식만 취하는 공간이 아닌 청소노동을 준비하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청소 외 노동을 하는 ‘노동공간’임을 사례들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 3.2.2 미술대학

미술대학(이하, 미대)은 총 8개소 건물, 5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3개 동(a,b,c동)은 1975년에 준공이 되었으며, 2개 동은 각각 1999년(d동), 2015년(f동)에 준공이 되었다[그림 3-16]. 2022년 4월 기준으로 총 6명(여자 2명 및 남자 4명)의 청소노동자가 5개 동의 청소를 담당하고 있다. 이 중 청소노동자 휴게공간이 위치한 곳은 미대 b동(여자, 남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각 1개소)과 f동(남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1개소)이다. 미대의 a,b,c 동은 미로와 같은 형태<sup>75)</sup>이며 건물 간 구름다리로 연결되어 이동의 동선이 길다. 이 3개 동은 1975년 준공이후 개보수 이외에 특별한 개선사항이 없으며<sup>76)</sup> a동의 경우 지상4층 건물이지만 승강기가 없다. 2019년 고용노동부 점검 당시 a동에 위치한 휴게공간은 ‘계단 옆 공간 협소 및 위생상태 불량’으로 휴게실 사용 부적합하므로 폐쇄 또는 통폐합 조치를 요청 받았고, d동의 휴게공간은 ‘환기 시설 및 냉난방, 온습도 수준 등 개선 요망’의 지적을 받았으며 이 d동의 휴게공간은 현재 창고로 사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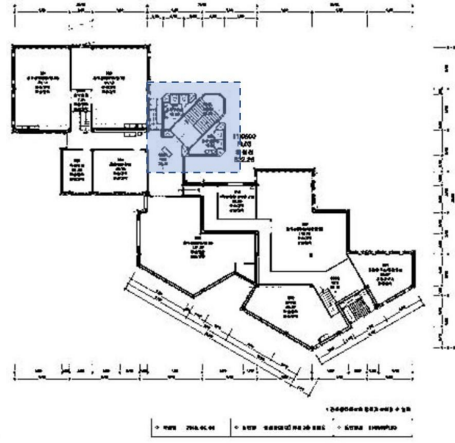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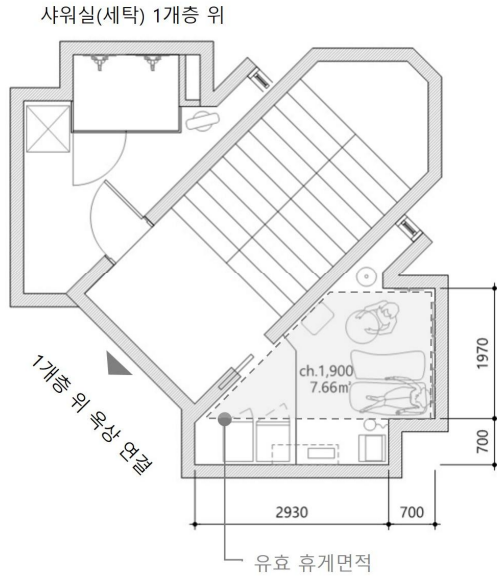
[그림 3-16] 미술대학 배치도 (저자 작성)

타 단과대학과 비교하여 회화, 조소, 공예 등 실기 중심의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배출되는 쓰레기의 종류가 다양하고 부피가 큰 것이 특징<sup>77)</sup>이 있고 그로인해 남자 청소노동자의 비율이 더 높은 단과대학이다. 6명의 청소노동자가 총 3개의 휴게공간을 나누어 사용하고 있어 평균적으로 2명의 청소노동자가 1개소의 휴게공간을 함께 사용하고 있어 개인 휴식권 보장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사용자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1) 여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b동의 청소노동자 휴게공간[그림 3-17]은 여자 청소노동자 2명이 사용하고 있다. 휴게공간 내부 면적 7.66㎡로 1인당 면적은 3.8㎡이며 유효 휴게면적은 5.09㎡로 1인당 유효 휴게면적은 2.5㎡이다. 층별 안내에는 청소노동자 휴게공간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미로와 같은 건물 특성상 방문당시 휴게공간의 위치를 찾기 어렵다. 일반적인 복도에 위치한 방들과 달리 지상 3층, 4층 사이 계단참<sup>78)</sup>에 휴게공간이 위치해 있으며 동일한 위치의 아래층에는 화장실이 있으며, 위층인 4층과 옥상 사이 계단참에는 남자청소노동자 휴게공간이 위치해 있고, 맞은편에는 청소노동자를 위한 세탁기가 설치된 샤워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 샤워실 및 세탁실이 옥상과 연결되어 있어 옥상에 세탁물을 건조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천장고 2.1m로 바닥난방이 되는 ‘바닥 단’에서는 천장고 1.9m이며 이는 법적최저 천장고 높이이다. 휴게공간 내에 30cm 폭의 좁은 전망창이 있었으며 상부에는 환풍기가 있어 창문크기에 비해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 방문한 다른 휴게공간에 비해 천장고가 낮고 법대와 1인당 면적은 동일 했지만 2명이 사용하기 때문에 휴식의 독립성이 확보가 되어 사용자 만족도가 높은 휴게공간이다.

75) 시대 표상으로서의 건축: A대학교 캠퍼스 모더니즘 건축에 관해(신하정, 2019. 9. 26, A대학신문)  
 76) 미술대학, 이제는 달라질 수 있을까-예술복합연구동 준공, 건물 리모델링 예정돼 (한명훈, 최서현, 2014. 6. 27, A대 저널)  
 77) 2022년 4월 22일 현장방문과 청소노동자 인터뷰를 진행했다.  
 78) [계획 및 설계] 계단을 오르내릴 때 발을 디딜 수 있는 넓고 편평한 부분(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 사전)



[그림 3-18] 미대 b동 휴게공간 위치

- 면적: 7.66m<sup>2</sup>(2.3평)
- 사용인원: 2인 / 동시사용
- 1인당 면적: 3.8m<sup>2</sup>(1.1평)
- :법대 여자 청소노동자 휴게실과 동일

- 
- \*유효 휴게면적: 5.09m<sup>2</sup>(1.5평)
  - 유효 1인당 휴게면적: 2.5m<sup>2</sup>(0.76평)
  - :법대 여자 청소노동자 휴게실 보다 넓음

[그림 3-17] 여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평면도 및 개요 (저자 작성)



[그림 3-19] 여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내부 사진 (저자 촬영)



[그림 3-20] 계단 참여 위치한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저자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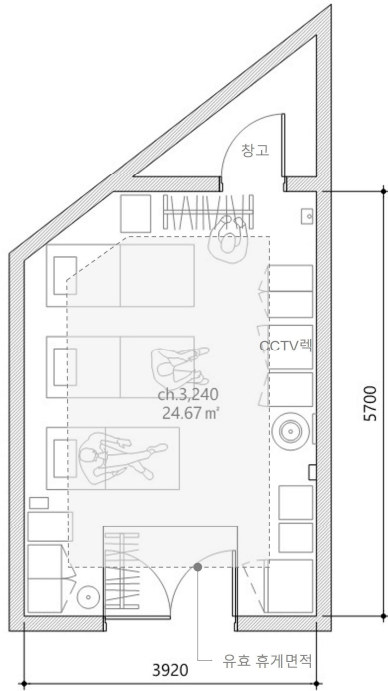
[그림 3-21] 세탁 및 샤워실과 옥상층 내 세탁물 건조 공간 (저자 촬영)

## 2)남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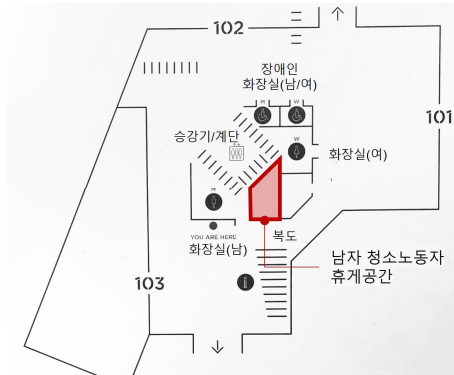
e동의 청소노동자 휴게공간[그림3-22]은 지상1층에 위치해 있고, 남자 청소노동자 3명이 사용하고 있다. 휴게공간 내부 면적 24.67㎡로 별도의 창고를 포함하고 있다. 1인당 면적은 8.2㎡이며 유효 휴게면적은 11.99㎡로 1인당 유효 휴게면적은 3.99㎡이다. 층별 안내에는 청소노동자 휴게공간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며 휴게공간의 문에는 종이로 출력된 실명이 부착되어 있다. 건물 내부 계단에 접하여 화장실, 창고 등 서비스 코어에 위치한 실 중 하나를 휴게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출입구가 양개문<sup>79)</sup>으로 일반적인 휴게공간의 출입문과 다르며 휴게공간은

79) 편개문은 하나의 문짝을 가지며 인원 출입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며, 양개문은 두 개의 문짝을 가지며 인원과 화물 출입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 된다.(출처.

로 쓰기 이전에는 큰 물건들이 오가던 창고로 쓰였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휴게공간이 건물 코어에 위치 해있어 외부로 난 창문이 없으며 복도로 배출되는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다. 천장고가 3.2m로 높고 별도의 천장 마감재가 없어서 에어컨 배관 및 전기 배선 등이 노출되어 있다.



[그림 3-22] 남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평면도 및 개요 (저자 작성)



[그림 3-23] 건물 내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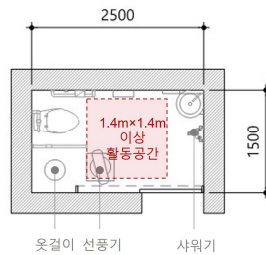
- 면적: 24.67m<sup>2</sup>(7.4평) -창고포함
  - 사용인원: 3인 / 동시사용
  - 1인당 면적: 8.2m<sup>2</sup>(2.4평)
- 
- \*유틸 휴게면적: 11.99m<sup>2</sup>(3.6평)
  - 유틸 1인당 휴게면적: 3.99m<sup>2</sup>(1.2평)
- 
- 가구 및 기기: 냉장고, 정수기, 전자레인지, 책장(소), 옷걸이, 옷행거(2개), 수납장(대), 캐비닛(대), 수납장(소,2개), 간이침대 3개(전기매트3개), CCTV 랙



[그림 3-24] 남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내부 (저자 촬영)

‘바닥 단’ 이 조성되어 있지만 바닥 난방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1인용 간이침대 위 전기매트와 천장 냉난방기로 실내난방을 한다. 3인이 각자 간이침대를 사용하여 휴게의 독립성이 확보되며, 휴게 공간 내부 별도의 창고가 있어 창고 내부에서 세탁물을 건조하기 때문에 유효 휴게공간이 넓다. 외부로 난 창문이 없지만 지상층에 위치해 있어 습하지 않으며,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건물(2015년 준공)이어서 쾌적하며 환풍기 및 냉난방기를 통해 휴식 환경을 조절 할 수 있다. 미술대학의 b동 여자휴게 공간과 비교 하였을 때 1인당 휴게공간 면적이 2배 이상인 8.2㎡ 이고 사용자 별 물리적 공간 구획이 되어 있지 않지만 간이침대를 통해 개별 휴게영역이 확보되어 사용자 만족도가 높은 휴게공간에 속한다. 하지만 휴게 용도에 맞지 않는 CCTV모니터 렉이 휴게 공간 한켠에 설치되어있다 [그림 3-24].

e동의 남자 청소노동자 사용하는 세탁기는 동일 층 남자화장실 내 코너에 위치해 있고[그림 3-26] 샤워실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동일



[그림 3-25] 장애인 화장실 내 샤워시설 평면도



[그림 3-26] 화장실 내 세탁기



[그림 3-27] 장애인 화장실 내부 샤워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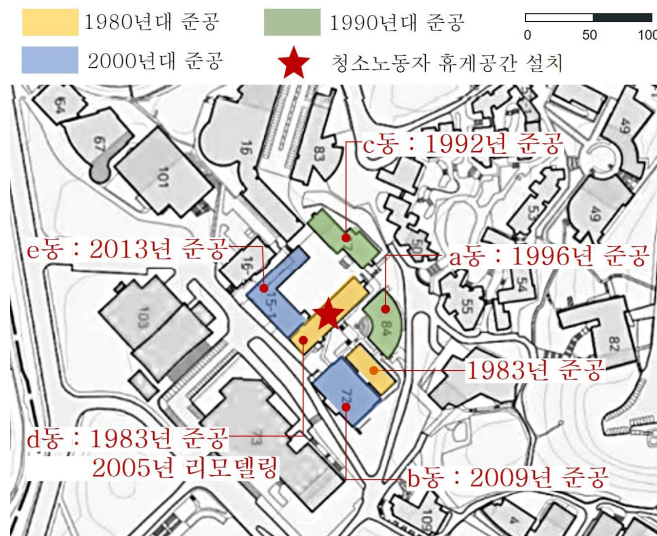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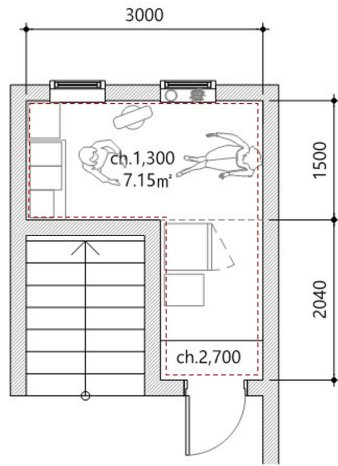
층 남자 장애인화장실(폭 1.5m, 깊이 2.5m)에 전기온수기와 샤워수전을 추가로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그림 3-25].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화장실 출입구에는 비닐 샤워커튼이 설치되어 있으며 내부에는 샤워기 외에도 옷걸이, 선풍기가 있어 장애인이 화장실을 이용할 때 필요한 활동공간을 침범하여 장애인 화장실로서 사용하기 어렵다[그림 3-27]. 이는 장애인, 청소노동자 모두에게 적합하지 않은 용도이며 캠퍼스 내 발생하는 ‘이중적 공간 불평등’ 현상을 관찰 할 수 있는 사례이다.

### 3.2.3 법학대학

법학대학(이하, 법대)은 총 5개소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28]. 이 중에서 유일하게 청소노동자 휴게공간이 위치한 법대 c동은 1983년에 완공이 되었으며, 2005년 리모델링이 되었다. 2022년 4월 기준으로 총 9명(여자 5명 및 남자 4명)의 청소노동자가 5개 건물의 청소를 담당하고 있다. 2019년 고용노동부 점검 당시 법대 a동에 자리한 휴게공간이 ‘계단 옆 공간 협소 및 위생상태 불량 휴게공간’<sup>80)</sup> b,e동에 자리한 휴게공간이 ‘환기시설 및 냉난방 온습도 수준 등 개선요망’으로 분류되었다. 개선 이전, 여자 청소노동자 2명이 사용한 a동 휴게공간은 내부면적 약 7.5㎡로 이 중에서도 통로면적을 제외하면 4.5㎡로 두명이 동시에 누울 수도 없는 좁은 공간이다[그림 3-29,30]. 또한 계단 하부에 휴게공간이 위치해 있어 천장고가 1.3m로 (법정 최소 천장고 2.1m) 법정 최소 천장고의 절반을 조금 넘을(61%) 뿐만 아니라 한국여성 평균 신장<sup>81)</sup>인 1.57m보다 27cm 낮아 허리를 펴고 서 있을 수 없는, 휴식에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머무를 수 없는 비인권적인 공간이다.



[그림 3-28] 법대 배치도 (저자 작성)



[그림 3-29] 개선 이전  
a동 여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평면도  
(저자 작성)



[그림 3-30] 천장고 1.3m인  
낮은 휴게공간 내부  
(A대학 학생공동행동 촬영 영상 캡처)

2019년 10월 a,b,c동의 휴게공간이 통·폐합되어 현재 d동 1층과 2층에 각각 남녀 청소 노동자 휴게공간이 설치되었다. 개별 건물에 흩어져 있던 휴게공간이 한 건물로 통합되면서 2개소 휴게공간에 여자 청소노동자 5명, 남자 청소노동자 4명이 동시에 사용한다. 연구대상지 단과대학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하나의 휴게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사례이다. 각 건물 내 휴게공간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휴게공간 개선과정에서 개별 건물에 있던 휴게공간들이 통폐합 되는 사례<sup>82)</sup>가 빈번한데, 관리자 측면에서 관리의 효율성은 높아지지만 사용자의 측면에서는 건물별로 배정되는 작업공간에서 휴게공간까지 거리가 멀어져 이동이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다인원이 한 공간에 휴식하게 되면서 개인의 휴식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특히 코로나와 시기에는 감염 전

80) 계단 옆 공간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이 있던 법대a동은 1996년 준공된 건축물로 지상 3층의 연면적 약 2,200㎡ 규모이다.

81) 시도별 연령별 성별 평균 신장 분포 현황 2019,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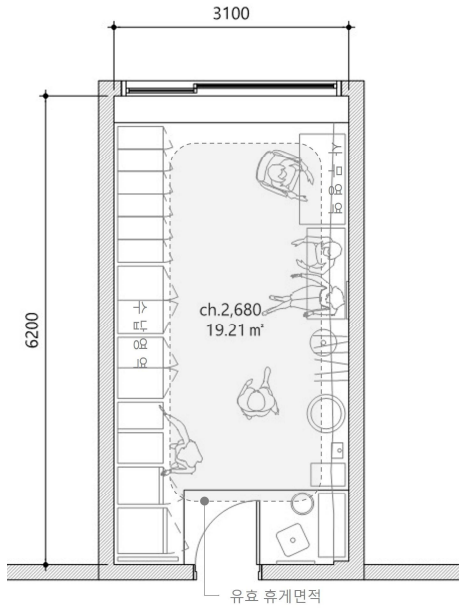
82) A대학은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개선사업 이전 휴게공간은 총 143개소 였으나 개선사업 이후 130개소가 되어 13개소 이상의 휴게공간이 통폐합된 것을 알 수 있다.

달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청소노동자의 불편과 불안이 높다.

### 1) 여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법대 d동 건물 2층에 위치한 여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그림 3-31]은 이전 ‘학위복 보관실’로 사용하던 곳[그림 3-32]을 2019년 점검 및 통폐합을 계기로 여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으로 바꿨다. 여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은 남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과 거의 동일한 면적이나 1명 더 많은 5명의 청소노동자가 사용하고 있다. 내부 면적 19.21㎡로 1인당 면적은 3.8㎡이며 유효 휴게면적은 9.49㎡로 1인당 유효 휴게면적은 1.9㎡이다. 공간을 이용하는 청소노동자 수가 많을수록 필요한 가구와 기기의 공간 확보가 증가하기 때문에 휴식을 위한 면적은 더 좁아지며, 개별적인 휴식을 위한 시간과 공간 확보의 어려움으로 청소노동자의 불편함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그림 3-33]. 청소노동자의 휴게공간은 휴식뿐만이 아니라 노동의 연장된 공간이기 때문에 대학 측에서 비치하는 사물함 외에 다양한 가구와 수납장들을 청소노동자들이 비치해 두는 경우가 많으며 연구대상지 휴게공간에서 대부분 확인할 수 있는 현상이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가구 및 기기의 종류와 개수가 대학 측에서 공급하는 것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개별 가구들로 채워진 휴게공간은 공간 사용의 비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특히 적층되어있는 수납가구들의 모양과 크기가 달라서 유사시 추락의 위험성이 있다.

싱크대와 세탁기가 휴게공간 내에 설치된 동일 건물의 남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과 비교할 때, 설거지는 휴게공간 외부의 인근 화장실에 설치된 세면대를 사용하고, 타 건물 지하에 설치된 샤워실 세탁기에서 빨래를 한 뒤 세탁물을 다시 휴게공간으로 가져와 건조해야 하는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청소노동자들의 주 사용시설인 ‘휴게공간-세탁실-샤워실’의 연결성이 부족하다는 점은 건물 내 유휴공간을 임시로 개조하여 사용함으로써 청소노동자의 불편함과 청소노동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으며, 건물 설계 당시부터 청소노동자를 위한 공간이 고려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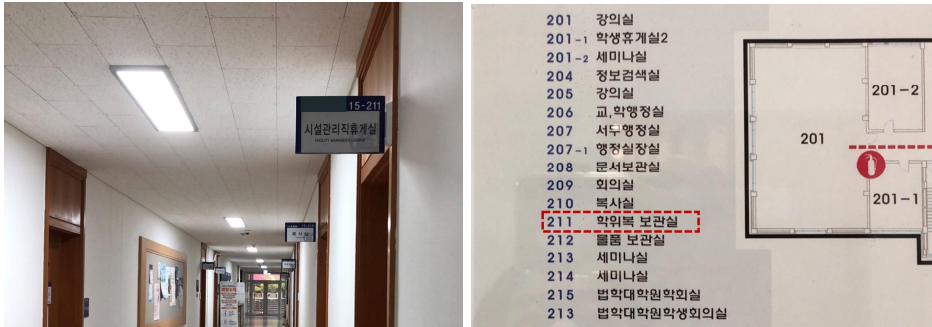
- 면적: 19.21m<sup>2</sup>(5.8평)
- 사용인원: 5인 / 동시사용
- 1인당 면적: 3.8m<sup>2</sup>(1.1평)

- \*유효 휴게면적: 9.49m<sup>2</sup>(2.8평)
- 유효 1인당 휴게면적: 1.9m<sup>2</sup>(0.57평)

- 가구 및 기기: 사물함(6칸), 옷장(데), 수납장(데), 수납장(소,3개), 수납장(소,3개-창가베치), 냉장고(데),냉장고(소, 2개), 신발장(문짝없음), 정수기, 공기청정기, 거울(2개), 밥상, 플라스틱 의자(2개), 낮은 수납장(의자처럼 사용), 책상,

복도

[그림 3-31] 여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평면도 및 개요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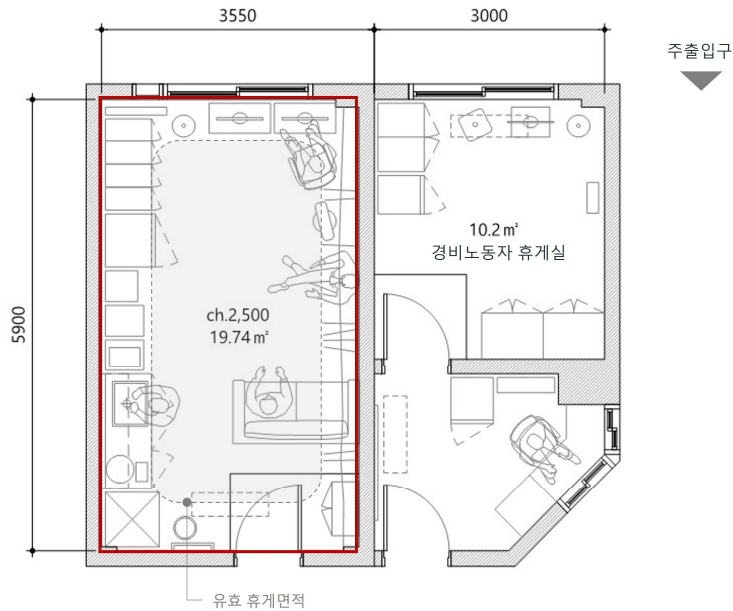
[그림 3-32] 여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외부 및 피난 안내도 (저자 촬영)



[그림 3-33] 여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내부 (저자 촬영)

## 2) 남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동일 건물 1층에 위치한 남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은 남자 청소노동자 4명이 사용하고 있다[그림 3-34]. 내부 면적 19.74㎡로 1인당 면적은 4.9㎡이며 유효 휴게면적은 10.06㎡로 1인당 유효 휴게면적은 2.5㎡이다. 건물의 1층 주출입구 인근에 위치한 경비실과 접해 있다. 휴게공간 출입구 옆, 해당건물의 택배수납선반이 있어 수납선반 내 우편물뿐만 아니라 택배상자들이 복도 바닥에 쌓여있다[그림 3-36]. 휴게공간에는 휴식, 식사준비, 식사, 세탁, 세탁물 건조 등 다양한 활동을 위한 가구 및 기기들이 휴게공간을 차지하고 있다[그림 3-37].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바닥 면적이 좁으며 개인별 휴식공간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전체 휴게공간의 면적 중 실질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유효 휴게면적은 전체 휴게공간 면적의 50.9%에 그친다. 1인당 휴게 유효 휴게면적은 1인용 간이침대(1.64㎡)를 간신히 넘는 면적이다. 이 뿐만 아니라 휴게공간 내부에서 세탁물을 건조하기 때문에 환기가 잘 되지 않는다. 특히 여름철에는 높은 습도로 인해 휴식이 힘들다는 청소노동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sup>83)</sup>



[그림 3-34] 남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평면도 (저자 작성)

- 면적: 19.74m<sup>2</sup>(5.9평)
- 사용인원: 4인 / 동시사용
- 1인당 면적: 4.9m<sup>2</sup>(1.5평)

- 
- \*유효 휴게면적: 10.06m<sup>2</sup>(3평)
  - 유효 1인당 휴게면적: 2.5m<sup>2</sup>(0.76평)

- 가구 및 기기: 사물함(4칸),  
냉장고(대),냉장고(소), 수납장(대),  
수납장(소), 정수기, 싱크대(상,하), 밥솥,  
온수기, 세탁기, 수건걸이, 신발장, 소파, 거울,  
선풍기, 책상, 서류보관함, 컴퓨터, TV용  
모니터, 옷걸이, 밥상(4인용), 빨래줄



[그림 3-35] 개요 (저자작성)

[그림 3-36] 휴게공간 외부 (저자촬영)



[그림 3-37] 남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내부 (저자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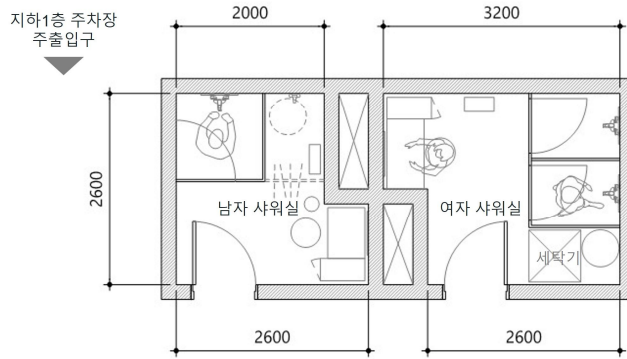
### 3) 샤워실

청소노동자 샤워실은 휴게공간과 수평거리로 약 50m 떨어진<sup>84)</sup> e동 지하1층 지하주차장에 위치해 있다[그림 3-38]. 이전에 있던 샤워실은 b동 지하2층에 있었는데, 시설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어둡고 외진 곳에 설치되어 있어서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이후 청소노동자들의 건의가 반영되어 2021년 새롭게 샤워실이 설치 되었다. 하지만 새로운 샤워실도 지하층인 까닭에 샤워실 내부 창문이 없고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지만 환

83) 2022년 4월 8일과 22일 2차례 현장방문과 청소노동자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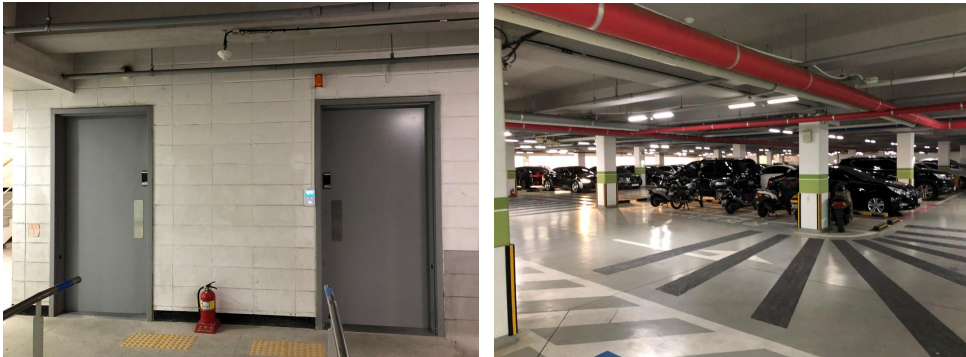
84) 수평거리 뿐만 아니라 d동 지상2층에 위치한 여자청소노동자 휴게공간과 2개 층 차이가 난다.

기가 잘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배수가 잘 되지 않아 2명이 동시에 샤워를 할 경우 물이 잘 빠지지 않는다[그림 3-40]. 특히 지하주차장에 면해 있어 통행에 위험이 있으며 건물 외부에 위치해 있어 겨울철에는 빙판이 만들어 지기도 해서 이동시 위험한 경우가 있다[그림 3-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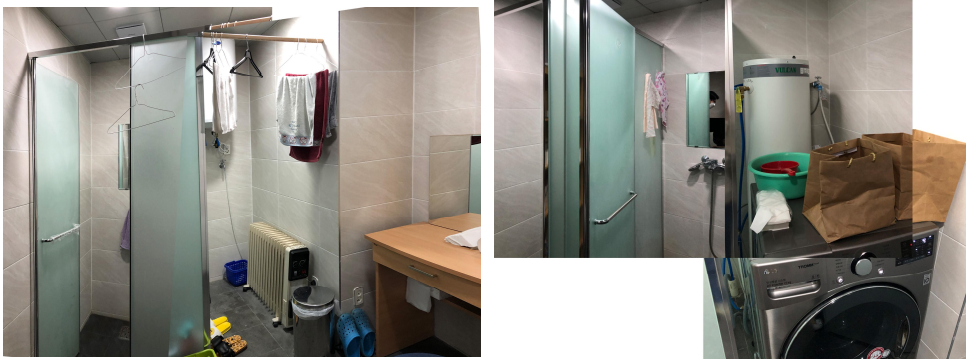


주차장

[그림 3-38] 법대 청소노동자 샤워실 평면도 (저자 작성)



[그림 3-39] 법대 청소노동자 샤워시설 외부 (저자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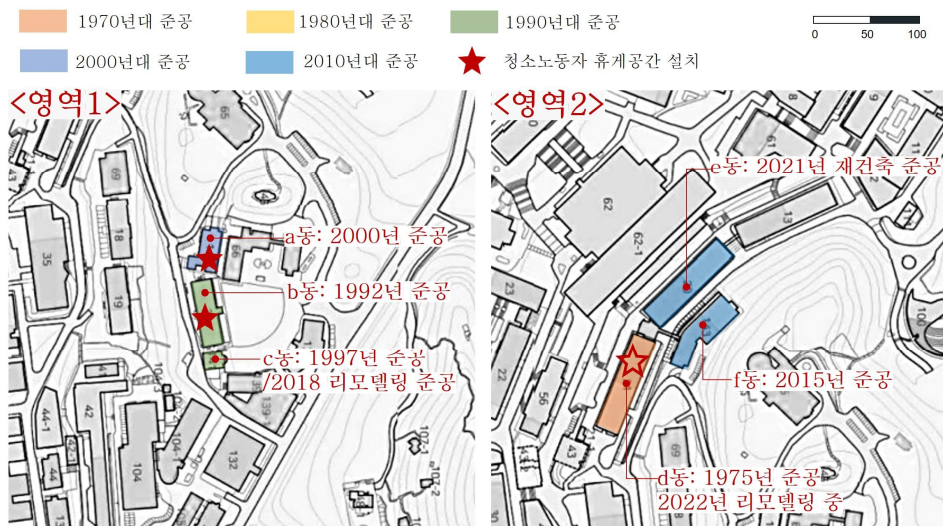


[그림 3-40] 법대 청소노동자 남/여 샤워시설 내부 (저자 촬영)



### 3.2.4 약학대학

약학대학(이하 약대)은 총 6개소 건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캠퍼스 내 2개 영역으로 나누어 위치해 있다[그림 3-41]. <영역1>은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조성된 20년 이상 된 건물들이며 그 중 c동은 2018년 리모델링 되었다. <영역2>는 2010년대 이후 재건축 혹은 신축되거나 d동과 같이 40년 이상 되어 리모델링 중인, 비교적 새롭게 조성된 건물들이 있다. 2022년 6월 기준으로 <영역1>에는 총 여자 2명의 청소노동자가 3개소 건물의 내·외부 청소를 담당하고 있으며 휴게공간은 a동에 위치해 있다. 이 휴게공간은 2019년 고용노동부 점검 당시 ‘환기시설, 냉난방, 온습도 수준 개선’ 요청을 받은 후 대체공간을 확보하여 2019년 10월 새롭게 조성된 휴게공간이다. <영역2>의 3개소 건물 중 청소노동자 휴게공간이 위치해있던 d동은 방문 당시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 관계로 인근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휴게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관련자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없어 휴게공간을 방문하지 못하였으며 청소노동자에 관련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웠



[그림 3-41] 약대 배치도 (저자 작성)



[그림 3-42] 2021년 재건축 완공 된 e동 외부 및 계단 아래 청소도구들 (저자 촬영)

다. 최근, 8,315㎡ 규모로 재건축이 완료 된 e동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이 새롭게 조성되었을 것이라 기대하였지만 방문당시 청소노동자 휴게공간을 찾을 수 없었다[그림 3-42].

### 1) 여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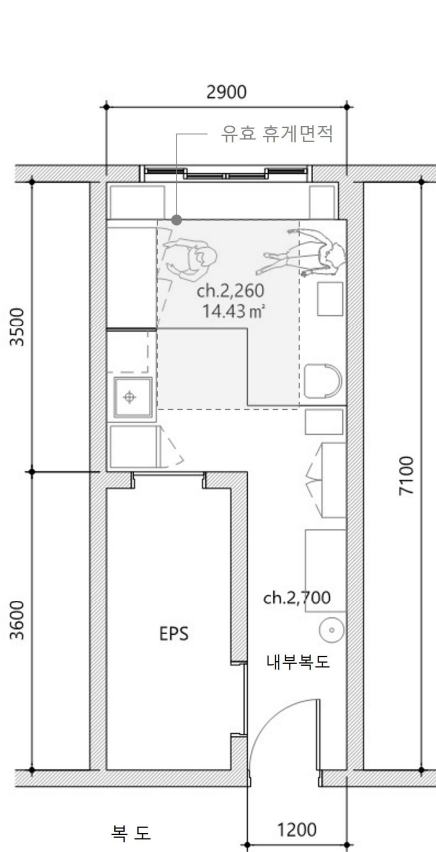
<영역1> a동의 청소노동자 휴게공간은 지상 4층에 위치해 있으며 여자 청소노동자 2명이 사용하고 있다. 내부 면적 14.42㎡ 로 1인당 면적은 7.2㎡이며 유효 휴게면적은 4.17㎡<sup>85)</sup>로 1인당 유효 휴게면적은 2.08㎡이다. 층별 안내에는 ‘창고’ 로 표기되어 있는 것[그림 3-44] 으로 보아 휴게공간으로 사용하기 이전에는 창고 로 사용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으며 EPS실<sup>86)</sup>이 휴게공간 내 포함되어 있다[그림 3-43].

a동의 주 용도가 약제제실 및 연구실험실이기 때문에 타 건물에 비해 복도에 비치된 기계가 많을 뿐만 아니라 건물 내부 열기 많으며 건물이 경사로와 완충녹지로 둘러 쌓여있기 때문에 외부 청소노동 양이 많아 서<sup>87)</sup> 타 단과대학건물에 비해 청소노동자 1인당 노동 강도가 높다. 휴

85) 내부 복도의 면적은 유효 휴게면적에서 제외되어, 유효 휴게면적과 내부 면적 간 차이가 큰 휴게공간이다.

86) Electrical Piping Shaft 또는 Electric Pipe Shaft의 약어이며 건축물이나 다른 공작물을 건설할 경우 보통 설계도면에 표시되어 전기공사의 동력용전선, 전등용전선, 전열용전선 등 여러 종류의 전기 관련된 전선이 이 통로를 통하여 수직 또는 수평으로 흘러 다니는 Shaft(통)을 의미한다. (EPS / TPS 집중배관 개선, 신동윤, 2007)

계공간은 정면 창문(폭2m, 높이 1m) 이 있어 개방감이 있으며 자연환기가 가능하다. 1인당 면적이 타 단과대학 여자청소노동자 휴게공간의 약



[그림 3-44] 4층 안내도 (저자 촬영)

- 면적: 14.42m<sup>2</sup>(4.3평)
  - 사용인원: 2인 / 동시사용
  - 1인당 면적: 7.2m<sup>2</sup>(2.2평)
- 
- \*유효 휴게면적: 4.17m<sup>2</sup>(1.26평)  
: 내부 복도가 있어 유효 휴게면적과 전체면적의 차이가 큼
  - 유효 1인당 휴게면적: 2.08m<sup>2</sup>(0.63평)
  - 가구 및 기기: 냉장고, 전차레인지, 싱크대, 정수기, 책장(소), 옷걸이, 수납장(대), 캐비닛(대), 수납장(소,2개), 신발장(단함형), 의자

[그림 3-43] 여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및 개요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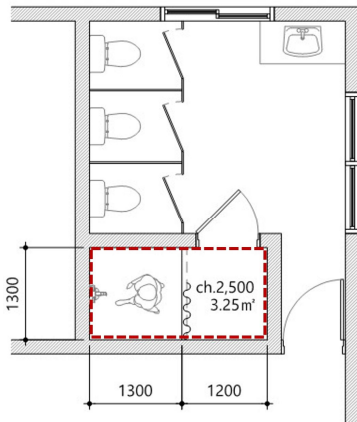


[그림 3-45] 여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내부 (저자 촬영)

87) 특히 가을과 겨울에는 낙엽청소 및 제설작업을 추가된다. 2022년 6월 3일 현장 방문과 청소노동자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2배이고 사용인원도 2명으로 개인 휴식의 만족도가 높은 휴게공간이다 [그림 3-45].

하지만 청소노동자 주요 사용시설인 세탁기가 1층에 설치되어 있어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샤워시설은 휴게공간과 동일한 층에 설치되어 있지만 여자화장실 내부에 위치해 있어[그림 3-46] 샤워를 할 수 있는 시간대가 교수, 학생의 등교시간과 겹쳐서 샤워실을 사용하지 않는다. 샤워실 문을 열면 바로 화장실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고 샤워실 문이 반투명 유리문으로 되어 있고 잠금장치도 없기 때문에 샤워실 내부가 노출이 되기 쉬워 사용하기 불안한 구조이다[그림 3-47]. 여름철이면 땀 때문에 매일 2,3벌씩 작업복을 세탁을 해야 하고 샤워가 필요하지만 세탁물을 집으로 가져가 세탁을 하고 샤워 또한 하지 못하고 퇴근을 한다. 세탁이라는 청소 외 노동을 하지 위한 적절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노동공간 외의 장소에서 추가적인 노동을 해야 하고, 사용하기 적절하지 않은 샤워시설로 인해 청소 후 샤워를 하지 못하는 것은 청소노동자 노동에 대한 이해 부족 혹은 고려 부족으로 발생하는 열악한 노동 환경의 문제이다.



[그림 3-46] 샤워실 평면도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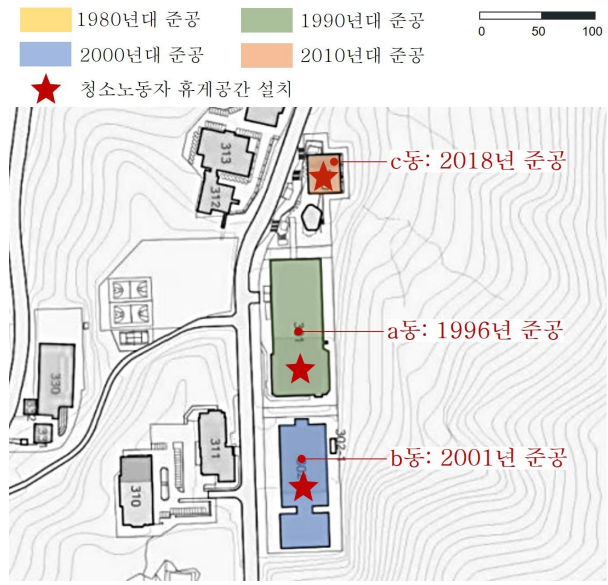


[그림 3-47] 여자 샤워실 및 화장실 내부 사진  
(저자 촬영)

### 3.2.5 공과대학

공과대학(이하, 공대)은 총 3개소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3-48]. 1997년에 완공된 a동은 캠퍼스 내 다른 시설과 규모(지상16층)나 내용에서 비교할 수 없게 방대하다<sup>88)</sup>. 이어 국제적인 수준의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A대학교 공과대학 시설확충 종합 계획(1992)’에 따라 공대 b동을 2001년에 완공하여 사용 중에 있다. 공대 b동의 경우, 공대 a동의 문제점들을 반영 및 개선하여 기능상으로 훌륭한 건물로 평가받는다.

그러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공대 b동에서 앞서 언급한 2019년 청소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 당시 공대 b동 건물의 청소노동자 휴게공간[그림 3-49,50]은 청소노동자가 휴식을 취하기에는 매우 열악한 상태였다. 건물을 관통하는 중앙계단의 지하층 하부에 경량벽체<sup>89)</sup>를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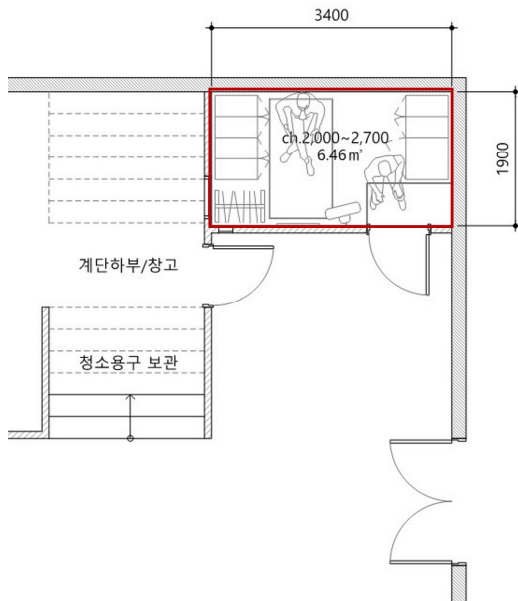
[그림 3-48] 공과대학 배치도 (저자 작성)

88) A대학교 공과대학 커뮤니티 매거진 p.67, 2016, 봄 No.100

89) 건물 내부 인테리어 건식 공사방법의 한 종류로 일정한 규격의 메탈 스테드를 벽체 구조용 골조로 사용하고 양면 혹은 단면에 석고보드 등으로 마감

용하여 덧붙여 만든 공간이었으며, 휴게공간 외부에 놓인 청소비품을 통해서만 공간의 용도를 추측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사건 당시의 휴게공간은 석재로 마감된 철제 구조의 계단 옆에 자리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오갈 때 발생하는 지속적인 소음으로 휴식을 취하기에 적합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무엇보다 내부 길이가 약 1.9m에 그쳐 한 사람이 눕는 것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계단 하부에 자리하여 환기와 빛을 위한 창문도 없었다. 청소노동자가 자비로 환풍기를 구입 및 설치하였으나, 충분한 환기에는 부족함이 있어서 사망사고 당시에도 기름걸레 냄새 등이 강하게 났었다고 한다.<sup>91)</sup> 또한, 냉난방시설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무더운 여름에 휴식하는 것도 힘들 수밖에 없었다. 이는 휴게공간 내 적정한 공기의 질과 온도가 청소노동자들에게 필수적인 조건이며, 이것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청소노동자의 건강악화 뿐만이 아닌 최악의 경우 사망으로도 이어질 수 있음을 알려준다.



[그림 3-49] 개선 이전 공대 남자 휴게공간 평면도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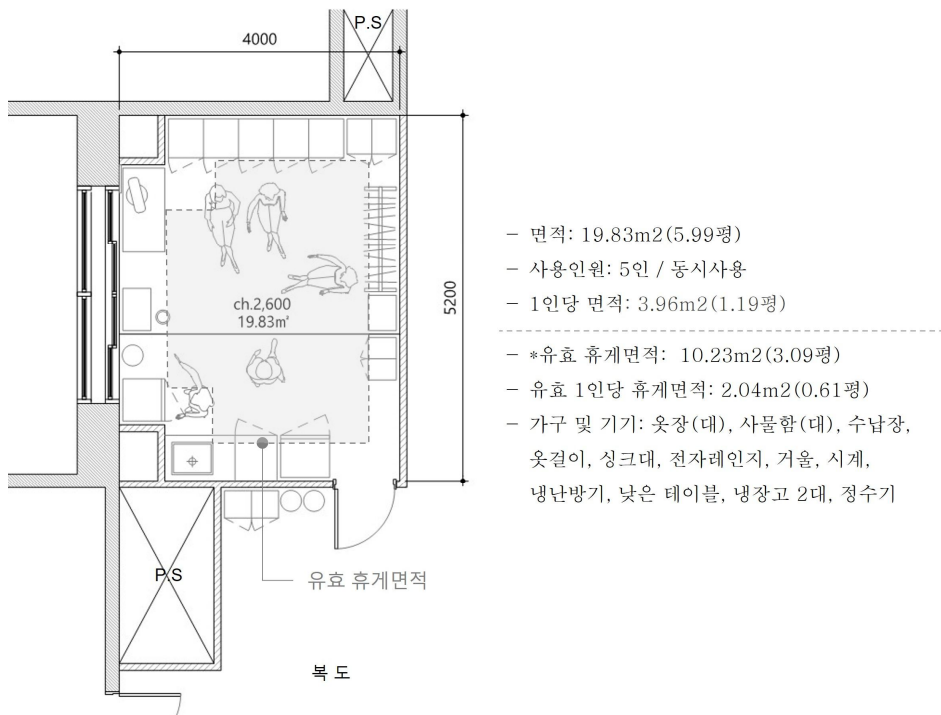
[그림 3-50] 휴게공간 내외부<sup>90)</sup>

한다. 습식공사보다 시공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지만 손상에 약하고, 스티드 사이에 단열재를 채우지 않으면 단열성이 낮아진다.

90) '비정규직 없는 A대 만들기 공동행동' 촬영

## 1) 여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사망사건 이후 청소노동자 휴게공간은 동일 건물 내 6,7층에 새롭게 설치되었다. 2022년 10월 기준으로 총 8명(여자 5명 및 남자 3명)의 청소노동자가 공대 b동의 청소를 담당하고 있다. 여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은 b동 지상 7층에 조성되어 있으며, 내부면적은 19.45㎡로 동일 건물의 남자청소노동자 휴게공간보다 좁지만 사용인원은 2명이 더 많은 5명이 사용을 하는 상황이며, 1인당 면적은 3.89㎡로 남자청소노동자 휴게공간의 1인당 면적의 절반이다. 유효 휴게면적은 10.23㎡이며 유효 1인당 면적은 2.04㎡이다[그림 3-51]. 바닥난방이 설치된 바닥단 위에 5명이 한 방향으로 누워 쉴 수가 없는 면적이다. 바닥단이 설치된 공간은 ‘휴식’의 기능을 하고 그 외의 공간은 싱크대,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는 등 주로 노동준비나 노동을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휴게공간 내 용도



[그림 3-51] 여자 휴게공간 평면도 및 개요

91) ‘비정규직 없는 A대 만들기 공동행동’ 학생대표는 사고 이후 현장답사를 진행하였다.

에 맞는 영역의 구분과 적절한 면적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휴게공간은 복도에서도 샌드위치 패널<sup>92)</sup>을 이용해서 만든 덧붙여진 공간임을 알 수 있다[그림 3-52]. 최근에 싱크대를 새롭게 설치하는 등 사용 시설에 대한 개선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간을 구성하는 재료가 ‘임시적’인 까닭에 기밀하지 않아, 외부환경으로부터 내부공간이 쉽게 영향을 받는다. 실제로도 방음이 잘 되지 않고, 같은 층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화학약품 냄새도 휴게공간 내부로 들어와서 머무르기 힘들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sup>93)</sup>.



[그림 3-52] 휴게공간 외부/내부 사진 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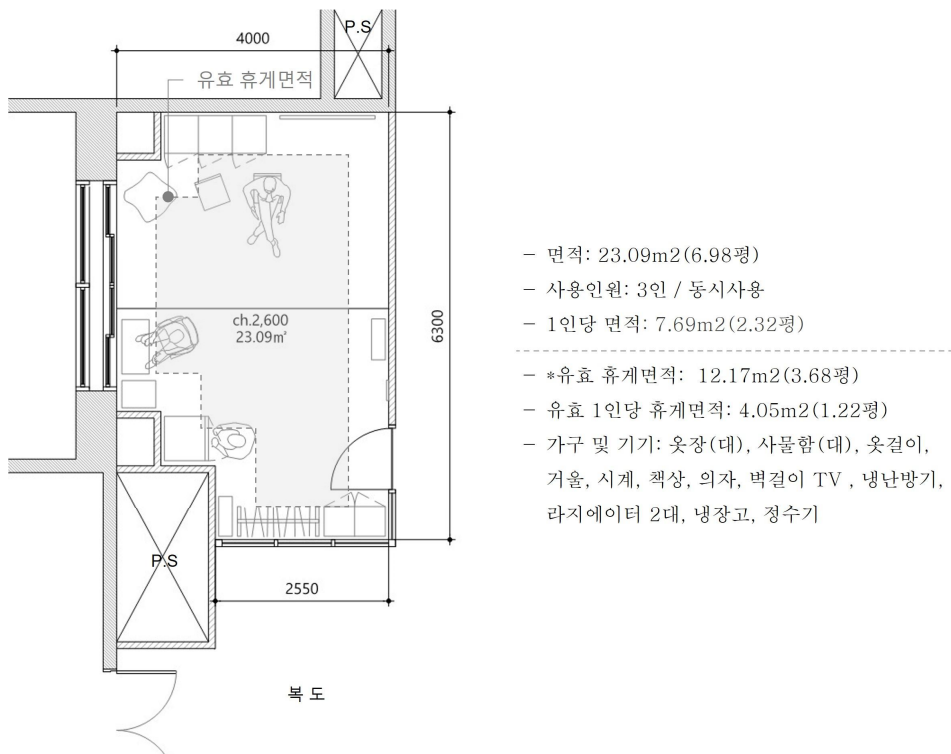
92) 샌드위치 패널은 두께 0.5mm 내외의 강판 2장 사이에 충전재로 스티로폼·우레탄폼 등의 재료를 채워 넣은 건축용 자재다. 단열재가 포함되어 있고 내·외부 별도의 마감없이 사용할 수 있어서 시공기간이 짧고 공사비의 대폭적인 절감이 가능하다. 하지만 얇은 강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 강도에 약하고 화재 시 벽돌이나 콘크리트 벽체보다 화재에 취약하다. 또한 조립식 구조이기 때문에 누수, 방음 등에 약하다.

93) 2022년 10월 19일 현장방문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 2) 남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b동 6층에 위치한 남자청소노동자 휴게공간은 내부면적 23.9m<sup>2</sup>이며 3명이 사용하고 있어 1인당 면적은 7.69m<sup>2</sup>이다. 유효 휴게면적은 12.17m<sup>2</sup>이며 1인당 유효 휴게면적은 4.05m<sup>2</sup>이다[그림 3-53]. 법령으로 지정된 휴게공간 최소면적인 6m<sup>2</sup>보다 1인당 면적이 넓고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높다.<sup>94)</sup> 출입문 앞에는 이전 휴게공간에서 볼 수 없던 ‘환경미화원 휴게실(남)’ 사인이 부착된 것을 볼 수 있고[그림 3-54의 2], 내부에 건물의 창문 외에 추가로 단열창이 설치되어 있어 에너지 효율이 좋으며 싱크대는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벽걸이TV 등 다른 휴게공간에서 볼 수 없던 기기가 설치되어 있다[그림 3-54의 3].



[그림 3-53] 남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평면도 및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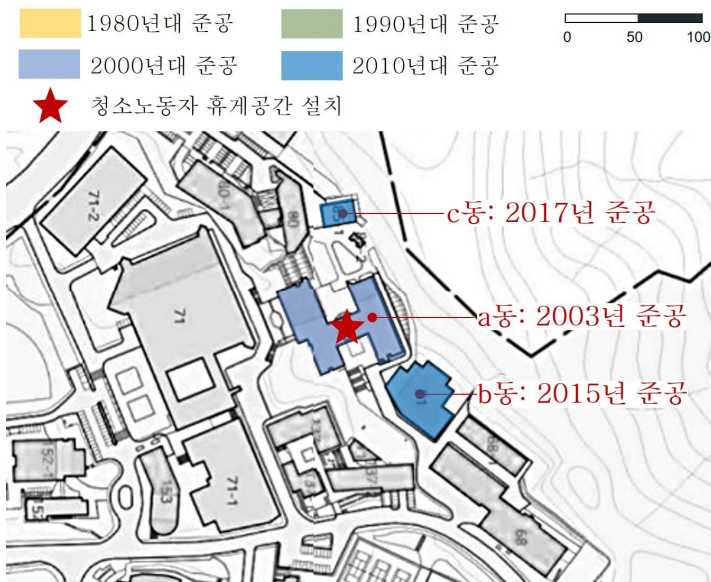
94) 2022년 9월 26일과 10월 19일과 2차례 현장방문과 청소노동자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림 3-54] 휴게공간 외부/내부 사진 1,2,3

### 3.2.6 수의과대학

수의과대학(이하 수의대)은 총 3개소 건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3년 준공된 a동이 중심 건물이며 2015년, 2017년 준공된 b,c동이 있는 비교적 최근에 조성된 단과대학 건물이다[그림 3-55]. 2022년 6월 기준으로 수의대에는 여자 4명, 남자 2명의 청소노동자가 건물의 내·외부 청소를 담당하고 있다. 수의대는 경사지에 위치해 있어 청소노동자 휴게공간이 있는 a동의 주출입구는 외부계단으로 연결된 지상 5층이며 5층 이하의 층은 절반가량 경사지에 묻혀 일부 내부공간은 지하층과 같은 조건을 가지는 특징이 있다. 2019년 고용노동부 점검 당시 b동에 있던 여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이 ‘지하주차장 및 인근에 휴게실이 설치되어 매연에 취약, 환기 불량에 따라 폐쇄 또는 통폐합’을 권고 받은 후 b동에 보다 12년 이전에 지어진 a동에 대체공간을 확보하여 2019년 9월 청소노동자 휴게공간을 조성하였다. 수의대는 통계자료에 조사된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외의 휴게공간이 이용되고 있는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사례이다.



[그림 3-55] 수의과대학 배치도 (저자 작성)

## 1) 여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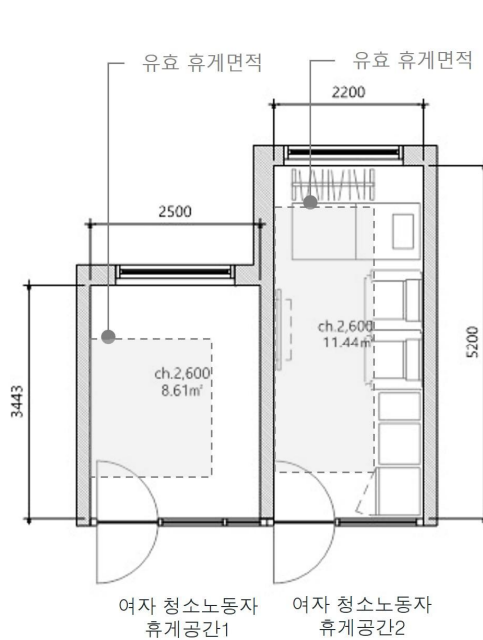
여자청소노동자 휴게공간1,2[그림 3-56]는 6층에 있으며 휴게공간1에 1명<sup>95)</sup>, 휴게공간2에 2명의 청소노동자가 사용하고 있다. 주출입구가 있는 지상5층에서 한층 높은 6층에 위치해 있으며 휴게공간으로 사용하기 전에는 ‘수유실, 기도실’로 각각 사용하였다는 것을 층별 안내도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된 공간을 점유하는 방식으로 휴게공간을 확보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출입이 빈번한 대회의실 맞은편에 위치해 있으며 전면이 유리로 되어 있어 불투명시트를 유리에 접착하여 휴게공간 내부가 복도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였다[그림 3-57].

휴게공간1의 내부 면적은 8.61㎡이며 1인당 유효 휴게면적은 4.26㎡이다. 통계상 2인이 사용해야 하는 이 휴게공간을 2인이 사용하였을 경우 1인당 면적은 4.3㎡이며 유효 1인당 휴게면적은 2.13㎡로 방문한 휴게공간 중 가장 좁은 면적이다. 그 이유로 실질적으로는 1명이 휴게공간1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휴게공간2는 내부면적 11.44㎡이며 1인당면적은 5.72㎡이다. 유효 휴게면적은 6.4㎡이며 유효 1인당 면적은 3.2㎡이다. 이 휴게공간은 전기 바닥난방이 설치된 낮은 단이 있고 간이침대 1개와 2인용 소파가 있어 2명의 청소노동자의 독립성이 확보되며 외부로 열리는 창문이 있어 채광과 환기에 유리하다. 하지만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중앙로비 인근 복도에 위치해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탈의 공간이 벽으로 분리되거나 가림막이 설치되지 않기 때문에 유리에 부착된 시트지 사이로 탈의하는 모습이 노출이 될 수 있어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 별도의 수도 시설이 없어 싱크대와 세탁기 등이 휴게공간에 있지 않으며 동일층 여자화장실에서 설거지를 해야 하며 샤워와 세탁을 위해서는 지상3층에 위치한 시설을 사용한다.

---

95) A대학에서는 1명의 청소노동자가 휴게공간을 혼자 사용하는 것을 안전상이유로 제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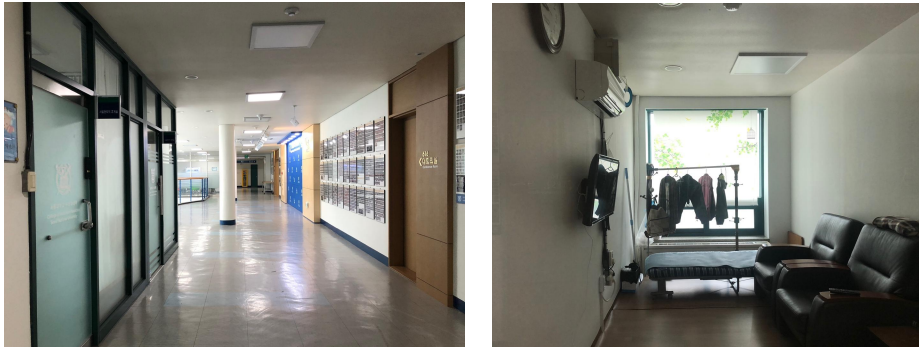
<여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1 개요>

- 면적: 8.61m<sup>2</sup>(2.6평)
- 사용인원: 1인 / 통계상 2명
- 1인당 면적: 8.61m<sup>2</sup>(2.6평)
- 2명 사용 시, 1인당 휴게면적: 4.3m<sup>2</sup>(1.3평)
- \*유효 휴게면적: 4.26m<sup>2</sup>(1.28평)
- 유효 1인당 휴게면적: 4.26m<sup>2</sup>(1.28평)
- 2명 사용 시, 유효1인당 휴게면적 : 2.13m<sup>2</sup>(0.64평) -2명 사용시, 가장 작은 면적
- 중앙로비 인근 위치, 복도에 전면 유리(시트부착)

<여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2 개요>

- 면적: 11.44m<sup>2</sup>(3.4평)
- 사용인원: 2인 / 동시사용
- 1인당 면적: 5.72m<sup>2</sup>(1.7평)
- \*유효 휴게면적: 6.4m<sup>2</sup>(1.93평)
- 유효 1인당 휴게면적: 3.2m<sup>2</sup>(0.96평)
- 중앙로비 인근 위치, 복도에 전면 유리(시트부착)
- 가구 및 기기: 사물함(대), 옷걸이, 소형냉장고, 소파(2인), TV, 간이침대 등

[그림 3-56] 여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1.2 평면도 및 개요 (저자 작성)



[그림 3-57] 여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1.2 외부/내부 (저자 촬영)

## 2) 여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3

여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3은 ‘대학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현황자료’에 기록되지 않은 비공식적인 청소노동자 공간이지만 수의대 행정실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림 3-58]와 같이 지상 3층에 있는 학생용 체력단련실 내부에 칸막이로 구획되어 만들어져 있다. 이곳은 지상3층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경사지에 위치한 건물의 특성으로 인해 물리적으로 지하공간이기 때문에 외부로 열리는 창문이 없어 자연채광과 환기가 되지 않아 어둡고 비교적 습하다. 3층의 청소노동자 휴게공간이 포함된 구역은 강의실, 실험실 등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실들이 없으며 벽, 천장 마감재가 시공되어 있지 않고 바닥은 바닥용 방수페인트(주로 옥상에 시공하는 녹색 방수페인트)가 칠해져 있다. 외벽에 난 창문에는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지만 이는 외부공기가 아닌 건물과 지하옹벽 사이 만들어진 ‘드라이 에어리어(dry area)<sup>96)</sup>’의 공기가 유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통풍에 유효하지만 지상층과 같이 쾌적한 환기는 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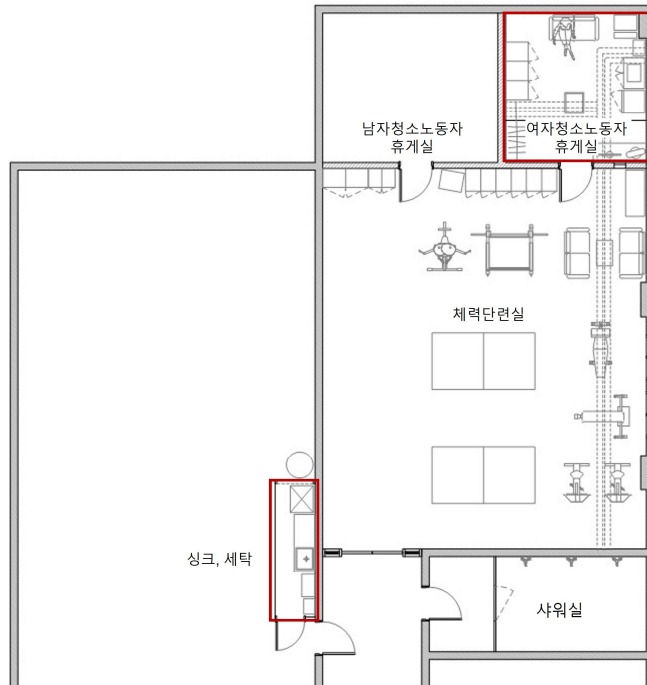
청소노동자들이 사용하는 싱크대와 세탁기가 설치된 공간[그림 3-60]은 건물의 배관이 지나가는 PIT의 역할을 하는 곳으로 보아래 천장고가 2m로 낮고, 배관 아래 천장고는 1.5m로 성인이 허리를 펴고 걸을 수 없는 높이이다. PIT실 내 경량 벽체로 공간을 일부 구획(폭 1m, 깊이 3.5m)하여 청소노동자들이 사용하는 시설을 설치해두었다.

휴게공간은 체력단련실을 내부를 경량 벽체로 구획하여 조성하였으며, 여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3 뿐만 아니라 남자 청소노동자가 사용하는 공간 또한 있었지만 현장방문<sup>97)</sup>시 남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은 사용자가 개방을 원치 않아 내부답사와 실측을 진행 하지 못하였다.

해당층에는 층별안내판이 부착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체력단련실 내부,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문 앞에도 휴게공간임을 알리는 사인이 부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의 존재를 알기 어렵다. 현장방문 당시 우연히 복도에서 청소노동자를 만나지 못했다면 저자 또한 공간의 존재를 알지 못했을 것이다[그림 3-59].

96) 지하실의 채광, 통풍, 방온, 방습 등을 목적으로 외벽을 따라 판 공간이나 구멍.(同/air drain, blind area), 출처: 소방용어집

97) 2022년 6월 28일 현장방문과 청소노동자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림 3-58] 여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3 위치도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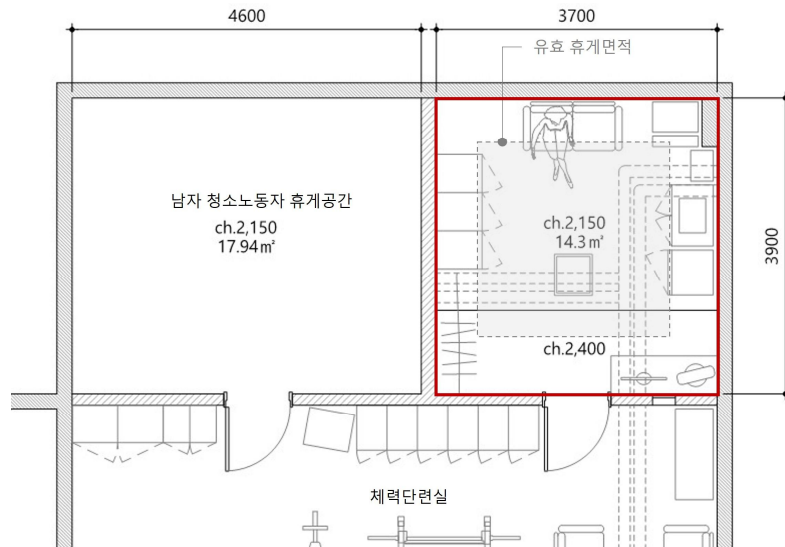


[그림 3-59] 여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3 외부 (저자 촬영)



[그림 3-60] 청소노동자 싱크, 세탁공간 (저자 촬영)

여자청소노동자 휴게공간3 [그림 3-61]은 여성 청소노동자 1명이 사용하고 있는데, 현황자료 상, 여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1의 사용자이다. 휴게공간3을 사용하는 여성 청소노동자는 수의대로 발령 난 2021년 9월부터 이 공간을 사용 중이며 그 이전에도 이곳은 청소노동자 휴게공간으로 사용되었고 한다.<sup>98)</sup> 휴게공간 내부 또한 천장고가 2.15m로 낮고 노출된 천장의 보 하부로 여러 배관들(바닥에서 높이 1.5m)이 거미줄처럼 천장을 가로지르고 있어 쾌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누수로 인한 오염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그림 3-62]. 에어컨과 바닥 난방이 설치된 바닥 단(높이 25cm)이 있지만 외부 창문이 없고 환풍기는 체력단련실을 향해 설치되어 있어 실질적인 환기는 되고 있지 않아 습하다.



- 면적: 14.3m<sup>2</sup>(4.3평)
- 사용인원: 1인
- 1인당 면적: 14.3m<sup>2</sup>(4.3평)
- \*유효 휴게면적: 6.62m<sup>2</sup>(2평)
- 유효 1인당 휴게면적: 6.62m<sup>2</sup>(2평)
- 천장고: 2.15m
- :노출 배관 깊이 70cm, 낮은공간 높이 약1.5m
- 가구 및 기기: 옷장(대), 사물함(대), 2인 소파, 거울, 시계, 수납장, 소형냉장고, 전자레인지, 모니터, 선풍기, 커피포트

[그림 3-61] 여자청소노동자 휴게공간 평면도 및 개요 (저자 작성)

98) 2022년 6월 28일 현장방문 및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림 3-62] 여자청소노동자 휴게공간 내부 (저자 촬영)

물리적으로 지하라는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육체노동을 후 개별공간을 보내고 싶기 때문에 여러명이 사용하는 6층 휴게공간을 사용하는 것 보다 휴게공간3을 선호한다는 것을 인터뷰를 통해 알게 되었으며 더불어 여성 청소노동자는 하나의 휴게공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작더라도 분리되어 있는 개별 공간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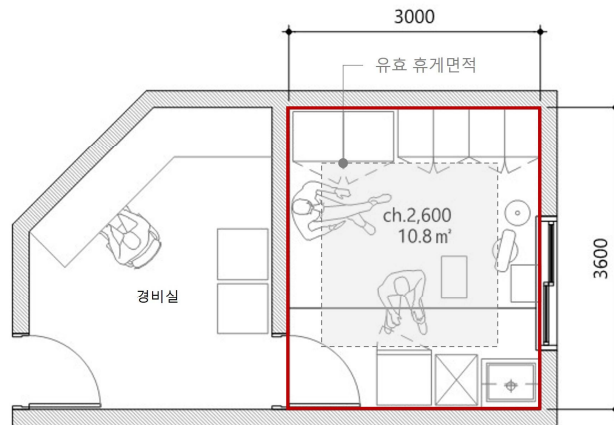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개선 시 주요 고려 사항이었던 ‘지하 휴게공간 개선’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개선이 된 것으로 기록 되어있다. 하지만 물리적 ‘지하 공간’임에도 지상3층이라는 이유로 방치되고, 실태조사에도 현황자료 상에도 존재하지 않는 ‘비가시적’이고 ‘폐쇄적’인 한계점을 가진 휴게공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3) 남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1

수의대 남성 청소노동자 2명은 현황자료에 따르면 a동 지상5층에 위치한 휴게공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여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3이 있는 지상3층 남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을 사용한다.

구성되어 있는 지상5층 남성 청소노동자 휴게공간은 청소노동자를 위한 별도의 공간이 아니라 경비노동자 2명(교대근무, 휴게공간 3인 동시 사용)과 함께 사용하는 휴게공간으로 경비실 안에 만들어진 경비노동자 숙직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림 3-63]. 서울시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청소근로자만의 전용 휴게공간 확보는 휴게공간의 5대 구성 원칙 중 하나로 전용 휴게공간 사용은 편안한 공간 사용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다. 하지만 여유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노동의 패턴이 다른 경비노동자와 함께 공간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청소노동자는 3층의 별도 휴게공간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 휴게공간은 내부 면적  $10.8\text{m}^2$ 로 3명이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1인당 면적은  $3.3\text{m}^2$ 로 사망사고가 난 공대b동 휴게공간 보다 1인당 면적이 좁다. 유효 휴게면적은  $4.32\text{m}^2$ 로 1인당 유효 휴게면적은  $1.44\text{m}^2$ 이다. 이 1인당 유효면적은 간이침대 1개의 면적보다 좁으며<sup>99)</sup> 방문한 휴게공간 중 1인당 유효면적이 가장 좁다[그림 3-66]. 휴게공간의 복합 사용,



[그림 3-63] 남자 휴게공간 평면도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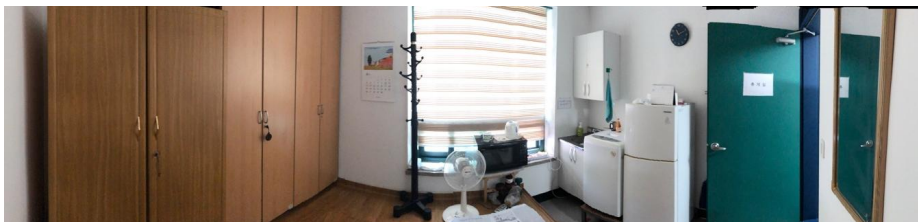
99) 1인용 간이침대 사이즈는  $790 \times 1970 \times 230$ (cm)로 면적은  $1.55\text{m}^2$ 이다.

좁은 면적 뿐만 아니라 경비실에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로 휴게공간 내 별도의 냉난방기를 설치되어 있지 않아 냉난방기 설치를 행정실에 건의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적절한 실내온도 유지를 위해 경비실과 휴게공간 사이의 문을 항상 열어두어야 하는데[그림 3-65] 휴식 중 경비실의 소음, 불빛이 휴게공간으로 들어오며 특히 기계소리와 기계의 모터 냄새가 휴게공간으로 들어와 더욱 머무르기 힘든 상황이다. 공간의 열악함에 대한 개선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는 소통의 부재와 관리자의 휴게공간의 이해의 부족함에 의해 독립적인 휴게공간을 사용하지 못하 청소노동자들이 ‘폐쇄적인’ 환경에 위치한 ‘비가시적’이며 ‘비공식적’인 공간을 사용하며 공간사용에 대해 청소노동자 스스로 숨겨야 하고 복합적인 상황을 확인 할 수 있다.

- 면적: 10.8m<sup>2</sup>(3.2평)
  - 사용인원: 총 4인 / 3인 동시사용  
(경비노동자2인 교대, 청소노동자2인 동시)
  - 1인당 면적: 3.3m<sup>2</sup>(1평)
- 
- \*유효 휴게면적: 4.32m<sup>2</sup>(1.3평)
  - 유효 1인당 휴게면적: 1.44m<sup>2</sup>(0.43평)
  - : 사망 사고가 난 공대 휴게공간보다 좁은 면적
  - 가구 및 기기: 옷장(대), 사물함(대), 옷걸이,
  - 싱크대, 소형세탁기, 소형냉장고, 선풍기, 전자레인지



[그림 3-65] 휴게공간 내부1  
(저자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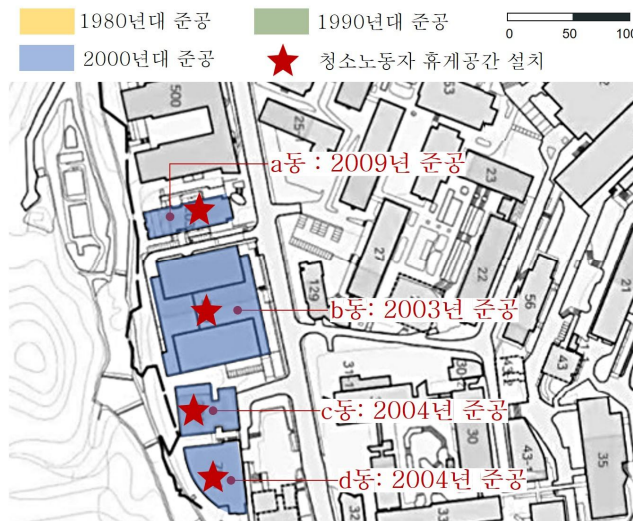


[그림 3-66] 휴게공간 내부2 (저자 촬영)

### 3.2.7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이하, 농대)은 총 4개소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3-67]. 2000년대에 지어진 건물들로 비교적 최근에 조성된 단과대학이다. 2022년 5월 기준 총 14명(여자12명, 남자 2명)의 청소노동자가 4개동의 청소를 담당하고 있다.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총 5개소로 각 건물에 분산되어 위치해 있다. 그 중 2003년 준공된 b동 건물은 3개의 건물이 연결된 형태로 지하 2층과 지상 9층의 규모이며 연면적이 47,256m<sup>2</sup>에 달하는 캠퍼스 내 큰 규모의 건물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b동청소노동자 휴게공간은 지하1층에 설치되어 있었고, 2019년 고용노동부 점검 당시 ‘지하주차장 및 인근에 휴게실이 설치되어 매연에 취약 환기 불량’으로 휴게공간 사용에 부적합 하므로 폐쇄 또는 통폐합 조치를 요청 받았다. 개선조치에 따라 2019년 10월, 대학 측은 동일건물 지상1층에 대체공간을 확보하여 휴게공간 2개소<sup>100)</sup>를 조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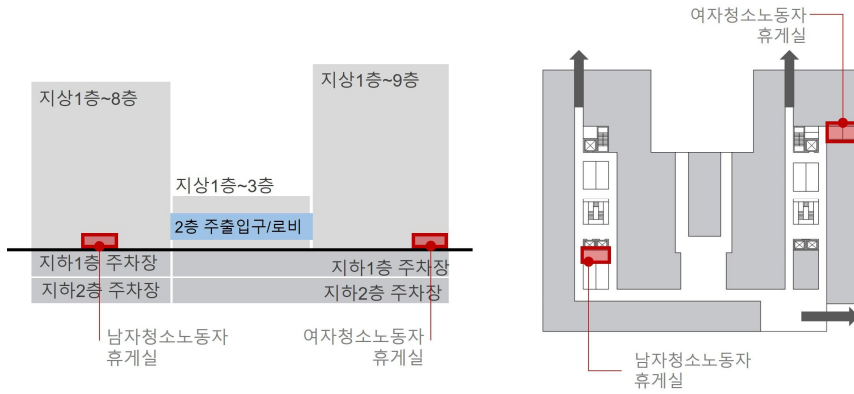
그러나 개선된 휴게공간도 남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은 복도, 화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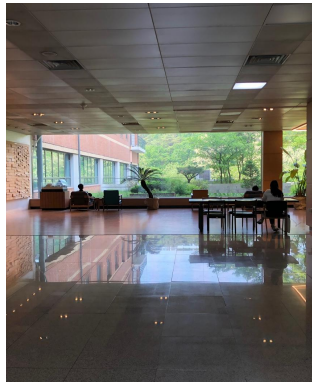
[그림 3-67] 농업생명과학대학 배치도 (저자 작성)

100) 통계상 2개소이지만 여자청소노동자 휴게공간 1개소를 2개의 방과 복도로 나누어 사용하고 있다.

실, 승강기로 둘러싸여 창문이 없는 공간에 위치해 있고, 여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은 건물 내 구석진 화장실 앞에 위치해 있다[그림 3-68].



[그림 3-68] 농대 b동 단면도 및 지상1층 평면도 (저자 작성)



[그림3-69] 농대 a동 외부/내부 로비 (저자 촬영)

[그림 3-70]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출입구 (저자 촬영)

## 1) 여자 청소노동자 휴게 공간 1,2

여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은 하나의 실을 옷장으로 분리하여 2개의 휴게공간으로 나누어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여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1’은 외부로 통하는 창문이 있지만, 복도에 접한 ‘휴게공간 2’는 창문뿐만 아니라 별도의 환풍기도 없어서 내부복도로 향한 문을 열어두고 환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그림 3-71].

‘휴게공간 1’의 내부 면적은 16.3㎡이며 5명 동시에 사용하며 1인당 면적은 3.26㎡이다. 유효 휴게면적은 7.78㎡이며 1인당 유효 휴게면적은 1.5㎡으로 1인용 간이침대 면적과 비슷하다[그림 3-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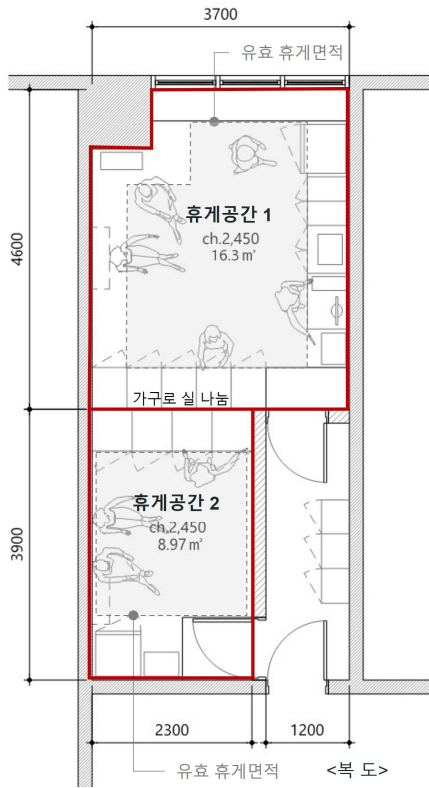
‘휴게공간 2’의 내부면적은 8.97㎡ 3명의 여성 청소노동자가 사용을 하고 있다. 1인당 면적은 2.99㎡로 방문한 여성 휴게공간 중 가장 좁은 면적이다. 유효 휴게면적은 5.52㎡이고 1인당 유효 휴게면적은 1.84㎡로 3명이 누으면 딱 차서 움푹달짝 할 수도 없는 크기이다[그림 3-73]. 이는 동일건물 남자청소노동자 휴게공간 1인당 사용면적인 7.8㎡의 절반도 안 되는 면적이다. 좁은 휴게공간뿐만이 아니라 창문이 없는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휴게공간 2’의 청소노동자들은 한 공간이 아닌 분리된 공간에서 휴식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었는데, 하나의 공간에 다인원이 사용하는 것 보다 공간의 질이 좀 낮아지더라도 소규모 인원으로 분리된 휴게공간을 사용하는 것이 휴식에 적합하다는 의견이었다.<sup>101)</sup>

그리고 이 건물 역시 청소노동자들의 주 사용시설인 ‘휴게공간-세탁시설-샤워시설’의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 세탁기는 동일 층 여자화장실 내 소재싱크<sup>102)</sup> 옆에 있으며, 샤워시설은 한층 아래인 지하 1층 주차장의 하역장<sup>103)</sup> 옆에 있던 화장실을 샤워실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었다[그림 3-74]. 샤워실 내부시설은 최근에 리모델링하여 깨끗하고 환기도 잘 되고 있었지만, 지하공간의 특성상 습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또 주차장 옆에 위치해있어 매연 문제 외에도 수시로 오가는 자동차들로 인한 안전문제 발생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그림 3-75].

101) 2022년 5월 20일, 27일 2차례 현장방문과 청소노동자 인터뷰를 진행했다.

102) 청소용 걸레나 밀대 등을 세탁하기 위한 싱크

103) 건물 관련하여 필요한 물품 하역하는 장소



여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1 개요

- 면적: 16.3m<sup>2</sup>(4.9평)
- 사용인원: 5인 / 동시사용
- 1인당 면적: 3.26m<sup>2</sup>(0.98평)
- \*유효 휴게면적: 7.78m<sup>2</sup>(2.35평)
- 유효 1인당 휴게면적: 1.5m<sup>2</sup>(0.31평)  
: 싱글 침대 사이즈보다 작음
- 가구 및 기기: 옷장(데), 냉장고, 전자레인지, 벽면 옷걸이, 거울, 시계, 공기청정기, 에어컨, 컴퓨터, 커피머신, 출력기

여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2 개요

- 면적: 8.97m<sup>2</sup>(2.7평)
- 사용인원: 3인 / 동시사용
- 1인당 면적: 2.99m<sup>2</sup>(0.9평)  
: 방문 여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중 가장 좁음
- \*유효 휴게면적: 5.52m<sup>2</sup>(1.6평)
- 유효 1인당 휴게면적: 1.84m<sup>2</sup>(0.53평)  
: 세사람이 누우면 딱 참
- 가구 및 기기: 옷장(데), 냉장고, 전자레인지, 벽면 옷걸이, 거울, 시계, 공기청정기, 에어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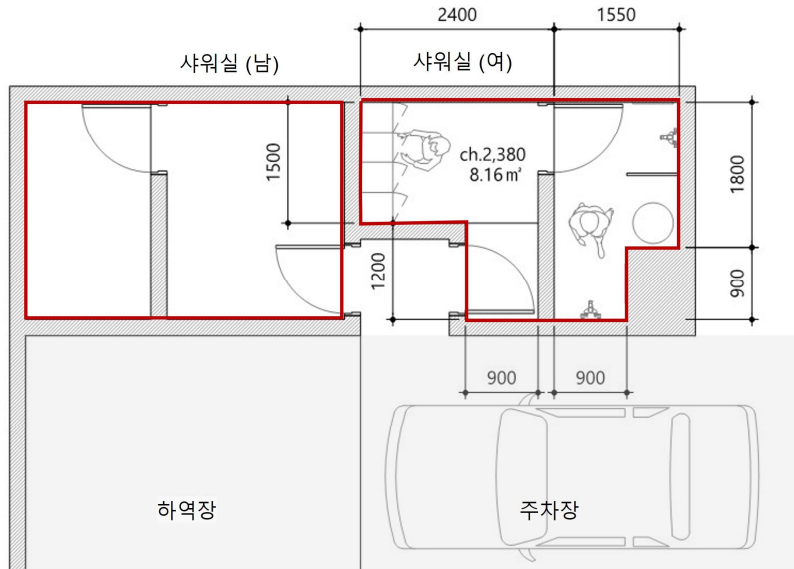
[그림 3-71] 여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1,2 평면도 및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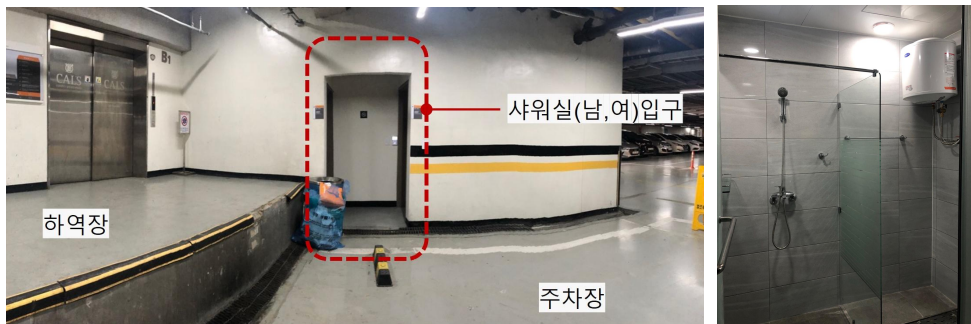
[그림 3-72] 여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1 내부 (저자 촬영)



[그림 3-73] 여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2 내부 (저자 촬영)



[그림 3-74] 농대 샤워실 평면도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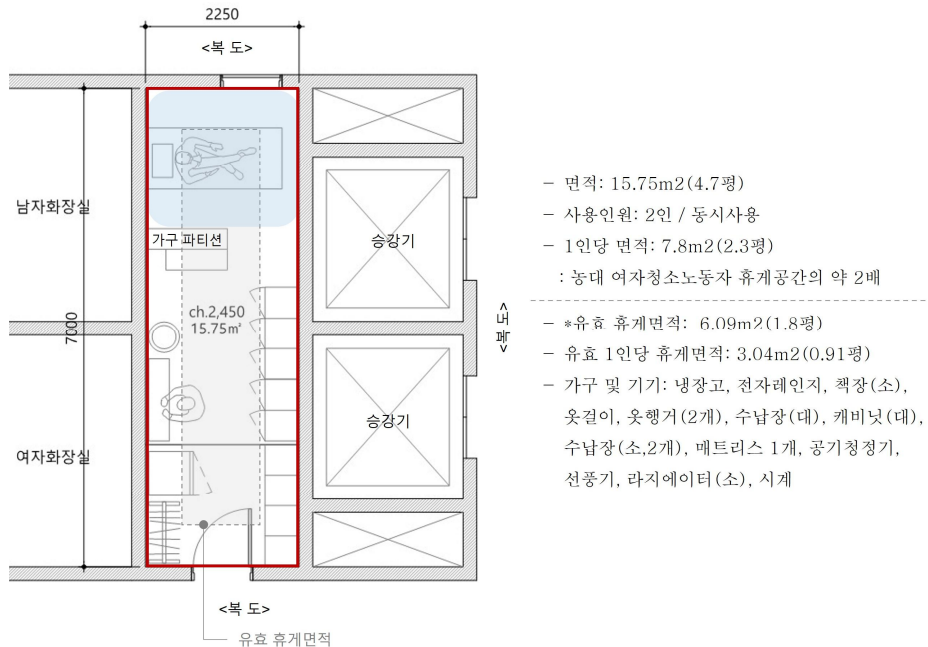
[그림 3-75] 농대 샤워실 외.내부 (저자 촬영)



## 2) 남자 청소노동자 휴게 공간

농생대 남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은 남성 청소노동자 2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내부 면적 15.75㎡로 1인당 면적 7.8㎡로 동일 건물 여성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면적의 2배이다. 유효 휴게면적은 6.09㎡이며 1인당 유효 휴게면적은 3.04㎡이다 [그림 3-76].

화장실과 승강기 사이 위치해 있으며 앞뒤로 복도로 둘러싸여 있어 외부로 열린 창문이 없다. 복도로 2개의 출입구가 있지만 현재는 하나의 출입구만 사용하고 있다. 출입구에서부터 깊이 7m 폭 2.25m의 좁고 긴 직사각형으로 출입구에서부터 ‘수납/준비공간-식사/업무공간-휴식공간’으로 가구 및 기기를 배치하여 공간용도를 분리 했으며 특히 휴식공간은 가구를 이용하여 시각적으로 공간을 분리하였다. 휴게공간의 면적은 비교적 넓지만 창문이 없어 공기청정기로 환기를 하지만 답답하고 자연광이 들어오지 않는다. 또한 수납가구를 필요에 의해 마련하다보니 제각각이고 문이 없는 것들이 많아서 집기류들이 노출되어 있어 어수선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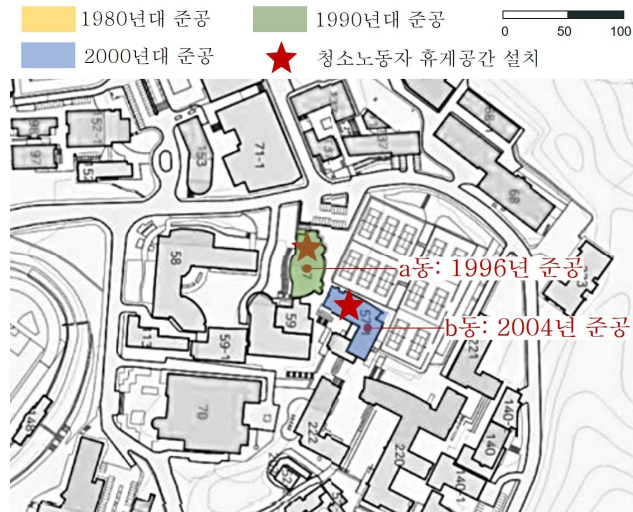


[그림 3-76] 남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평면도 및 개요

### 3.2.8 행정대학원

행정대학원 건물은 1996년에 준공된 a동과 2004년에 준공된 b동, 총 2개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3-77]. 2019년 고용노동부 점검 당시 a동 지하1층에 있던 여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이 ‘환기시설, 냉난방, 온습도 수준 개선’을 권고 받은 이후 환기시설 및 환경개선이 이루어졌다. 2022년 6월 기준 a동에는 여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1개소(여자 3명 사용) 남자 청소노동자 1명을 위한 간이 휴게공간이 위치해 있다.

현장방문 당시<sup>104)</sup> 사용자인 청소노동자를 만날 수 없었지만 여자청소노동자 휴게공간의 경우 층별안내도와 외부 실측을 통해 내부 공간 면적을 산출할 수 있었고 타 단과대학의 청소노동자 인터뷰를 통해 내부 시설의 특징을 간략하게 알 수 있었다. 남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은 경비노동자의 안내로 휴게공간 현장방문을 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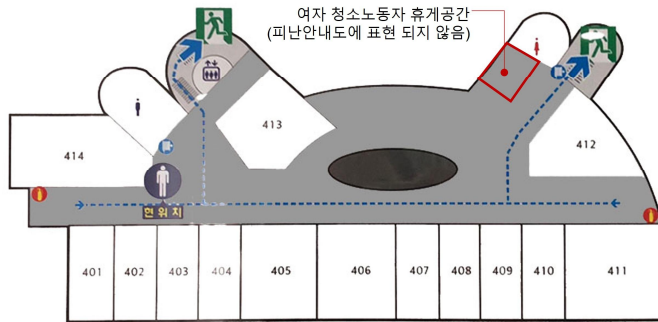
[그림 3-77] 행정대학원 배치도

104) 2022년 6월 28일 현장방문을 진행하였다.

## 1) 여자 청소노동자 휴게 공간

a동 여성 청소노동자 휴게공간은 지상 4층에 위치해 있으며 3명이 사용 하고 있다. 여자화장실 옆 휴게공간이 위치 해 있지만 피난 안내도 상 동일 위치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이 표현되어 있지 않고[그림 3-78] 행정대학원 홈페이지의 건물안내에도 해당 실번호와 실명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것[그림 3-79]을 통해 청소노동자 휴게공간은 공간 개선 사업과 정에서 추후 덧붙여진 공간인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휴게공간 출입구에는 종이로 인쇄된 ‘사인’ 이 투명 스키치테이프로 부착되어 있다[그림 3-78].

내부면적 16.36㎡에 1인당 면적은 5.45㎡로 연구대상지 휴게공간 남 여 평균 1인당 면적에 근접하며 유효 휴게면적은 10.06㎡이고 1인당 유효면적은 2.5㎡이다[그림 3-80]. 휴게공간은 외벽과 여자화장실에 2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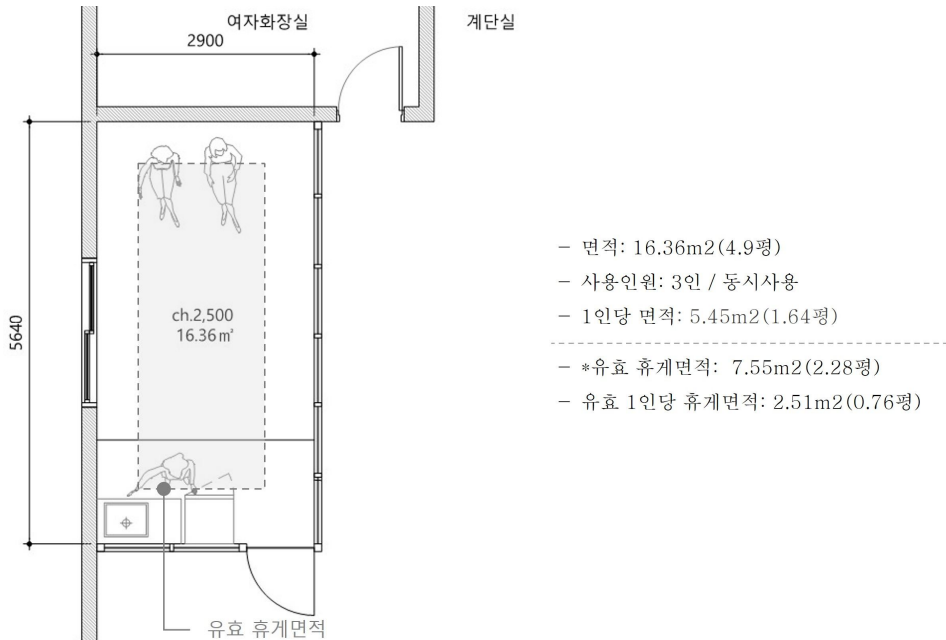
[그림 3-78] a동 4층 피난 안내도 (저자 촬영 및 편집)



401	명예교수실	408	연구센터
402	대학행정교육원	409	연구센터
403	대학행정교육원	410	연구센터
404	연구센터	411	연구센터
405	연구센터	412	연구센터
406	연구센터	413	세미나실
407	명예교수실	414	정보지식정책연구소

[그림 3-79] a동 건물안내 (출처: 행정대학원 홈페이지)

이 접하고 유리칸막이로 구획되어 있으며 유리에는 반투명 시트지가 부착되어 있어 내부가 보이지 않는다[그림 3-81]. 유리칸막이로 공간을 새롭게 덧붙이는 방법은 경량벽체와 유사하게 단기간 시공이 가능하지만 기밀한 벽체에 비해 단열, 차음의 기능이 약하며 투명하기 때문에 탈의 등이 이루어지는 휴게공간에 적합하지 않은 재료이다. 외부로 향한 창이 있어 자연환기가 가능하고 건물의 고층부에 있어 자연광이 내부로 들어온다. 휴게공간 내부에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어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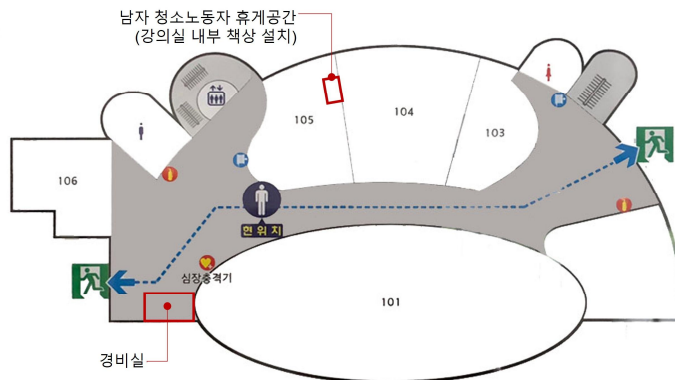
[그림 3-80] 여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평면도 및 개요 (저자 작성)



[그림 3-81] 여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외부 (저자 촬영)

## 2) 남자 청소노동자 휴게 공간

남자청소노동자 1명이 사용하는 a동 남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은 별도의 독립된 실이 마련되지 않아서 지상 1층의 쓰지 않는 강의실[그림 3-82]의 일부공간에 책상, 사물함 등 집기류로 공간을 구획하여 사용하고 있다[그림 3-83]. 휴게공간으로 쓰는 공간 외의 공간에는 청소도구카트가 있고 건물 내부에서 버려지거나 보관이 필요한 가구들이 적재되어 있다. 이 공간은 현황자료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별도의 사인도 부착되어 있지 않아서 ‘비가시적’이며 언제든 필요에 의해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임시성’ 을 가지고 있다.



[그림 3-82] a동 1층 피난 안내도 (저자 촬영)



[그림 3-83] 1층 남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저자 촬영)

### 3.2.10 소결

연구대상지 청소노동자 휴게공간을 통해 발견한 내용은 크게 6가지로 정리 할 수 있다.

첫째, 청소노동자 공간 내 휴식을 위한 개별영역 확보가 필요하다. 청소노동자 개개인이 집단으로 인식이 되어, 수량적 휴게공간은 충족되지만 4~5명 동시에 한 공간을 사용하게 되어 발생하는 불편함과 '휴식' 라는 개인적 활동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이는 공간에 대한 사용자의 만족감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현행 법령에서 인원별 면적이 아닌 최소면적을 제시한 것은 실효성의 문제가 있다.

둘째, '휴식,탕비/식사,샤워+빨래,건조+창고' 와 같은 청소노동자 사용 공간의 분화 및 시설 간 효율적인 연결 필요하다. '휴게공간' 으로 불리는 하나의 공간 내 다양한 활동이 혼재되어 유효 휴게영역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연계된 별도의 추가 공간 확보가 필요하며 이 시설 간 연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특히 사례 조사 시 누락되어 있는 기능은 세탁물 '건조' 인데 세탁실 내 건조기를 별도로 구비해 두거나 건조가 가능한 공간을 별도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파악에 있어 수량적 비합리성이 존재한다.

건물 내부의 층수 산정에 의한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배치는 물리적으로 지하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수치적으로 지상이라는 근거를 통해서 휴게공간을 배치한다. 기존에 제기되었던 열악한 공간 질에 대한 문제를 반복하는 비인권적인 휴게공간을 재생산 하였다. 이는 연결성 없이 배치된 휴게공간, 세탁시설, 샤워시설 등 청소노동자 노동공간의 파편화वाद 연결되어 있다. 실질적인 공간 방문과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배치에 대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넷째, 노후화된 건물 내 청소노동자 휴게공간이 배치된다.

단과대 내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한지 오래된 건물에 휴게공간이 있는 사례를 볼 수 있다. 청소노동자 공간 설치되어 있는 노후화 된 건물을 철거 혹은 재건축 할 경우, 청소노동자 공간은 다른 건물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때 옮겨지는 건물에 청소노동자 공간이 조성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용도의 공간을 변경하

여 청소노동자 공간으로 사용하는 사례를 다시 만들게 되는데, 이는 주먹구구식의 열악하고, 비효율적인 청소노동자 공간이 재생산되는 시스템으로 작동한다.

다섯째, 공간 개선과정에서 관리자와 노동자간 적극적 소통이 필요하다. 청소노동자 공간의 시설을 관리하는 주체가 단과대 별로 개별화 되어 있어 통합적인 관리가 부재하다. 각 단과대별 담당자 개인의 소통의 지에 따라 개선 정도의 차이 발생한다. 청소노동자들이 3년 단위로 단과대를 바꿔 배정이 되기 때문에 청소노동자 공간 개선이 유예되는 과정에서 청소노동자들 스스로 개선에 대한 의지를 포기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과 학생 등 대학 공동체 연대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개별 단과대학 월례회의에서 청소노동자들이 건의 사항을 전달하지만 행정절차가 각기 다르고 대응의 정도가 담당자에 따라 상이하다. 개별 청소노동자가 건의를 하는 경우 행정 담당자와 소통의 방식은 수직적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담당자의 의견을 따라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소통의 주체가 노동조합이 되었을 때는 비교적 수평적인 관계의 소통과 의견조정이 가능하다. 특히 대학본부에 청소노동자 공간 개선의 요구는 주로 학내 노동조합이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대학 내 타 구성원(학생, 교수, 교직원) 들의 연대체는 더욱 평등한 소통과 견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 3.3 연구대상지 청소노동자 공간의 한계적 특성

연구대상지의 청소노동자 휴게공간들은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자체가 건물의 지하 혹은 건물의 구석에 있어 눈에 잘 띄지 않는 특징이 있다. 공통적으로 용도에 따라 공간이 분화되지 않아서 중첩된 활동들이 하나의 공간 안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sup>105)</sup> 이는 청소노동자에 대한 공간이 균등하지 못하게 배분이 되어서 만들어진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청소노동자들이 사용하는 주요시설인 ‘휴게공간-샤워시설-세탁시설’이 비효율적으로 배치된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청소노동자들의 공간이 애초에 계획이 되지 않고 타 용도의 공간을 임시로 사용하거나 개조한 것이기 때문이다.<sup>106)</sup> 그리고 여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은 남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과 비교해서 1인당 평균면적이 작았는데 성별에 따른 ‘집단 내 공간불평등’ 현상으로 분석할 수 있다. 무엇보다 창문이 없는 비인권적인 휴게공간들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한 청소노동자 공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청소노동자 공간의 한계적 특성은 폐쇄성(Seclusion), 비가시성(Obscurity) 그리고 임시성(Impermanence)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 내용은 [표 3-2]와 같다.

청소노동자 인터뷰를 통해 청취한 청소노동자 공간 사용에 대한 실질적 의견에서도 용도에 따른 공간분화가 일어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불편함이 다수 지적되었다. 특히 세탁물 건조를 위한 별도의 공간 혹은 시설이 없기 때문에 휴게공간 내에서 세탁물 건조를 하는데, 이로 인해 휴게공간 내부가 습도가 올라가고 냄새가 나는 등 공간의 질을 열악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외 여러 사람이 동시에 한 공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협소한 휴게공간의 면적, 창문과 환기시설의 부족을 강조하였으며 주요시설에 대한 성별구분이 불명확하여 겪는 불편함 또한 지적하였다. 그 내용은 [그림 3-8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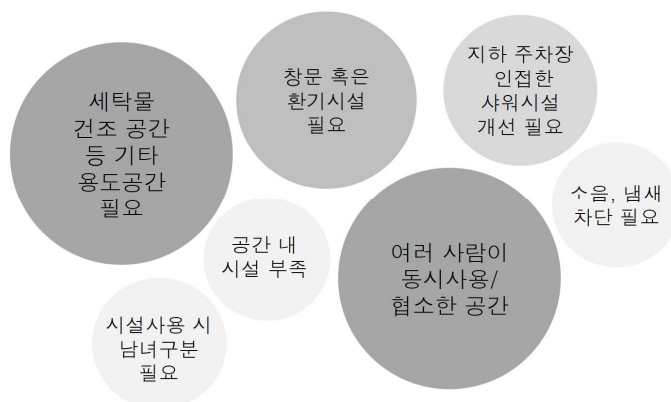
105) 연구대상지의 모든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내부에서 세탁물을 건조하는데, 이는 휴게공간 내부의 습도를 상승시켜 공간의 질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106) 임시적 사용을 상징하는 요소로, 종이로 만들어진 ‘사인’ (중앙도서관), 샌드위치 패널로 만들어진 휴게공간(공대 여자청소노동자 휴게시설)이 있다. 화장실로 사용하던 곳을 샤워실로 개조한 사례(법대, 농대)도 있다.



[표 3-2]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열악함의 특징 (저자작성)

구분	분석 내용	폐쇄성	비가시성	임시성
1	구석 혹은 지하층에 위치	○	○	
2	창문 없음	○		
3	시설안내표지에 실명이 없거나 다른		○	○
4	출입구에 '종이' 실명부착		○	○
5	중첩된 용도로 사용		○	○
6	필수 공간들의 연결성 부족		○	○
7	덧붙여진 공간 사용			○
8	임시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휴게공간 조성			○
9	냄새, 소음 등이 휴게공간으로 유입			○
10	다인원 동시 사용	○		
11	여자 휴게공간이 남자 휴게공간보다 1인 당 면적이 좁음	○		



[그림 3-83] 청소노동자 휴게공간에 대한 사용자 개선 요구사항 (저자 작성)

### 3.3.1 폐쇄성

‘폐쇄(閉鎖)’는 ‘문 따위를 닫거나 막아버림’, ‘기관이나 시설을 없애거나 기능을 정지함’, ‘외부와의 문화적, 정신적 교류를 끊거나 막음’이란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sup>107)</sup> ‘폐쇄성(閉鎖性, Seclusion)’은 물리적, 기능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문화적, 정신적 측면의 교류가 끊긴 상태나 성질을 뜻한다. 반대어로 ‘개방’ ‘개방성’이 있다.

폐쇄적 공간은 물리적인 경계로 인해 해당 공간을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특정한 조건을 만족해야만 벗어날 수 있는 유한한 공간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 폐쇄적 공간은 출입구가 아예 없거나, 혹은 통제 가능한 수준의 소수의 출입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청소노동자 공간의 경우 창문이 없거나 규모가 작거나 혹은 타 시설로부터 거리가 멀고 격리되어 느끼는 폐쇄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갇힌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밀실(密室)<sup>108)</sup>’과 유사하다. 닫혀 있는 공간은 ‘단절’에서 오는 ‘공포감’을 만들기도 하며 내부에서는 외부의 상황을, 내부에서는 외부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비밀스럽다’는 특성을 가진다.

건축공간에서 선택적 폐쇄는 주로 일상과 거리감이 중요한 성스러운 공간에 사용하지만 청소노동자 공간과 같은 타의적 폐쇄는 공포감을 만들며 장기적으로 이와 같은 공간에 머물게 되었을 때는 정신건강에 좋지 않은 경우도 있다. 폐쇄적인 공간은 또다른 폐쇄적 공간으로 제한적인 확장만 가능하기 때문에 물리적 단절뿐만 아니라 그 공간을 사용하는 사



[그림 3-84] 폐쇄적 공간 다이어그램 (저자 편집)

107)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108) 남이 함부로 출입 못하게 하여 비밀로 쓰는 방(출처: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람은 커뮤니티와 단절을 겪기도 한다.

폐쇄적 공간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감옥, 군대, 수술실, 연구실 등이 있으며 외부로 부터의 정보나 자극을 통제하고 내부의 정보 또한 제한적으로 알려진다. 그렇기 때문에 폐쇄적 공간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는 외부로 알려지기 어려우며, 알려진 이후에 그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기 어려워<sup>109)</sup> 문제 상황에 대한 개선이 어렵다.

---

109) ‘폐쇄적 공간의 알려지지 않은 죽음, 군대 내 의문사 문제에 관해’, 성대신문 (<http://www.skkuw.com/>). 2003년 10월 13일. 박영호 기자

### 3.3.2 비가시성

‘비가시화(非可視化)’ 은 어떤 현상이 실제로 드러나지 아니함. 또는 어떤 현상을 실제로 드러나지 아니하게 함 이란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sup>110)</sup> ‘비가시성(非可視性, Obscurity)’ 을 ‘어떤 현상을 실제로 드러나지 않거나, 알게 하는 성질’ 정도로 사전적 의미로 정리할 수 있다. 예술에서 ‘비가시성’ 은 보이지 않는 내면의 감정이나 감각으로 표현되고, 철학에서는 ‘가시성’ 으로 대표 되는 ‘물질세계’ 화 함께 ‘정신적 세계’ , 표면을 넘어선 ‘내면’ 으로 보았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비가시성’ 은 주로 ‘배제’ ‘차별’ ‘은폐’ ‘무허가’ ‘고립’ ‘소수’ ‘주변화’ 와 함께 쓰이며 아이러니 하게도 사회적 ‘권력이 없음’ 의 표상적 의미로 사용이 된다.

지구상에서 모든 것이 가시적일 수는 없다. 동양철학에서 음(陰)과 양(陽)이 존재하듯 우리 사회에도 명(明)과 암(暗)은 필연적으로 동시에 존재하며 서로가 서로의 존재의 이유이자, ‘그것’ 이 ‘그것’ 일 수 있는 차이를 알려주지만 그 속에 위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회구조 깊숙이 누군가의 편의나 효율성을 위해서 소수라는 이유로 혹은 힘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누군가를 ‘약자’ 로 정의하고 의도적으로 ‘감추어’ 없는 존재로 만드는 일이 빈번하다. 위계화 하여 누군가를 더 깊은 비가시화의 계곡으로 밀어 넣어 불평등을 지속하는 일은 공동체를 이루어 살고 있는 지구상의 생명체들에게 부자연스러우며 비윤리적인 행위이고 나아가 그 존재를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다.

연구 대상지 사례를 통해 관찰한 청소노동자 공간 비가시화의 방법으로는 ‘보호색화 공간, 비접근적 공간, 사물화 된 공간’ 이 있다. 첫째 보호색화 공간은 기존의 건물 구조에 추가로 덧붙여 만들지만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유사한 색상이나 재료를 사용하여 청소노동자 공간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공과대학 b동의 사망사고가 난 휴게공간이 예이다. 두 번째 비접근적 공간은 주로 지하나 건물의 깊숙한 곳에 청소노동자 공간을 배치하여 청소노동자 외 이공간의 존재를 인식조차 할 수 없게 하는 비가시화 방법이며 중앙도서관이 이에 속한다. 마지막

---

110)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사물화 된 공간은 다수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간에 청소노동자 공간이 마치 ‘사물’ 처럼 존재함으로써 공공연하게 보이지만 마치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인식이 되는 특수한 비가시화 방법이다. 약대 여자 샤워시설, 행정대학원 남자 청소노동자 공간에서 관찰 할 수 있다.

‘보이지 않는 노동’ 이 물리적 조건으로 표현되는 단적인 예는 건물에서 청소노동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청소노동자 휴게실 앞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이라는 사인이 없는 경우가 많고 건물 입구 안내판에도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위치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대학관리자는 위치 안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sup>111)</sup>

---

111) B대학 관계자는 “미화원 휴게실을 굳이 누가 찾는다고 1층 안내판에 미화원 휴게실의 방번호를 붙여야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했다. 미화노동자 유정순은 이 말을 듣고 “우리가 사람이야? 그냥 청소부지...” 라면서 매우 씁쓸해 했다. 출처. 조혁진(2017) 시설관리서비스산업의 노동의 특성과 작업장의 사회적 관계구조에 대한 연구: 대학사업장 청소·경비 업무를 중심으로 p.195

### 3.3.3 임시성

‘임시성(臨時性, Impermanent)’은 ‘미리 정하지 아니하고 필요에 따라 그때 그때 정하는 성질’이란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sup>112)</sup> ‘임시적 공간’은 사전에 계획되지 않고, 변화상황에 맞춰 만들어지는 공간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비완성적이며, 불안정성하다. 연구대상지 청소노동자 공간 중 공과대학, 행정대학원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에 있던 공간 속에 추가로 덧붙여지거나, 다른 용도로 쓰고 있던 공간을 점유하는 방식으로 공간을 사용하게 된다. 그렇게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울리지 않음, 끼어듦, 불편함, 불완전한 느낌을 주며 실제로도 기밀하지 않은 재료로 다른 건물 내 공간에 비해 견고하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외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 외부 냄새, 소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리고 쉽게 철거되고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다.

다른 용도 공간을 청소노동자 공간으로 점유하는 방식은 기능적으로 비효율적이며 사용에 불편함을 초래하기 때문에 공간으로 존재는 하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공간이 되는 경우가 많다.

청소노동자 평균 근속년수 3.4년<sup>113)</sup>, A대학의 경우 3년마다 청소노동자는 근무지를 이동하며 용역계약직일 경우 매해 고용 불안정을 경험한다. 임시주거(Temporary Housing)의 공급기간은 6개월~3년이란 사실은 청소노동자의 불안정한 노동 조건이 ‘임시성’이라는 공간의 특성으로 반영이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

112)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113) 고용노동부의 '2019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의 평균 근속년수는 3.4년으로 전직종 평균 근속년수 7년 대비 3.6년 차이를 보이고 있다

## 4.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개선방향 고찰

---

4.1 청소노동자 공간 분석 틀

4.2 청소노동자 공간 개선·계획방향 제안

---

### 4.1 청소노동자 공간 분석의 틀

#### 4.1.1 청소노동자 공간 질적 평가 분석틀 제안

기존 정량적 지표에서 담지 못하는 사회적 지표 등을 포함한 휴게공간 열악성 평가 분석틀을 제안한다. 이는 기존 법령에서 제시하는 정량적 수치에 가려 보이지 않는 공간의 열악성을 드러나게 할 수 있는 분석의 틀이다. ‘해야할 것’에 대한 기준은 이미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공간들에 쉽게 적용을 할 수 있고, 공간의 질을 더 높이는데 영향을 줄 수

[ 표 4-1 ]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질적 평가 분석틀

구 분	번호	세부내용	비고
폐쇄성	1	건물의 구석 혹은 지하층 위치	지상층이어도 지하층과 같은 물리적 환경일 경우 지하층으로 판단
	2	외부로 열린 창문 없음	폭 0.5m 높이 1m 이상
	3	1인당 면적이 3.8㎡ 이하로 설치	세탁, 샤워 제외할 유효 휴게공간 면적
	4	평상(난방바닥) 위에서 최소 천장고 2.1m 이하	바닥기준 천장고 2.4m 이상 필요
	5	4명 이상 동시에 사용	적정 동시 사용인원 3명 이하
	6	개인 휴식영역이 구분이 없음	개인용 간이침대 등 벽체구분이 아니어도 각자 영역 확보가 필요
비가시성	7	단과대 내 신축건물에 휴게공간 없음	-
	8	건물 층별 안내 및 피난안내도에 휴게공간의 실명 표시되어 있지 않음	-
	9	탕비, 세탁, 식사, 휴식이 구획되지 않고 한 공간 내에서 이루어짐	-
	10	휴게공간 내부 마감재가 없음	건물 골조 면 노출 천장 배관 노출 등
임시성	11	휴게공간 출입구에 실명 '사인' 이 없거나 건물의 다른 실의 '사인' 과 다른 재료로 만들어져 있음	예시. 종이로 부착된 사인
	12	추가로 덧붙여 만든 공간	-
	13	다른 용도의 공간을 개조하여 사용	-
	14	임시적 건축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공간	예시. 샌드위치 판넬
	15	외부의 냄새, 소음이 휴게공간으로 유입	-
	16	필수공간(샤워실-세탁실-휴게공간) 사이 연결성 부족	2개층 이상의 다른 층에 있어 있거나, 별도의 건물에 있을 경우
기타	17	남.녀 시설 구분이 안 됨	-
	18	제공 가구 외 추가적 가구들이 적층되어 있음	-
	19	휴게공간 관리자(사업체 측)와 원활한 소통이 되지 않음	-



있지만 청소노동자의 휴게공간의 경우 최소한의 공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공간을 휴게공간으로 설치하고 수량적으로 존재했다며 공간의 질에 대해서는 더 고려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말아야 할 것’에 대한 기준을 이 분석틀에서 제시한다. 수량적 지표를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아래의 분석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안전한 청소노동자 공간이라 판단하기 어렵다.

## 4.1.2 분석 틀을 통한 개정 법령의 한계점 분석

[표4-1]의 분석틀을 바탕으로 2022년 개정된 사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표2-3]등 법령의 주요내용의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 (1) 휴게시설의 크기 및 위치

법령에서 제시한 최소 바닥면적 6㎡는 세가지 측면에서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로 샤워실, 탈의실, 세탁실 등 구체적으로 휴게시설을 분리하지 않고 최소면적 기준만 제시하였기 때문에 실제 휴식으로 사용할 수 바닥면적은 6㎡ 이하가 된다. 둘째, 1인당 면적이 없기 때문에 사용인원 제한 없이 최소공간에 다인원이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휴게시설 의무 운용 사업장기준에 명시된 내용<sup>114)</sup>에 따르면 하나의 휴게공간을 최소 2인이 사용할 경우 6㎡ 기준으로 1인 당 바닥면적은 3㎡ 로 2014년 발행한 서울시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이하, 서울시 가이드라인)이 제시한 1인당 5㎡의 60% 면적 밖에 되지 않는다. 근로자대표와 사업주가 협의하여 최소면적을 사업장 특성에 맞게 정하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청소노동자 상당수<sup>115)</sup>가 용역업체를 통해 고용된 간접고용 노동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소면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즉, ‘6㎡’ 라는 면적 자체가 좁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휴게시설 구분도 없이 최소면적이 제시되어서 폐쇄적이고 임시적인 휴게공간을 재생산 할 가능성이 높다.

휴게공간 높이에 대해서 “모든 ‘바닥면’ 에서 천장고 최소 높이 2.1m 확보” 기준은 ‘바닥면’ 해석이 모호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준이 추가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방문조사 한 20개소 휴게공간 전체에 평상(바닥난방, 높이 약 30cm)<sup>116)</sup>이 설치되어 있으며 휴게공간에 바닥면적의

114) 상시 근로자수 10명 이상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7개 직종 근로자 2명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115) 2016년 한국노동연구원이 펴낸 ‘저임금 일자리의 동태적 변화와 정책과제’ 자료에 보면, 직고용된 노동자는 27.8%에 지나지 않았으며 72% 이상이 용역업체 등에 소속된 간접고용 노동자이다.

116) 서울시 청소근로자 현장방문 및 실태조사 결과(13.11.20, 노동정책과) 다수 근로자가 바닥 난방시설 설치를 요구하였다. (출처. 서울시 청소근로환경시설 가

50%이상을 차지하고 청소노동자들이 주로 휴식을 취하는 곳이 평상임을 고려하였을 때 ‘바닥면’에 ‘평상’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휴게시설의 위치는 이용이 편리하도록 작업장소와 ‘충분히’ 가까운 곳에 위치”란 설치 기준이 있으며 공동사업장의 경우 ‘이동시간이 휴게시간의 20%를 넘지 아니할 것’이란 기준이 제시되어있다. 시행규칙에 표기된 ‘충분히’, ‘휴게시간의 20%’는 매우 호모한 기준으로 서울시 가이드라인 내 ‘작업공간으로부터 100m 내 휴게공간 설치’ ‘관리범위가 넓은 경우 거점별 휴게공간 마련’과 같은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며 설치 공간 적용의 유연성도 부족하다.

열악한 휴게공간의 대표적인 공간사례인 ‘지하공간, 계단 하부 등’에 휴게공간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이 빠져있어서 여전히 비가시적, 폐쇄적인 휴게공간을 만들며 노동자의 건강 및 생명권을 위협하는 비인권적인 휴게공간이 만들어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공간의 제약이 있을 시 칸막이 설치를 통해 남녀 공간 분리를 하고, 개방형 휴게공간일 경우 남녀구분을 강제하지도 않아서 형식적인 휴게공간으로만 남을 가능성이 높다.

## (2) 휴게시설의 환경

‘온도, 조명, 습도’ 등의 기준이 구체적인 수치로 명시되어 있지만 앞서 말한 ‘지하공간, 계단 하부 등에 휴게시설 설치 금지’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이 기준은 실질적으로 무의미 하며 또 다른 열악한 휴게공간을 재생산 할 뿐이다. 특히 “창문 ‘또는’ 환풍기, 공조시스템 등을 환기시킬 수 있음”으로 기준이 제시되어 있는데 휴게공간 내 창문을 통한 환기가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되어있는데, 이는 건축법상 ‘거실’의 설치 기준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본 연구의 ‘3.2.1 중앙도서관’의 사례를 통해 창문이 없는 지하공간에 냉난방, 환기 시설을 이용하여 실내 환경을 쾌적하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다. ‘창문’이 없는 공간은 비사가시성 뿐만 아니라 폐쇄성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유사시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탈출을 할 수 없다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서 휴게공간에 필수적인 조건이다.

---

이드 라인, 노동정책과, 2014. 03)

### (3) 비품·설비

본 연구의 휴게공간 개요를 보면 휴게공간 내 다양한 활동이 일어나고, 그만큼의 비품과 설비, 기기들이 비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담당 행정실에서 비치하는 사물함, 냉장고, 정수기, 전자렌지 외에 청소노동자들이 직접 비치한 수납장, 옷장, 신발장, 책상, 소파, 선풍기, 커피포트 등이 휴게공간에 있다. 하지만 개정된 법령에는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을 구비할 것. 단, 좌식(평상)으로 설치 운영되는 경우 의자를 비치하지 않아도 됨” “음용이 가능한 물을 제공하거나 해당 설비를 갖출 것” 로 되어 있다. 법령에 따르면 좌식으로 설치된 휴게공간의 경우 ‘식수’ 만 있으면 다른 비품은 없어도 된다. 개인별 필요하 가구 및 물품의 기준 및 규격을 정리한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비해 휴게공간 사용에 대한 실질적 이해가 부족한 항목이다. 이러한 경우 노동자들은 휴게공간을 사용하지 않게 되거나 직접 비품과 가구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 규격화 되지 않은 가구들을 적층하여 사용하게 되면 휴게공간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될 뿐만 아니라 가구 추락에 따른 사고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 (5) 휴게시설 관리

휴게시설 운영관리 항목에서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을 원칙으로 하지만 “물리적 공간이 부족으로 별도의 휴게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노사가 합의하여 설치·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회의실 등에 대하여, 사용 시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휴게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 기재 되어 있다. 법령에 따르면 휴게공간은 공간부족 시에는 설치 우선순위의 필수 공간이 아닌 선택적으로 다른 용도의 공간을 빌려 쓰는 임시적 공간이다.

### (6) 의무 운용 사업장 기준

2019년 기준 20인 이상 사업장은 전체의 5.9% 이며 전체 근로자의 57.9%이다.<sup>117)</sup> 현재 법령은 사업장에 차등을 두어 20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을 제외하고 있으며 법의 4년의 재검토 기간을 두어 4년 이내에 이

차별적 규정을 바꿀 수 있는 시도조차 막아버렸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소규모 사업장이 몰려있는 산업단지 노동자들은 공동휴게시설 설치를 요구했지만, 시행규칙에서 다른 사업주들이 공동으로 설치하는 내용이 모호하게 제시되어 실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휴식권은 전체 노동자의 권리이고 확대되어야 함에도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 (7) 과태료 부과

법령에 따른 휴게시설 미설치 시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2차,3차 최대 4,500만원),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비준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업장 내 휴게공간을 설치, 관리하는 비용보다 과태료가 더 낮은 금액이라면 과태료를 내고 휴게공간을 조성하지 않는 사업장이 경우가 다수 발생할 것이다.

2021년 안전보건공간에서 발행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 신설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보고서의 휴게시설 공사비용 산정결과를 따르면 휴게시설 최소면적 6㎡인 경우 공장 평균비용(㎡당 832,375원)<sup>118)</sup>을 적용하였을 때 건물건축비는 4,994,250원, 50㎡(10인 사용 가정)의 경우 41,618,750원이다. 리모델링의 경우 도배, 전기기구, 조명 설치 단가 (㎡당 340,000원)적용하였을 때 2,040,000원, 50㎡의 경우 17,000,000원이 산출된다. 휴게시설에 들어가는 최소 필요 비품<sup>119)</sup>은 621,655원이다. 한 달 청소·관리비<sup>120)</sup>는 133,606원 이다.

이에 따르면 휴게공간 6㎡ 신설 및 관리비(1년 기준)는 약 7,219,177원 (전기료 등 불포함) 이며 50㎡는 약 43,843,677원이다. 리모델링 및 관리비는 6㎡의 경우 약 4,264,927원, 50㎡는 약 19,224,927원이다.

신축의 경우 바닥면적 15㎡ 이하, 리모델링의 경우 바닥면적 37㎡ 이

117) 2020년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에 따르면 전체 사업장 2,680,874개소, 20인 이상 사업장 159,246개소(5.9%)이며, 전체 근로자 18,725,160명, 2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10,847,048명(57.9%) 이다.

118) 2020년 한국부동산원의 건물신축단가표

119) 에어컨, 난방기, 온도조절기, 의자, 탁자, 정수기(1달 대여)각 1개씩

120) 고용노동부 202년 6월 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 연봉 23,322,000원 기준으로 청소는 30분\*20일, 관리는 30분\*4일로 한달 비용을 책정하였다.

하일 경우 과태료(1500만원 기준)가 강제성을 가진다. 비용절감을 위해 일부 사업장에서 휴게공간을 만드는 대신 과태료를 지불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과태료 이외 해당 사업장 영업중지와 같은 추가적인 강제사항이 필요하다.

## 4.2 청소노동자 공간 개선 · 계획 방향 제안

### 4.2.1 논의 주체 및 과정 전환

청소노동자 공간 개선을 위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해 관련 법안 및 건축 설계에 대한 논의의 주체 및 과정의 전환을 제안한다.

먼저 법령 제정 및 청소노동자 공간 가이드라인 작성에 앞서 실사용자인 청소노동자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며 정량적 연구뿐만 아니라 정성적 연구를 통하여 실질적인 공간 사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청소노동자 공간이 포함된 ‘사업장 휴게시설’ 과 같이 사회가치 변화에 의해 도입되는 시설에 대한 입법의 질 제고를 위하여 중요법안자문위원회 제도 도입이 요구되며 자문위원회 구성원 중 시설 사용 당사자인 노동자 대표 혹은 노동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의 포함이 요구된다. 2018년 안전보건공단에서 발행한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 는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실무자들이 작성하였으며 참여 관계 전문가는 세부전공이 ‘보건학 산업 및 지역사회간호학’ 의학 교수가 포함 되어있다. 2021년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 신설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보고서’ 는 의과대학, 간호학과, 보건학과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보고서가 작성이 되었으며 보고서를 위한 ‘관계자 의견수렴 회의’<sup>121)</sup>에서 노동자 대표 혹은 노동관련 전문가는 참석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렇게 실 사용자가 배제된 논의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며 한계성을 지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청소노동자 공간과 같이 기존에 다뤄지지 않은 공간에 대한 논의의 경우 실 사용자의 참여와 의견청취가 매우 중요하다.

건축설계 과정에서 청소노동자 공간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설계과정 중 적용을 위해서는 공공건축의 변화 적용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민간건축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공건축은 설계공모를 통해

---

121) 2021년 7월 6일~2021년 10월 22일까지 8회에 걸친 회의에 고용노동부(8회), 산업안전보건연구원(7회), 전문가(3회), 연구팀(8회), 건설분야 전문가(1회) 참석하였다.

건축 설계안이 당선이 되고 이후 구체적인 설계 및 시공이 이루어지는데, 설계공모의 주요 내용을 포함한 ‘설계공모 지침서’는 설계 시 고려하거나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설계공모 추진 절차 [그림 4-1] 중 설계공모의 기획과정인 사전준비<sup>122)</sup> 단계[그림 4-1의 1.]에서 진행되는 ‘시설 사용자·이용자·관리자·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의 단계에서 ‘시설 사용자 혹은 관리자’의 범주에 청소노동자를 포함하여 청소노동자 공간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가 필요하다. 또한 전문위원회 구성 단계[그림 4-1의 2.]에서 전문위원회 구성원으로 건축가, 도시, 조경, 토목 전문가 등이 주로 참여를 하고 해당 지자체 공공건축가도 전문위원회 구성원으로 위촉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자체 소속 공공건축가에게 ‘청소노동자 공간’에 대한 교육을 함으로써 건축 프로그램 내 청소노동자 공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설계공모지침 내용에 적용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림 4-1] 설계공모의 일반적인 추진 절차

(출처: 서울시 공공건축설계공모 절차 및 기준, 2017, 재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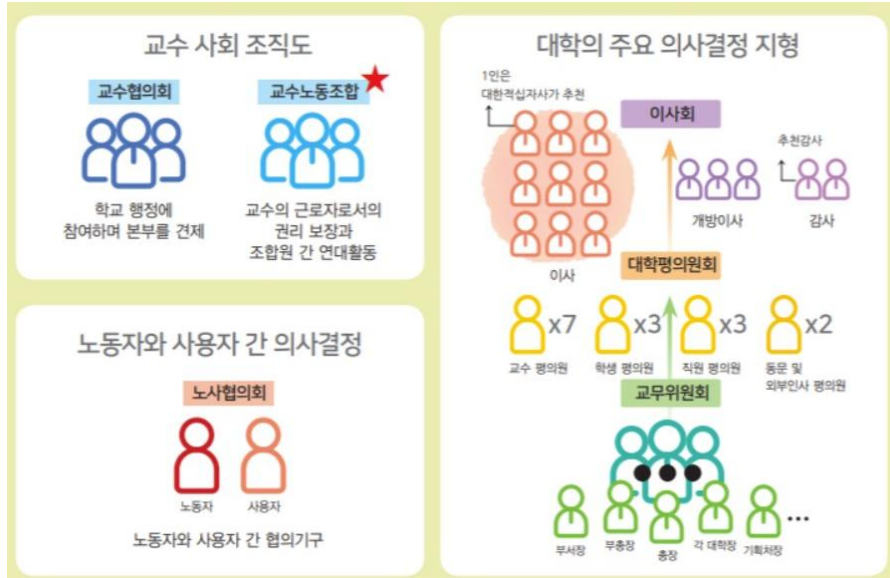
또한 공공발주 및 일정규모이상 건축물에 대한 설계는 공모전의 경우 과업지시서 또한 법령을 우선으로 따르기 때문에 법령 개정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하지만 휴게공간의 질에 대한 고려는 발주처 및 설계자에게 있으며 건물 내 다양한 사용자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하고 설계자는 휴게공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대학 내 청소노동자가 청소노동자 공간 논의의 주체로 참여하기 위해

122) 사전준비 과정은 기획업무, 설계공모 시행여부 결정, 소요 예산 검토가 있는데 그 중 기획업무에서는 사업 추진 전 단계에서 사업의 범위, 일정, 적정규모, 수용가능 부지 획득방법, 운영방식, 예산 등을 구상, 검토하여 사업의 일관된 방향을 설정한다. 기획업무 단계에서부터 운영주체, 사용자 및 사업과 직접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들의 참여를 권장하고 이를 통해 완성도 있고 품격있는 공공건축물의 건립을 가능하게 한다. (출처: 서울시 공공건축설계공모 절차 및 기준 (2017). p.17)



서는 정규직 전환을 통해 대학 캠퍼스의 일원이 되거나 노동조합 가입하여 단체교섭을 통해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4-2] 대학 주요 의사결정 구조 조직도  
(출처: 중앙문화, 2020)

하지만 단체 교섭 등을 통해 의사를 표현해도 수직적인 의사결정 지형 속에서 수직적으로 거쳐야 하는 단계가 많으며 청소노동자의 의견은 외부 의견으로 치부되어, 논의의 장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의견제시만 하는 위치에 있다. 법안이 통과 되거나 공간 개선이 끝나고 그 한계점에 대해서만 지적할 수 있고, 과정에서 의견이 받아 드러지지 않았다는 점이 공간 열악성을 재생산 주요 매커니즘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노동자 공간 관련 논의과정에서는 의사 결정 단계에서 청소노동자와 청소노동자 대표는 캠퍼스의 성원으로서 공간 사용주체자의 위치로 존재하여 주제에 대해 논의 할 수 있어야 한다.

## 4.2.2 새로운 공간 프로그램으로서 청소노동자 공간

우리 사회에는 오랜 시간동안 굳어져 온 청소노동자 공간에 대한 관행이 존재한다. 도시의 발전과 더불어 최신 기술로 만들어진 초고층 건물이 만들어 지는 사이에도 바뀌지 않은 청소노동자의 공간의 모습이 그 근거이다. 이는 청소노동자 공간에 대한 전제인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아야 하고 숨겨져야 한다는 인식, 밥먹고 빨래하는 생활공간이라는 오해, 바닥에 앉거나 누워야 휴식할 수 있다는 제한적인 생각에서 기인한다. 앞서 언급한 청소노동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제한된 인식이 청소노동자 공간에 대한 논의와 창의적 개선을 막고 있다.

예컨대, 청소노동자 공간에서 벌어지는 청소 외 기타노동-식사준비, 유니폼 세탁, 세탁물 건조 등-이 필수적인지, 이 또한 분리되지 않고 관행적으로 청소노동자에게 떠넘겨 졌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아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노동자 공간이 노동공간으로서 다각적인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한편 우리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공간으로 청소노동자 공간은 사회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공간 프로그램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또한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에 대한 요구가 커진 만큼 경쟁적인 공간 점유 한계를 넘어서, 청소노동자의 공간은 그들의 권리가 가시화 되는 공간이어야 할 것이다.

이는 청소노동자 공간의 질 향상 뿐 아니라 한국 사회의 노동공간에 대한 시간적 정체(停滯)를 벗어나, 보다 유연한 사고의 전환을 이룰 수 있는 공간적 사회운동이 될 것이다.

### 4.2.3 대학 캠퍼스의 포용적 가능성

청소노동은 대학뿐만이 아니라 공공부문이나 병원, 의료기관 및 사기업 등 우리 사회의 넓게 퍼져있으며 청소노동자의 고용형태는 간접고용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대학의 청소노동자의 노동조건이 기업이나 타 기관에 비해 불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는 것에는 ‘대학’이라는 정치적, 사회적 특수 공간의 특성과 중첩이 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대학은 사회적 상징성, 공간적 개방성이 있어 상대적으로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대가 요구되는 기관이다.<sup>123)</sup>

대학은 기존의 패러다임에 도전하고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표현하며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는 공간이다.<sup>124)</sup> 그렇기 때문에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불공정 문제에 대한 연구가 대학에서 이루어지며 이를 토대로 대학의 지식은 사회가 공유할 수 있는 가치 형성에 이바지함으로써 사회 안정에 기여한다.

또한 대학에서 추구하는 지식이 대학 밖의 사회로 과급되었을 때 부정적인 역할을 통제하기 위하여 국가는 법률들의 장치를 두고 있으며, 대학 지식의 긍정적 외부 효과, 즉 대학 지식의 사회적 유용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는 대학을 보호하면서 대학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sup>125)</sup> 대학은 존립의 근거인 사명에서부터 교육, 연구, 그리고 사회봉사의 공공선(public good) 역할을 요청받고 있으며 보다 큰

123) 유광호, 이영면의 ‘대학 청소노동자의 직접고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2017)에 따르면 대학의 ‘사회적 상징성’은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에서 사회정의에 반하여 경제적 약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부당한 처우를 하거나 비인격적인 노동조건을 강요한다는 사실이 손쉽게 주목받게 된다는 점을 말하고, ‘공간적 개방성’은 대학 교정이 기업과 비교하여 물리적으로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노조활동가나 다른 분회조합원들 그리고 일반시민들의 연대지원 활동을 벌이는 데에 용이하다는 점을 의미 한다

124) Universities are intended to be spaces where ideas are expressed freely, paradigms are challenged, creativity is promoted and newknowledge is produced. 대학에서 지속가능성교육 제작을 위한 일곱가지 권고: 변화주도자를 위한 가이드(International Journal of Sustainability in Higher Education, 2005)

125) 고부응.(2016). 「대학 자본주의와 대학 공공성의 소멸」, 비평과 이론, 21권 1호, p.55.

사회적 책임을 다 할 것을 기대 받는 조직이다. 따라서 대학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며, 인권, 노동 등에 사회의 지속 가능경영에도 적극 나설 필요성이 있다.

특히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사회에 나가 노동자가 된다. 노동환경과 노동자성에 대한 대학 내에서 논의와 시도는 사회적 지식으로 대학 내 축적이 될 뿐만 아니라 대학 구성원들의 노동조건까지 확산이 될 수 있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크다. 사회문제에 전방에 나서는 사회실험의 공간으로 대학의 존재는 청소노동자의 노동과 공간에 대한 포용적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다. 이는 지식공간인 대학 존립의 이유이기도 하다.

## 5. 결론

---

5.1 연구의 결론 및 시사점

5.2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과제

---

### 5.1 연구의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청소노동자와 청소노동자 공간이라는 우리 사회에 마땅히 존재해야 하고 누려야 하는 필수공간의 사례를 통해 대학공간에서 나타난 불평등의 공간적 특성을 확인하였다.

첫째, ‘폐쇄성’은 휴게공간이 위치적으로 지하나, 건물 구석진 공간<sup>126)</sup>에 배치되어 나타난 특성으로, 휴게공간 내에는 대부분 창문이 없다. 외부로 통할 수 있는 창문이 없다는 의미는 밖에서도 안이 보이지

---

126) 주로 승강기 옆 창고 같은 공간, 사례로는 농과대학 남자휴게실이 있다.

않고, 안에서도 밖이 보이지 않는 ‘비가시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비상시 외부로 탈출을 할 수 없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렵다는 ‘위험성’도 함께 가지고 있다. 환기를 위해 환풍기를 설치한 휴게공간이 있지만 기본적인 공간의 조건이 사람이 머물 수 없는 비인권적인 환경이며, 2019년 A대학 청소노동자 사망사건의 가장 큰 공간적 원인이었기 때문에 개선이 시급하다.

둘째, ‘비가시성’은 휴게공간의 위치에서 만들어진 특성뿐만이 아니라, 대학 캠퍼스 내 청소노동자 휴게공간의 정보가 부재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다. ‘그림자 노동’으로 불리는 청소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공간의 모습이 맞물려 작용을 하는데, 청소노동자들이 사용하는 공간들이 ‘보이지 않았으면’ 하거나, 건물 내 필수적인 공간으로 ‘소속’되지 않아서 휴게공간에 대한 정보가 누락 되는 경우이다. ‘비가시성’으로 인해, 청소노동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들은 ‘좁고’, ‘분산’되어 있어서 비효율적인 동선체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혹은 휴게공간 내부에서 청소노동 외 기타노동<sup>127)</sup>이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휴게공간의 휴식을 위한 면적은 실질적으로 더 협소해 진다.

세 번째 특성인 ‘임시성’은 공간불평등 상황을 재생산하는 주요한 원인이다. 애초에 청소노동자의 휴게공간이 계획되지 않은 건물의 내부에 휴게공간을 조성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주로 ‘기존 공간 개조하기’, ‘덧붙여 새로 공간 만들기’의 방법으로 휴게공간이 만들어지는데, 비교적 공사기간이 짧고 내구성이 약한 경량벽체,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하여 휴게공간이 만들어 진다. 이러한 공간들은 애초에 실로 구획되지 않은 공간이고 벽체를 이루는 구조가 밀실하지 않아 소음과 냄새에 취약하고 벽사이 틈이 생기기 쉬워 냉난방시설을 갖춘다 해도 효율이 떨어진다. 이 한계적 특징뿐만 아니라 ‘비합리적 수량화’, ‘관리효율성에 따른 공간통폐합’ 등 사용 주체가 아닌 관리 주체의 편의에 의한 불평등의 양상도 확인할 수가 있다.

연구의 내용을 통해 만들어진 분석의 틀로 2021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분석해보면, 휴게공간에 대한

---

127) 청소노동 외 식사준비, 설거지, 유니폼 세탁, 세탁물 건조 등 부과적인 노동을 휴게공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양(Quantity)적 지표만 법령에 있을 뿐 실질적 사용이나 공간의 질(Quality) 대한 고려는 되어있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법령 개정의 과정에서 노동자의 참여가 배제되고 노동조합 등 사용자의 의견이 배제된 것은 이 법령에 태생적 한계가 있으며 또 다른 불평등한 공간이 재생산된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효성 있는 법령의 보완과 더불어 청소노동자 공간 개선의 방향을 세가지 방법으로 제안한다.

먼저, 사회적 인식 전환의 측면에서, 공간 논의의 주체 및 논의의 과정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청소노동자가 대학의 평등한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성원성을 가지며 청소노동자 공간 논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공간 내용의 측면에서, ‘필수노동’이라는 청소노동의 중요성에 의한 청소노동자 공간의 개선뿐만이 아닌 오늘날 평등한 사회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청소노동자의 인권이 가시화 될 수 있는, 새로운 공간 프로그램으로서 청소노동자 공간에 대한 인식의 발전과 공간의 발전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에서 대학이 기존의 패러다임에 도전하고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표현하며 사회문제에 전방에 나서는 사회실험의 공간으로서 청소노동자의 노동과 공간에 대한 포용적 논의의 장이 될 것을 기대한다. 이는 캠퍼스가 우리사회에 건강한 시민의 기본적인 자세인 연대적, 사회적 삶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실천의 장소<sup>128)</sup>로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그동안 건축연구에서 다루지지 않은 청소노동자 공간에 대한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한 것으로 그 의미를 가짐에도 하나의 대학을 대상으로 사례 연구하여 연구 범위의 한계를 가지며, 청소노동자의 공간 현황을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하지만 청소노동자 공간에 대한 건축연구의 시작점으로 건축가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

128) If cities are to remain viable places for people to develop the strong associational and social life fundamental to healthy human existence they must incorporate a range of public spaces and “third” places i outside of work and home, in which urban citizens can come together(Bingham-Hall, John, 2016, p.1)

환기시키고 확장된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매년 다수의 대학 청소노동자들이 휴게공간 개선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sup>129)</sup>에서, 2019년부터 휴게공간 개선을 해온 A대학 사례에 대한 연구는 향후 만들어질 청소노동자 휴게공간의 설치와 이해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놓일 것이다. 하지만 청소노동자 공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늘날 우리사회에 만연한 청소노동자에 대한 공간 불평등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타 대학 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건물에 있는 청소노동자 공간 사례에 대해서 다룰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해외 사례를 연구를 통한 좀 더 다양한 관점으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자료를 보완하여 아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타 대학의 청소노동자 휴게공간에 대한 연구를 후속 과제로 남긴다.

---

129) “대학 청소노동자들 "샤워실 있는 곳 10% 불과"...개선 촉구” .연합뉴스, (<https://www.yna.co.kr/>) 2022년 8월 24일. 김윤철 기자  
2022년 8월24일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건물 내 샤워실과 휴게실 등 시설을 개선해 달라’ 고 촉구했다. 서울 소재 대학 11곳 148개 건물 가운데 청소노동자 전용 샤워실이 갖춰진 곳은 한 곳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치된 휴게실 역시 계단 밑이나 지하 주차장 등 열악하고 좁은 곳에 있는 경우가 여전히 많았다고 덧붙였다.



## 참 고 문 헌

1. 강승복. (2011). 「청소용역 서비스업의 근로실태」. 한국노동연구원. 2011년 10월호. p.92 ~108
2. 강은기, 백진. (2018). 「도심 캠퍼스 공유공간의 공간 구조 변화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Vol.34 (11). p.145-156
3. 강은기. (2020). 「캠퍼스 공유재 제도의 원리와 분석 체계에 관한 연구-서울대 및 홍콩 대학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공과대학 박사학위 논문
4. 고부응. (2016) 「대학 자본주의와 대학 공공성의 소멸」. 비평과 이론 제 21권 1호. p.37-64
5. 권혜원, 권현지, 김영미. (2016). 「대학 청소 용역 서비스 작업조직 내 범주적 불평등의 지속과 균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산업관계연구, 26(2), p.111-139
6. 김소연, 김영미. (2015). 「건물 청소노동자의 노동 경험」.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제24권 제3호. p.183-193
7. 김영.(2021). 「복합적 차별과 코로나19 감염위험 : A시 지하철 청소노동자의 팬데믹 하 노동경험과 감염경험을 중심으로」. 인천연구원. p.11-58
8. 김홍중. (2017). 「사회적인 것의 다섯가지 문제들」. 사회사상과 문화, Vol.20 (3), p.81-132
9. 박옥주. (2016). 「청소용역 여성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일 경험」. 한국여성학 32(2). p.217-251
10. 박용철. (2014). 「서울시 대학 비정규직 노동실태와 개선방안」. 한국노동사회연구소 Vol.2014 (6). p.1
11. 안숙영. (2012). 「젠더와 공간의 생산 - 여성청소노동자의 사례를 중심으로 -」. 여성학연구, 제22권 제3호. p.89~112
12. 유광호, 이영면. (2017). 「대학 청소노동자의 직접고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산업관계연구. 27(4). p.57-86
13. 윤세준 양경옥, 채연주, 김혜련. (2012). 「비청결노동(dirty work)과 정체성: 청소노동자의 직무 빚어내기(job crafting)」. 한국인사관리학회. 한국인사관리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402-431
14. 이승윤, 서효진, 박고은. (2018). 「한국 청소노동자는 왜 불안정 (precarious)한가 - 여성 청소노동자와 한국 사회안전망의 허구성」. 한국

- 사회복지정책학회. 산업노동연구 24권 2호. p.247~291
15. 이아승. (2020). 「신자유주의 시대 돌봄노동의 가치」 한국가족학회. 가족과 문화 Vol.32 (3). p.54-77
  16. 이영자. (2004) 「신자유주의 노동시장과 여성노동자성」.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Vol.20 (3), p.99-138
  17. 조혁진. (2017). 「시설관리서비스산업의 노동의 특성과 작업장의 사회적 관계구조에 대한 연구: 대학사업장 청소·경비 업무를 중심으로\*」. 한국산업노동학회. 산업노동연구, 23(3). p.177-216
  18. 조혁진. (2019). 「대학 청소용역서비스산업의 노사관계 평가와 전망」.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p.92-103
  19. 조상진. (2022) 「죽음에 이른 중고령 경비·청소노동자의 근로환경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 언론 담론을 중심으로」.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0(75). p.137-169
  20. 최나현, 김영. (2021). 「여성 청소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작업장 배제에 관한 연구 - 초·중·고등학교 환경미화원을 중심」.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여성학연구 31(1). p.207-252
  21. 최병두. (2016). 「도시적 소외와 정의로운 도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2(3). p.576-598
  22. 최병두. (2018). 「르페브르의 일상생활 비판과 도시·공간적 소외」.대한지리학회지 53(2). p.149-172
  23. Castree, N. (2008). Neoliberalising nature: The logics of deregulation and reregulation, *Environment and Planning A*, 40(1), 131-152.
  24. Hardin, G. (1968). The tragedy of the commons, *Science*, 162(3859), 1160-1180.
  25. Lefebvre, H. 2011(1973). *Production of space, economica*
  26. Kip, M., Dellenbaugh, M., Bienioik, M., Mueller, A. K., & Schwegmann, M. (2015). *Urban commons: moving beyond state and market*, Birkhaeuser, Basel, 9-25.
  27. Ostrom, E. (1990). *Governing the commons, The Evolution of Institutions for Collective Action*.
  28. Saito, J. (2009). *Publicness : beyond Habermas and Arendt*, eumbooks, 18-20.



## Abstract

### A Study on the Current Situation and Limiting Characteristics of Break Rooms for Janitorial Staff on University Campuses

- Focusing on the case of a Break rooms for  
Janitorial staff in University ‘A’ -

Kim, Minji

Department of Architec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number of janitorial staffs is estimated to be more than 1 million, and it is a universal job and an essential labor force in our society, which ranks fourth in the list of employed people. Nevertheless, the rest area of many janitorial staffs is made poor in places where there is no separate space or it is not easily visible inside the building. This is not only a matter of human

rights that does not recognize the humanity of janitorial staffs, but also a matter of the working environment that causes the risk of injury or death. This study attempted to derive implications for future janitorial staff space plans by examining cleaning labor, labor space, and rest space from an architectural perspective and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and specific characteristics of janitorial staff space.

The subjects of the study are janitorial staffs at 'A' University, where two deaths of janitorial staffs have occurred in the past three years (2019-2021). There are 17 break rooms, and a literature survey and a field survey were conducted to understand the specific situation. We investigated and analyzed the physical conditions of the break rooms and how users used the space, and in the two years after the death, many developments were made through various system supplementation and cleaning worker improvement projects, but defects such as seclusion, obscurity, and impermanence remained.

"Seclusion" is a characteristic of the resting area being located underground or in the corner of a building, and it is basically an "unhuman rights" environment where people cannot stay because there are no windows leading to the outside.

"Obscurity" is a phenomenon that occurs not only because of the isolated location of the break rooms, but also because of the lack of information on the break rooms of janitorial staffs on the university campus. The social perception of cleaning labor, called "shadow labor," and the space used by janitorial staff is "narrow" and "distributed" due to "non-visibility," so not only has an inefficient movement system, but also the break room is narrower because other labor is overlapped in the break room.

"Impermanence" is the main reason for reproducing the situation of space inequality, and as janitorial staffs' break rooms are not

planned in the first place, they are not dense and are vulnerable to external smells and noise and incomplete break rooms are created.

In addition, you can check "irrational quantification," "space consolidation according to management efficiency," and "layout of break rooms in old buildings."

Based on the above, the direction of improving the break room for janitorial staffs was considered in three aspects. First, to compensate for the limitation that existing laws are not specific and depend on quantity, we propose a 'Frame of Poorness Analysis of Rest Space' to analyze specific and qualitative aspects of break rooms. Based on the concept of campus sharing, it is necessary to change social perception so that janitorial staffs are also equal members of the campus and can participate as participants in the process of improving rest areas and discussing plans as subjects of space use. Finally, as a new space program, we propose a janitorial staff's break room, and suggest that the break room should be redefined as a "labor" space rather than simply a "rest" space.

Our society's perception of cleaning labor shows a cross-section of the tilted growth of Korean society. janitorial staffs are representative reproduction workers who supported a society that was "hidden" in the shadow of growth. This labor occupies the majority of the labor market today, and the importance of cleaning labor will increase to maintain society, and the resulting change in social perception and the value of cleaning labor should be reevaluated. The break room of janitorial staffs also needs a change of perception as a labor space and an essential space in the building, and the content of the space should also be developed. In order to prepare practical policies for this, research is needed in various aspects such as society, labor, health, city,

and architecture, and a venue for social discussions involving members of various societies should be prepared.

keywords : Janitorial Labor, Labor Space, Break Rooms,  
Reproductive Labor, Spatial Inequality

Student Number : 2019-26136